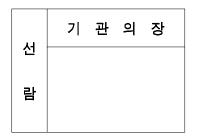
발 행 인:서울특별시장 편 집 인:공 보 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111~3



# 서울시보

제 2251호 2000. 3. 25.(토)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서울	유특별시	교육청	조례								
,	제 37	3734 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5										
;	제 37	3735 호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11										
•	₩	赱	4									
,	제 30	99 호	서울특별	시해외주	'재관파?	연및근무여	에관한규	·칙중개정	성규칙 "			13
;	제 31	.00호	서울특별	시직무다	리규칙증	중개정규:	칙	•••••				13
,	제 31	.01 호	서울특별	시법제시	무처리	구칙개정	규칙			•••••		······15
;	제 31	.02 호	서울특별	시식품진	[흥기금2	조례시행	규칙중개	정규칙				39
;	제 31	.03 호	서울특별	시도시기	스사업기	기금설치	조례시행	규칙중기	배정규칙			·····42
,	제 31	.04 호	서울특별	시세종문	화회관/	사용료정	수조례시	행규칙폐	ᅨ지규칙			·····42
;	제 31	.05 호	서울특별	시하수도	사용조리	웨시행규 <sup>:</sup>	칙중개정	규칙				·····42
;	제 31	.06 호	서울특별	시하천점	용규칙	중개정규:	칙					44
;	제 31	.07 호	서울특별	시체비지	관리및>	서분규칙-	중개정규	·칙				46
	_	_	-									
•	공 제 20	<u></u> 18. −00	_	오트벼시	사히보기	() 지고무,	일이요시	허시해가	]] 기회			18
,	^IJ 20	100 10	1	인계인의	1 日八十二	日记上 "						51
											(이면 7	ᅨ속〉
Ę	로											
	<b>-</b>											
2	<b>발</b>											



제 2000- 188 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51
제 2000- 191,196호 전력시설물의설계업및감리업등록51
제 2000- 192 호 도시계획사업(수도)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52
제 2000- 194 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53
● 입법예고 제 2000- 189호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53
제 2000 100 보 · [필역 관 ] 6 6 (작고의 관계 첫만 6 만의 # 만만고해 [ 6 H 역( 만)
<ul><li>● 구 고 시</li></ul>
제 2000- 22 호 하왕제5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2차)(성동)54
제 2000- 23 호 하왕제5구역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성동)55
제 2000- 24 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및지적승인(성동)56
제 2000- 26 호 금호제12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성동)56
제 2000- 1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광진)58
제 2000- 17 호 아리랑아파트제3회사업계획변경승인(성북)61
제 2000- 1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증축)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62
제 2000- 1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강북)63
제 2000- 15 호 민영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양천)64
제 2000- 22 호 마포로1구역제47지구도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마포)64
제 2000- 1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구로)65
제 2000- 20,2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구로)65
제 2000- 2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영등포)67
제 2000- 2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영등포)
제 2000- 27 호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영등포)
제 2000- 25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영등포)
제 2000- 15 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지적승인(서초)77
제 2000- 16 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에따른지적승인(서초)77
제 2000- 1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강남)
제 2000- 8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인가(강동)79
제 2000- 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동)79
제 2000- 1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강동)79
<ul><li>● 구 공 고</li></ul>
● 구 중 고 제 2000- 6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중구) ····································
제 2000- 67,68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중구) ····································
제 2000- 79 호 용산구도노선인정에관한공고(용산) ····································
제 2000- 90 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성동)
제 2000 - 50 오 - 선단선(현급선비중학(·8중) ···································

제 2000- 93 호 성동구지방계약직공무원특별임용시험시행계획(성동)102
제 2000- 66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공람(강북)103
제 2000-10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노원)105
제 2000- 73 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서대문)106
제 2000- 50 호 신정제5구역주택재개발사업공사완료(양천)106
제 2000- 77,80,81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강서)107
제 2000-106 호 전문건설업등록(구로)108
제 2000- 68,73,78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금천)108
제 2000-104,106,110,114호 전문건설업등록(영등포)109
제 2000- 73 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동작)110
제 2000-102 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서초)111
제 2000-104 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서초)111
제 2000-143,144,153,154호 전문건설업등록신고수리(강남)112
제 2000-156 호 전문건설업자자진반납수리(강남)113
제 2000-118,132,139,142호 전문건설업등록(송파)113
제 2000-140 호 전문건설업양도신고(송파)114
<ul><li>● 사업소고시</li></ul>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15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115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15 ● 사업소공고 제 2000- 1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중부소방서)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동대문) 115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15 ● 사업소공고 제 2000- 1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중부소방서)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동대문)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성동소방서) 116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15 ● 사업소공고 제 2000- 1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중부소방서)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동대문)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성동소방서) 116 제 2000- 4 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마포소방서) 116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15 ● 사업소공고 제 2000- 1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중부소방서)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동대문)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성동소방서) 116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15 ● 사업소공고 제 2000- 1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중부소방서)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동대문)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성동소방서) 116 제 2000- 4 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마포소방서) 116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15 ● 사업소공고 제 2000- 1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중부소방서)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동대문)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성동소방서) 116 제 2000- 4 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마포소방서) 116 제 2000- 5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구로소방서) 116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15 ● 사업소공고 제 2000- 1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중부소방서)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동대문)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성동소방서) 116 제 2000- 4 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마포소방서) 116 제 2000- 5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구로소방서) 116 제 2000- 7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서초소방서) 116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15  ● 사업소공고  제 2000- 1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중부소방서)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동대문)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성동소방서) 116  제 2000- 4 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마포소방서) 116  제 2000- 5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구로소방서) 116  제 2000- 7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서초소방서) 116  제 2000- 8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서초소방서) 116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15  N업소공고 제 2000- 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중부소방서) 115 제 2000- 6호 소방시설절계업등록(동대문) 115 제 2000- 6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성동소방서) 116 제 2000- 4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마포소방서) 116 제 2000- 5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구로소방서) 116 제 2000- 7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서초소방서) 116 제 2000- 8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서초소방서) 116 제 2000- 19호 소방시설공사업체등록행정처분(영업정지)에따른의견수렴계획(강남소방서) 117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15  ● 사업소공고  제 2000- 1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중부소방서)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경계업등록(동대문) 115  제 2000- 6 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성동소방서) 116  제 2000- 4 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마포소방서) 116  제 2000- 5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구로소방서) 116  제 2000- 7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거로소방서) 116  제 2000- 8 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서초소방서) 116  제 2000- 19 호 소방시설공사업체등록(정점조)에따른의견수렴계획(강남소방서) 117  제 2000- 20 호 소방시설경계업등록(강남소방서) 117  제 2000- 21 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강남소방서) 117  ● 공문시행
제 2000 - 17,1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 입찰공고	
제 2000- 7 호	면목천복개구조물외1개소정밀점검용역(건설안전관리본부)122
제 2000- 8 호	여의도공동구화재발생구간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건설안전관리본부)124
제 2000- 72 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금천)125
제 2000- 74 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관악)127
제 2000- 2 호	경유외3종구매(연간단가)(중랑하수처리사업소)131
제 2000- 54 호	체육시설위탁관리자선정(공원녹지관리사업소)132
● 기 타 제 2000- 2 호	공인신조(폐기)공고(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133
● 정 정 자치법규공포내용	<del>}</del> 134

#### 조 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 회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 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 하다.

> 2000. 3. 25 서울특별시교육감 유 인 종

시

#### ◉서울특별시조례제3734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보상금은 신고인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 은 교육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 지로 한다.
-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다만, 토지 · 건물에 한한다.
  - 1. 교육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2. 교육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재산 대장가액 300만원 이상)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교육재산에 관하여 법 제7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⑧ 제5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 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 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특별시 · 광역시지역 : 330제곱미터이 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일반시지역: 660제곱미터이하 토지
-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9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 제12조중 "다음사항에 관한 조건을"을 "다음사항을 조건으로"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3조중 "교육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를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 은 영 제 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 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하다.
  -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 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 능한 재산
  -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 제18조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 제2항제5호 및 동조제4항"으로한다.
- 제19조제6호중 "인정하는 지역의"을 "인정 하는"으로 한다.

시

보

-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영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제2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21조제4항제5호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으로 한다.
- 제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 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 지로서 영 제100조의3 제2호의 특례규정 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인 가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발사 업 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로부터 도 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점유・

-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공시설보존지 역에 있어 동일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체결 후 당초 계약체 결자로 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 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22조제2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고,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도시 계획시설내에 있는 재산
-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단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 사업조 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무허가건 축물은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 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도 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당 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생활보 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제22조제4항중 "영제9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의한 다음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고, 제5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며, 제6항중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로 하고,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

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 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 단체 · 법인 · 기관에서 사용 하는 경우"로 하며, "하되, 월할로 계산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7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⑦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 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 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본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에 따른다.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② 공유재산을 제22조제1항ㆍ제2항의 규 정에 의거 산출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 용료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2 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 회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 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에 한하여 이를 감액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 인 경우에는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24조 본문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를 "사업목적으로"로 하고. 제1호나목중 "이 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 으로 하며, 다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마목중 "수출지 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2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 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 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 명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중 "수출 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 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 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을 대부 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 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 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과 그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 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하되.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지평가액"이라 함은 동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을 말한다)
-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 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 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 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제 2251호

-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을 충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다.
-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을 충별로 대부하는 경 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 5.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 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 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 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

거 지정된 주택재개발 사업 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 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요율에 한하여 연10퍼센트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교육재산을 관리하는 공무 원은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을 "재산관리관은 대부재산의 대부정리 부를"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 102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 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하다.

- 제35조제1항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 진흥지역안"으로 하고, 제3항 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를 "사용 할"로 하며, 제5항제 1호중 "1981년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 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무허가 건축 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하 고, 제5항제2호중 "위치하거나"를 "위치 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 지 또는"으로 하며, 제5항제3호를 다음 과 같이 하다.
  - 3.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 로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무 허가건축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

규모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 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 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 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다수의 건 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 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시

제36조 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 용지 또는 개별 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제3항제2호중 "1억달러이상의 대 형공장건설사업"을 "30억달러이상의 사 업"으로 하며, 제3항제3호중 "500명이상 인 공장용지내"를 "1천명이상인 사업장 내"로 하고, 제4항제1호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부문으로서"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 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로하며. 제3호중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 지 내의 재산"을 "500명이상 1000명미만 인 사업장내의 재산"으로하고,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 체생산량의 80퍼센트"를 "외국인 투자기 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로 하 며, 제5항제2호중 "100명이상 300명미만 인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 고, 제3호중 "투자사업내의 재산"을 "외 국인 투자기업체의 사업장내 재산"으로 하며. 제4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 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 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 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 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 여야 한다.

제42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국유 재산에 관한 규정(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으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전에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 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조례시행일까지 그 납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로 서 제21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 특례의 적용대상이되는 토지에 대 하여는 이 조례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 하는 매각대금(기 납부한 매각대금 및 연체금액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할납 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기간의 연장은 제21조의 2의 개정규 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최고 기간인 20년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가 이루어진 기간을 제외한 기 간내에서 매매계약을 변경・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 2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3항 단서・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등의 대부료 산출 기준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 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 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시

④ (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례) 제 28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에 의한 변상금 의 연체요율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을 폐지함.(제4조제3항)

나.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 제5조, 제9조)

- · 폐지 : 기부채납의 적정여부, 관리 계획의 적정여부 등.
-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 등
-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시 특별시지역은 330제곱미터이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등.
- 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

- 여 교육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를 확대함. (제18,19조, 제24조, 제 36조)
-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 인
   정하는 공유재산
- 제조업인 사업 또는 공장건설사 업 ⇒ 사업
- · 공장용지내의 재산 ⇒ 사업장내 의 재산
- 라.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교육재산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연 8퍼센트에서 연5퍼센트로 인하함. (제21조제6호)
- 마. 교육재산 매각시 분할납부기간 연장, 사용요율(대부요율) 및 이자 율 인하 (제21조의 2, 제22조제3항)
  - · 주택재개발 사업인가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 교육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분할납부 및 이자 율을 10년 이내 연5퍼센트에서 20년이내 연 5퍼센트로 하고, 사업인가당시 건물소유자로부 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에 대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도 20년 이내 연5퍼센트로 함 (제 21조의2제1호)
  -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분납매각 후 당초 계약체결자 로부터 매매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 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 받던 매각대금 의 분할 납부 및 이자율(20년 연5퍼센트)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대부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되어 있는 것을
  -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대 부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완화하고
  -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교육재산의 사용요율(대부요율) 산정에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자의 경우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 어 주고자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 로 인하함. (제22조제3항)
- 바.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최저 사용요율(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함. (제22제6항)
- 사.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 간대부요율을 당해 재산평정 가격 의 1000분의 20으로 함. (제22조제7 항)
- 아. 공유재산을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출에 의하여 경쟁입찰 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감액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제2항)

자.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경계가 불명확하여 토지의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 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 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토록 함 (제25조제1호)

보

- 차.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있는 교육재산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연15퍼센트에서 연10퍼센트로 인하함(제28조제1항)
- 카. 국유재산제도와 같이 공유재산도 신 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잡종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를 정함(제31조의 2)
- 다.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제도의 준용범위(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를 명확히 함 (제42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 회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 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 수강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 2000. 3. 25 서울특별시교육감 유 인 종

#### ◉서울특별시조례제3735호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 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 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징수기일)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전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일까지 전액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시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도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별표1】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의 수강료 징수 기준

교육과정	대상인원	수강료 징수한도 금액	비고
초등학교교사과정	80명까지 120명까지 160명까지 200명까지 240명까지 280명까지 320명까지 320명초과	3,190원 2,840원 2,640원 2,550원 2,460원 2,420원 2,370원 2,350원	1인 1시간당 금액

※ 1인당 수강료 징수금액: 교육시간×시간당 징수금액(대상인원에 해당하는 시간당 징수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 금액)

#### \_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_

- 1. 개정이유
- o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제정된 수강 료징수조례에 있어 현행 336시간 과 정 외에 672시간 과정 등에 대한 수 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o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부규칙에는 초 등교사과정은 336시간이상으로 하도 록 되어 있는데 비해 실제 보수교육 과정은 전국교육대학총장협의회와 교육부의 협의에 따라 1,008시간 과

- 정 등으로 정해짐으로 인해 연수시 간에 따라 일일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o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원별 연수시 간당 징수한도금액을 조례에 명시하 고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연수과정별 교육실비를 정하도록 하 며, 징수금액 과다등 필요시 분할징 수 가능케함.
- 호등교사 자격취득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에 있어 1인 1시간당 수강료를 최고 3,190원(80명까지)에서 최저 2,350원(320명초과)으로 정함.

#### 규 칙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파견및근무에관한 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2000. 3. 25 서울특별시장고건

시

#### ●서울특별시규칙제3099호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파견및근무에관한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파견및근무에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명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파견및근 무에관한규칙"을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근 무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파견·근무"를 "근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주재관"이라 함 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서울관(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서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매도시, 주요도시 등 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소속 공무워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의 제목"(파겨기간)"을 "(근무기간)" 으로 하고. 같은조중 "파견기간은 2년 이 내"를 "근무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파견근무"를 "근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_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 개정이유 우리시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한 서 울관 등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은 지방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파견(타 기관 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 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재관의 근 무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 임.

#### 2. 주요골자

가. 규칙명 변경(규칙명).

- (1) 현행 :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파 경및근무에<u>관</u>하규칙
- (2) 개정 : 서울특별시해외주재관근 무에관하규칙
- 나. 해외주재관 근무기간 조정 및 적 용대상 규정(제4조 및 부칙)
  - 근무기간 조정 : 2년→3년(6월의 기간내에서 연장은 변동없슴)
- 다. 기타 "파견"을 "근무"로 용어 정의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서울특별시직무대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2000. 3. 25

서울특별시장고건

#### ◉서울특별시규칙제3100호

서울특별시직무대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명 "서울특별시직무대리규칙"을 "서 울특별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으로 한 다

제1조중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 다)"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 다)"로 한다.

제2조중 "대리"를 "대행 및 대리"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01 조의2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②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 1. 부시장: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정하는 소속실·국의 순서에 따라 실·국장이 대리하되, 실장이 국장보다 우선
- 2. 실·국장: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 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담 당관의 순서에 의한 과장 또는 담당 관이 직무대리
- 3. 과·담당관 : 소속담당사무관이 그직 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과·담당 관이 사전에 지정

③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소 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 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 1. 소속행정기관의 장 : 서울특별시행정 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 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 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 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 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
- 2. 보조·보좌기관: 서울특별시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당해 보조·보좌기관의 바로 하위 보조·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대리

④시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팀장제도를 운영하거나 계장제도를 운영중인 경우로서 그팀장 또는 계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팀 또는 계의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는 이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유고시의 권한대행제 도를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로 구분함 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임.(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반영 사항 임)

- 2. 주요골자
  -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1) 서울특별시직무대리규칙→서울특 별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 나. 권한대행 및 대리의 순서를 정함 (제3조).
  - (1) 행정(1)부시장
  - (2) 행정(2)부시장
  - (3) 정무부시장
  - (4) 기획예산실장
  - (5)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

-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권한대 행・직무대리 구분
- 권한대행(단체장 권한전반을 대행 처리, 중대한 사고의 경우)
- -궐위(사망, 사임, 퇴직)
-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 상 계속 입원
- -당해 단체장 선거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시부터 선거일까지
- 직무대리(단체장이 위임한 사무와 지시사항 범위내 처리, 경미한 사 고의 경우)
- -단체장의 출장・휴가
- -단기간 요양 등 일시부재
- 다.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명확한 규정 및 용어 등을 정비함.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2000. 3. 25 서울특별시장고건

#### ◉서울특별시규칙제3101호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규칙(이하"자치 법규"라 한다)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 차·기준 등(이하"법제사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입법"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입법예 고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입법"을 말한다.
- 2. "입법예고"라 함은 서울특별시입법 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말한다.
- 3. "주관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행정 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 하여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 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 정·개폐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 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 4.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무담당관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5. "질의"라 함은 법령(법률·대통령 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자치법규 또는 기타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 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 6. "중요문서"라 함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 2 장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제 1 절 입법안 작성

제3조(사전협의) ①주관부서의 장은 작성 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 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 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국·본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협조 · 인 가 ·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실·국·본 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조례ㆍ규 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①주관부서의 장은 자치 법규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서울특별 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기 준 ·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하다.

②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 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 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안 작성)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 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 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 며, 그 작성형식은 제18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 성예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입법이유
- 2. 주요골자
- 3. 입법내용
-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
- 5.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

에 하하다)

-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 7. 예산조치사항
- 8.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 2 절 입법안 심사

제6조(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 다.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서
- 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준칙·입법 지침 ·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형식적 심사
-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 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 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 2. 실절적 심사
-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 나. 법령과의 저촉여부
-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 라. 입법하계의 일탈여부
-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
-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제7조(심사방법) ①법무담당관은 별지 제3 호서식에 의한 심사인을 입법안 상단 여 백에 찍어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 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

보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 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 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3.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
-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정입법) 법무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제 3 장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제9조(청구요건 공표) ①자치행정과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20세이상 주민 총수(공직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수)와 그 총수에 의하여 산정된 연서주민수(지 방자치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시 보·인터넷 등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10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자치행정 과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 이 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표자가 20세 이상의 주민에 해 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원본을 주관부 서의 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이상 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획 예산실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개 폐 청구 및 대표자증명교부신청서 원본을 이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 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보관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청구인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

③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따른 서 명요청권의 위임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임신고증을 교 부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신 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관하 고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제11조(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 지 제9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를 제출 (이하 "청구"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즉 시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 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 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제 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 다. 제12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①주관 부서의 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 인명부를 접수한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간 시에는 명부 전체를 자치구에는 당해 자치구의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 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열람 기간동안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당해 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기간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심의·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심의회 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조치하 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 이 조치하여야 한다.

- 1. 이유있슴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 에게 통지
- 2. 이유없슴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 에게 통지

제13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 된후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 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

②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인용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 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결정 을 위한 심의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청구요건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

제14조(조례안의 작성 및 시의회에의 부의)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3제7항 및 영 제1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청구인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조례안) 및 당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작성하되, 그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조례안 :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 내용에 따라 작성
- 2. 검토의견서: 제6조제2항제2호 각목의 1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검토·작 성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안과 그 조례안에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기획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 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야 한다.

제 4 장 조례 · 규칙심의회

제15조(구성) ①심의회는 시장・부시장과 1급 공무워·공보관 및 감사관을 포함한 실·국·본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2251호

- ②시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 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부시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 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1) 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의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운영) ①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10 조의19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제18조(의안제출) ①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지며, 직속기관·사업소 등이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다.
  - ②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 ③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 하여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개최일 5 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상정의안 목록 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보

- 제19조(대리출석) ①위원이 심의회에 출석 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과・담당관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대리출석한 과・담당관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 가할 수 없다.
- 제20조(배석 및 출석발언) ①의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 사업소 장과 공사의 사장 등 의안과 관련된 관 계공무원 및 중요직위에 있는 자 등을 심의회의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 하여 발언하게할 수 있다.
  - ②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 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1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서기는 법제심사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22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법 무담당관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기획담 당관에게 이송(조례안의 경우에 한한다) 하며, 기획담당관은 이를 서울특별시의 회(이하 "시의회" 라 하다)에 제출 및 부의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 안을 접수한 기획담당관은 즉시법무담당 관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담당관 및 주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처

리하여야 한다.

- 1. 법무담당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
- 2. 주관부서의 장 :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 침 결정
- ④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법무담당관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공포 및 시행

- 제23조(공포안 작성) ①시의회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무담당관이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 1. 공포전문(별지 제13호서식)
  - 2. 공포문
  - 3. 시의회통보서
  - ②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규칙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무담당 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에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 1. 공포전문(별지 제14호서식)
  - 2. 공포문
  -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 제24조(공포 및 발령) ①법무담당관은 시 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공포문 원 안을 총무과장에게 이송하여 공포일련번 호를 부여받고, 공포문사본은 총무과장 의 사본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 ②법무담당관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공보관에게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 ③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

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 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

#### 제 6 장 법령질의 및 회시

- 제26조(질의방법) ①법령 및 자치법규(이 하 이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 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 어야 한다.
  - 1. 질의 요지
  -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 4. 관계법령 발췌문
  - ②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관이 참 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 ③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본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 여야 한다.
- 제27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 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 석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 1. 2개 과·담당관 이상이 관련되어 이 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 법규의 해석
- 제28조(질의문 반려) ①법무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 1. 제26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 4. 이미 법무담당관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 결이나 재판에 관한사항에 관한 질의
-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 10.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에 관한 질의
- ②구청장·사업소장 및 민원인이 법무담 당관에게 한 질의는 본청 주관부서의 장 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본 청 관련과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붙여 주관 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 제29조(외부기관 질의) ①주관부서의 장이 시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질의하고자할 때에는 법무담 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법무담당관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③주관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 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30조(회시) ①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8조의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 야 하며 주관부서의장은 법무담당관의 회시를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

하다.

②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관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심 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 에 의하여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 7 장 중요문서 심사

- 제31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고시문
  -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 3. 훈령 · 예규문서
  - 4. 법령정비 요구문서
- 5. 기타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 제32조(심사방법 등) ①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그 기준·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법무담당관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 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 8 장 국무회의 안건 처리

- 제33조(안건분류) ①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이하 이장에서 "안건"이라 한다)은 법무담당관이 수령하여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이하 이장에서 "과"라 한다)에 분류한다.
  - ②안건이 여러 국과 관련이 있거나 같은 국내 여러 과에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관련이 깊은 국·과에 분류하며 시 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과에 분류한다. 이 안 건을 접수한 과장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 제 34조(주관부서 접수) 안건 분류사실을 통보받은 과장은 즉시 수령하여 대외비

제 2251호

문서에 준하여 관리하며 훼손하거나 분 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35조(재분류) ①잘못 분류된 안건을 접수한 과장은 같은 국내 다른 과로 재분류할 안건은 법무담당관에게 우선 통보후 직접 이송하며, 다른국 소관인 경우즉시 법무담당관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②재분류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로 즉시 재분류한다.

제36조(검토) ①안건을 수령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실·국장에게 보고한다.

- 1. 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 2. 안건대로 의결될 경우 시의 이익과 상충 및 시행상의 문제점
- 3. 안건대로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문제점
- 4. 안건내용 이외의 다른 방안대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방안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②실·국장은 별도 의견이 있을 때에는 안건 전면에 의견서를 첨부하고 의견이 없을 때에는 안건만을 법무담당관에게 지정일시이내에 되돌려보낸다.
- ③안건내용이 중요하여 시장 또는 부시 장에게 검토의견과 대책 등을 별도 보고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관 과 혐의하여야 한다.
- 제37조(협조) 기획예산실장이 안건처리를 위하여 국·과장에게 요구한 사항은 우 선 협조하여야 한다.

제 10 장 법령집 등 관리

- 제38조(적용도서) 법령집으로 관리대상 도서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말한다.
  -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 2. 서울특별시 현행자치법규집
  - 3. 현행예규집
  - 4. 서울특별시 전시자치법규집

제39조(관리책임자) 법령집을 보관한 과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 항시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관리점검) 법무담당관은 법령집의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추록가제의 불량, 보관실태의 부적절을 인정할 때와 보관부서의 장이 법령집의 노후로 추록 가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록배부 중 지요청을 할 때에는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41조(변상책임) 보관 관리자가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와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를 태만이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전시자치법규집인 경우에는 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 11 장 자치구의 자치법규

- 제42조(자치구 입법안의 보고 및 심사) ① 서울특별시자치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입법안 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보고서식 1부(별지 제17호서식)
  -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 발췌서, 신· 구조문 대비표 및 기타 참고사항 포 함) 1부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입법안 은 당해 입법안에 대하여 지도·감독 책 임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심사한 다.
  -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자 치구의 입법안이 법령 또는 시자치법규

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포예정 5일 전까지 재 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재의요구 또는 시정명령은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입법안에 대한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입법안일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자치부 보고지정 사항의 처리) 지방자치법 제21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보고지정 사항인 자치 구 입법안에 대하여는 법무담당관이 행 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행정 자치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 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4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처리) ① 법무담당관은 행정자치부장관등 중앙행 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치구 입법안에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 은 이를 검토하고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재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다.

제45조(자치구 자치법규의 입안지원) ①주 관부서의 장은 자치구 입법을 지원하거 나 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는 경우 표준안 · 지침 등을 작 성ㆍ시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표준 안 · 지침 등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 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의 심사는 시의 자치법규 심사에 대한 절차 및 방 법을 준용한다.

부 칙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예시)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 서울특별시 ○ ○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200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 ○ ○ 조례(규칙)중개정조례(규칙)안입법예고(부분개정의 경우)

※ 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 ○ ○ ○조례(규칙)안입법예고 전문개정의 경우: 서울특별시 ○ ○ ○조례(규칙)개정조례(규칙)안입법예고 폐지의 경우 : 서울특별시 ○ ○ ○조례(규칙)폐지조례(규칙)안입법예고

- 1. 재정(개정, 폐지)이유(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예)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능률적인 시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개편하고, 기타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다음과 같이 작성)
  -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 마. (제도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나. 개최장소 :
  - 다. 공청사항
    - (1)
    - (2)
    - (3)
  - 라. 발언자 수 : 인
  -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보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 요약서(예시)(제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 <별표 1> 공원입장료 중 단체입장을 30인	ㅇ 미반영
시설관리공단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인원으로	- 단체입장의 취지에 맞지 않음
(0 0 0)	개정 요구	※ 단체 : 30인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 공원 내에서 예식행사가 있는 경우 이용객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
	에 대한 편의 도모	
	ㅇ 제9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에 단체	ㅇ 미반영
	입장시에는 입장 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단	- 조례가 명시한 단체입장은 일반적인 경
	서규정 신설요구	우를 규정한 것이며, 제출의견에 대하
	- 공원 내에서 예식행사가 있는 경우 이용객 에 대한 편의도모	여는 공원운영시 고려할 사항임.
		ㅇ 반영
	ㅇ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사용료 중 남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
	공원 차량통행료의 마이크로버스를 15인승	규정에 의거 마이크로버스를 소형에
	이하 승합차로 변경요구	해당하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변경
	- 마이크로버스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차종	
	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작용기준	
	모호	
서울대공원	ㅇ 서울대공원 동물원입장료 인상수준 상향조	
관리사업소	정 요구	
$( \circ \circ \circ )$	- 어 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어린이 1,000원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인(제7조	는 관련)	

심사	20	제	<u>ই</u>
담 당 자	법제심사담당사무관	법 무 담	당 관

### [별지 제4호서식]

자치법규심사대장(제7조 관련)

연번	접수 일자	문서 분류 기호	제	목	정비 구분	제안이유	및 주.	요골자	지방 의결 신청	의회 회신	행자부 보 고	공 포	비	고

[별지 제5호서	식]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청구인의	대표계	<b>나증명서 교</b> 투	부 신청서(>	제10조 관련)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변	<u> </u> 호			
대표자	주 소								
청구대상조례	조례(□제정 □개정 □폐지)								
청구취지 및 이 유									
청구내용 요 약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일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ul><li>※ 첨부서류 비고 : 청<sup>-</sup></li></ul>				한 경우	-에는 요지민	<u>ㅏ</u> 기재하고	1 별지로 작/	성한다.	
[별지 제6호서	식]								
		청구인의	니 대표자	증명사	(제10조 관련	펀)			
성 명				주	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5:	)	
청 구 종 류	지방지치	<b>)</b> 법 제13조	- 의3의 규		비한 ](□제정 □>	개정 □폐기	지)청구		
청구취지 및 주 요 내 용									
서명요청기간	년 (제외기 <sup>2</sup>	월 일 간: 년			일까지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20세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비고						-) -) - :			
	1 4 1 / 1 1				11 0 0 4 4)	-1 -1 -1	C _   11 -1 _1		

- ㅇ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 청구취지 및 주요내용란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취지 및 이유와 청구 내용 요약을 기재한다.

보

시

[별지 제7호서	]식]						
		H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제10조 관련)					
청 구 종 류	지방자	-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0 1 0 11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712)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주 소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기 간	선왕인모·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임 인	성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법시행령 제	1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을				
위임하였음을	을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1자 귀하	0 1 2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비고	10 1191						
'	라이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7 10 244 00 11 1240 0 24 0 1 0 2 7 7 10 11					
[별지 제8호사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제10조 관련)					
청 구 종 류	, , ,	-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구취지 및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 요 내 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수 임 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2 2 2 2 2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	그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명 또는 날인)					
청구인 대	표자 귀하						
비고							
ㅇ 청구종류	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ㅇ 청구취지	및 주요내	내용란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취지 및 이유와 청구내용	요				
약을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제11조 관련)

( )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 구 인 명 부 (표지) ( 책 권)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청구인 대표자 (서명·날인) 수 임 인 (서명·날인)

#### ※ 작성요령

- (1)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 (2) 명부는 책(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작성)과 권으로(각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으로 분철하고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제11조 관련)

청 구 인 명 부 (명부) ( 책 권)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날인	서명일자	刊	고

#### ※ 작성요령

-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 4. 서명·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한다.
-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는 그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10호서식](제12조 관련)
이 의 신 청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u> </u>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 상   '♥''' '1555   '♥'' '   '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 : 증빙서류
[별지 제11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제18조 관련)
가. 표지의 작성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기준,
$\sqrt{402}$
① 안건 배포 순서(예 1번은 시장, 2번은 행정(1)부시장)-기재하지 아니한다. 법무담당관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4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٨١
의안번호 제 ③ 호 심의
의 결 2000. ④ 결 사 님 원 이 (계 ⑤ 회)
년월일   (제 ⑤ 회)   <sup>^</sup> 항
③ 의안번호 : 년간 누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법무담당관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년월일 :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법무담당관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년간 누년번호 사용, 작성시 기재하지 아니한다.(법무담당관 일괄 기재
서울특별시 ○○○조례중개정조례안 ⑥
⑥ 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20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제명은 부분개정, 전문개정 및 제정으로
나누어 기재함에 주의한다. 예 부분개정 "중"사용, 전문개정 중"없음, 제정조례안
제 출 자   000국장 000 ⑦
게 된 사 UUU H
제출년월일 2000
⑥ 안건 제출위원 : 직위와 성명을 쓴다. 예 - 기획예산실장 〇〇〇
법무담당관 심사필

- 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의 작성
- (1) 작성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다.
- 0 의결주문

제 2251호

- ㅇ 제안이유
- ㅇ 주요골자
- ㅇ 주요토의과제
- 참고사항(관계법규, 예산조치, 합의, 기타 입법예고결과, 신구조문대비표의 첨부여부, 규제심사여부 등)
- (2) 작성요령
- (가)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 (나) 제안이유
- o 가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 (다) 주요골자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골자가 되는 주요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 하다.
- ㅇ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개정의 목적·배경·내용·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주요골자 작성례】

- 3. 주요골자
  - 가.  $\bigcirc\bigcirc\bigcirc\ominus$   $\triangle\triangle\triangle\bigcirc$ 로 변경하여 xxx을 도모함(안 제 $\bigcirc\bigcirc$ 조).
  - 나. ○○○을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을 xxx으로 변경함(안 제○○조)
  - 다. 종전의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은  $\triangle\triangle\triangle$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xxx하도록 함(안  $A\bigcirc\bigcirc$ 조)
  - 라. ○○○은 △△△하므로 xxx을 위하여 ▲▲▲하도록 함(안 제○○조)
  - 마. ○○○은 △△△하므로, 이를 xxx으로 변경하여 ▲▲▲하도록 함(안 제○○조)
- (라) 주요토의 과제 : 각 실·국·본부간 쟁점사항과 당해 쟁점사항과 관련되는 실·국· 본부의 의견을 기재한다.
  - ※ 될 수 있는 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정책적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이 상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사전에 정책회의 등을 거쳐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결정을 완료한 후 안건을 상정함이 바람직하다.)

#### 【주요토의과제 작성례】

- 4. 주요토의과제 :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 허용여부
  - 가. 산업경제국 의견
  - 서울의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위하여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이 적지에 대하여 아파트의 신축을 제한하여야 함.
  - 나. 검토의견(입법부서의 검토의견을 쓴다)

0.....

- ※ 참고사항: 관계법류, 예산조치, 실·국·본부간 합의 여부,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입법예고결과서 등의 첨부 사항을 기재한다.
- (마) 관계법규 :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명 및 관련 조항을 모두 기술하여 심의시 위원들의 이해를 도모한다.

#### 【참고사항 작성례】

가. 관계법류: 지방자치법

-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바) 예산조치 : 예산의 확보여부 및 비예산 사업임을 표시한다.

#### 【작성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슴(비예산 사업의 경우)
- 나. 예산조치 : '99 예산에 500억원 반영 되었슴.(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 (사) 합의: 관계실·국간의 합의 내용 기재, 특히 법령·조례·규칙에 의한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토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작성례】

- 다. 합의: 산업경제국과 합의 되었슴.
- 다. 합의: 기획예산실과 합의 되었슴.
- (아)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결과 등을 기술한다.

#### 【작성례】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00. .~ . .) 결과,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없슴"기재)
- (3)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슴.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2000. . ) 심의필.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작성실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

1. 의결주문

제 2251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한이유

은닉재산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여 당해 신고를 활성화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함 (안 제6조)
  - 나.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각각 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률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의무적 조건 부여 사항을 폐지함(안 제14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88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익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슴
- 다. 합 의 : 기획예산실과 합의 되었음.
-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 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00. 5. 15~6. 5)결과, 별첨
  - (3) 규제심사 : 제 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2000. 5. 11)
- ※ 주요토의과제는 작성생략, 쟁점사항이 없슴
- 다. 제정 · 개정 및 페지문안의 작성
  - (1) 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자동차·중기, 건설기계 또는 공공장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정비비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의뢰) 사업소에 자동차등의 정비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비의뢰서를 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보

2000. 3. 25. (토)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명은 제정안이므로 "---조례안"으로 표기 하였다.

시

※ "서울특별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와 같은 제정문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2) 전문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금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그목적으로 한다.

(중 략)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명은 전문개정이므로 "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정조례안"을 사용하였다.
- ※ 개정문안 "서울특별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개정문안을 붙였다.
- ※ 개정문안 다음에는 바뀌는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의 전문을 기재하였다.
- ※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규칙심 의회 심의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는 작성하여 안건에 첨부하여도 무방 하다.

보

#### (3) 부분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그 형태를 크게 변경하는 행위"를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를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11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화재등 재해의 예방, 고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중략)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거래참여자간 담합 등 정상적인 가격 형성에 저해되는 행위 발견시에는 이를 중지,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중략)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명은 부분개정이므로 "중"을 사용하여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표기하였다.
- ※ 부분개정문안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부분개정문안을 사용하였다.
- ※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폐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작성시에는 앞의 예와 같이 작성하되, 여기서 조례 또는 규칙명만 변경하면 될 것이다.

#### 다. 신 · 구조문 대비표의 작성

- (1)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2)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에서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으로 표시한다.
- (3) 조·항·호 등의 신설시에는 현행란에 "<신설>", 개정란에는 당해 조·항·호에 밑줄을 치되, "신설"은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왼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편리 도모)
- (4)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라고 표기하되, "<신설>"과 마찬가지로 대비표의 중앙줄 에서 오른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 (5)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 (6) 개정조항에서 앞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인용조항도 현행란에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 (7)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 (8)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작성례】

1. 개정문안

제2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공채의 등록발행) ① 도시철도공채는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 ② 도시철도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조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
  - ① 도시철도공채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일부터 7년 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한다.

시

2. 개정문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도별 팀	채의 발행 발행한도액	생 한도) 도시철도 은 내무부장관 장이 정한다.	—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 산	실 >	제2조의2(공채의 등록발행) ①공채는 그증 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도시철도공 채는 원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거치 후 상환 을 시작하여 5년에 걸쳐서 균등 상환한다.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도시철도공 채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제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한다.		
②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도시철도법시행 령에 정한 이율이하로 하되 서울특별시장 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도시철도공채의 이자는 제1항의 원금 상환시마다 이를 지급한다.				②····································		
[별지 제12호서식]						
200 .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21조 관련) □일시 : 200 ( ) : □장소 : - 총 ○ 건 :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						
안건	안건				입법	게이 H 기
번호	구분	1	안 건	명	구분	제안부서
<작성요령>						

-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ㆍ부여
-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 서에 따라 심의

[별지 제13호서식](제23조 관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 울 특 별 시 ㅇㅇㅇㅇㅇㅇ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 년 월 일

[별지 제14호서식](제23조 관련)

서 울 특 별 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 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제24조 관련)

서 울 특 별 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별지 제16호서식]

중요문서 심사대장(제32조 관련)

연번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목	뀽	지	주관과	담당자확인

제 2251호	시	보	2000. 3.	25. (토)
[별지 제17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현황보고(제42조 관련)			
				ㅇㅇ구
조 례 (규 칙) 명				
종 류	제정(	), 개정( ), 폐지(	)	
제 안 자	구청	장( ), 의회의원(	)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조려	ll·규칙심의회 (년	월 일)	
의 회 의 결 일		이 송 일		
공포기한(예정일)		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자치구소관부서				
시 주 관 부 서				
개정・개폐사유 요약				
주요골자 요약				

####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1. 제안이유

검 토 의 견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2000. 3. 2 시행)에 따라 도입된 주민 의 조례제정 · 개편청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정비 ·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주민의 조례 제정 · 개편 청구제도 시행절차 및 방법을 정함(제9조 내 지 제14조).
    - ※ 청구 제외사항(법 제3조의3)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 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 는사항
  - (1) 청구요건 공표: 자치행정과
    - ㅇ 공표대상 : 20세이상 주민수 및 조례의 제정 · 개폐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수

- o 공 표 : 매년 1월 10일한, 관보· 시보 · 인터넷 등 전산망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
- ※ 우리시의 경우 : 주민수 공표 (2000. 3. 2. 관보에 공표)
- 20세 이상의 주민수 : 7,465,020명
-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 14만명
- (2)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 ㅇ 청구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 발급
- : 자치행정과장
- -발급요건 : 20세 이상의 서울시민
- ㅇ 청구취지 등 공표
  - -대표자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 을 관보·시보·인터넷 등 전산 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 (3) 청구인 명부 제출 등
- ㅇ 접수 즉시 청구사항 등 공표
  - -공표내용 :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이의

신청 방법 등

- -공표방법 : 관보·시보·인터넷 등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 ㅇ 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 -열람기간 : 청구인명부 접수일부 터 7일간
  - -열람장소 : 시에는 명부 전체를 각 자치구별로 해당 자치구 명부 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 사본 비 치
- 이 이의신청 처리
  -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침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 른 후속조치
  - ·이유있슴: 청구인 명부 수정 및 보정요구, 대표자 및 신청인에게 통지
  - 이유없슴 : 신청인에게 통지
     ※ 서명요청기한 : 법 제13조의 3
     및 영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 어 서명요청기간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 등 공표일부터 6월 이내
- 청구인 명부 제출기한 : 서명요청기간 종료후 10일 이내
- 이 이의신청 처리시한 : 열람기간 종료후 14일 이내
- (4) 청구요건 등 심사 : 조례·규칙심 의회 심의·의결
- (5) 조례안의 작성 및 시의회에 부의
  - o 청구취지 및 내용에 따라 조례안 작성
  - ㅇ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첨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이 시의회 안건 부의
- 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요령을 제시하여 안건 작성의 통일 성·일관성 및 편의성을 도모함(별

지 제11호서식).

- 다.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제도 도입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하고 기 존의 일부 서식를 현실에 맞게 정 비함(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 17호서식).
- 라. 기타 현행규정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하여 조잡해진 조문의 정리 및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구·용어 등 을 정리하기 위하여 현행규정과 내 용상의 변경없이 전체 조항들을 정 리함.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0. 3. 25

서울특별시장고건

### ◉서울특별시규칙제3102호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시행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허가"를 "영업허가(신고)"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중 "단란주점·유홍주점 영업자는 제외"를 "단란주점·점·유홍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대출금리는 연리7%"를 "융자금리는 연리 6%(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3%)"로 하며, 같은조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워 이내
- 2.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업 소당 5천만원 이내
-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내지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 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 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 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 1. 일반 ·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균등분할상화
-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균 등분할상환
-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

등분할상환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신고사 항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2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 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9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동일인에게 당해년도에 100만원 또는 10회를 초과한 보상금
- 4. 신고 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 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다.
- ②(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융자 또는 위해식품등 신고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위해식품등 시민신고대상과 보상지급기준

구분 번호	신고대상내용	보상금 (만원)	분야별
1	무허가(신고)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행위	20	부정・불량 식품
2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고발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0	"
3	인체에 유해한 물질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다음 행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 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 조·가공하는 행위 -기준·규격이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10	"
4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7	"
5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5	"
6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단,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제품에 한 한다)	5	"
7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20	퇴 • 변태 영업
8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10	"

	•		
구분 번호	신고대상내용	보상금 (만원)	분야별
9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사용 및 공연을 하는 행위	10	"
10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홍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7	"
11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5	"
12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단, 허가관청이 이미 인지하여 고발 또는 고발중에 있는 업소는 제외)	20	"
13	식품접객업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무신고로 휴게·일반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단, 허가관청이 이미 인지하여 고발 또는 고발중에 있는 업소는 제외)	10	"
14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5	"
15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3	공통

#### \_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 1. 제안이유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에 관한 금리・ 대상 및 기간 등을 조정하여 식품위 생업소의 시설개선 촉진, 모범음식점 의 육성,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등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 를 도모하므로써 월등컵 등의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현행 7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하 함(제13조)
- 나.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 자기간을 중소시업육성자금과의 형 평을 고려하여 현행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조정함(제13조 제3항)
- 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를 마련하여 2002 월드컵 등 국제 행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 록 함(제13조)

- ㅇ 융자조건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 연리3%
- ㅇ 융자한도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라.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 품등의 시민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함(제18조, 제19조 및 별표1)
- ㅇ 지급시기 조정 : 행정처분 완료한 후→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한 후
- ㅇ 지급대상 추가
  -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 류 제공행위: 10만원
  - -무허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 업행위 : 20만원
  - -무신고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 행위: 10만원
- ㅇ 동일품목에 대하여 2이상의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지급기준을 "무 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하도 록"구제적으로 명시
- ㅇ 지급제외 추가
  - -동일인에게 당해년도에 100만원 또는 10회를 초과한 보상금
  - -신고 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 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 현행 지급제외 대상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

- -이미 신고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 라. 기타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 함(제10조제1항).
  -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 본 삭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 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0. 3. 25

서울특별시장고건

# ●서울특별시규칙제3103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 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충전소 설치 및 이에 따른 배관시설설치가 필요한 지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가 개정(2000. 1. 15)됨에 따라 관련규 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기금융자대상자의 사업지역으로 「압 축천연가스 시내버스충전소 설치 및 이에 따른 배관시설설치가 필요한 지 역」을 추가함(제3조)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하다.

2000. 3. 25

서울특별시장고건

### ◉서울특별시규칙제3104호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 례시행규칙폐지규칙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_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99년 7월 1일 자로 세종문화회관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게 되고, 동 법인이 2000년 1월 1일부터 세종문화회관의 재산을 사용하게 됨 에 따라(사용허가) 그 존치실익이 상 실된 동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 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0. 3. 25

서울특별시장고건

### ◉서울특별시규칙제3105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준공검사 신청) ①조례 제10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 사 신청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 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 식의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단,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설 치 및 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

는 그 내용을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 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55호서식>

				배 <	수설비준공	·건사	시청서					처리기한
						, ц ,						7일
설	법	Ç	긴	명								
치자	성	명(디	州丑.	자)			(인)	주민등록번	호			
^r	주			소				전 화 번	호			
시	법	Ç	<u>)</u>	명								
공	성	명(디	개표.	자)			(인)	주민등록번	호			
자	주			소				전화번호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 산약	]폐수, 축·	산폐수, 기티	}(	)배제		
배	설	치	위	치								
수 설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I	R관, PC관,	강관	· - - - - - - - - - - - - - - - - - - -	-	
刊	관			경	ψ mm	연장	m	접속방법	(하	수관,맨홀,타배*	수설비,기타	)에 접속
현 황	배	출	수	량	m²/일	총	량 또는 =			9. 18)호에 의하 제10조에 의하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일(서명또는인)구청장

구비서류: 배수설비 및 접석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각 1식

< 별	크기	제56호	서	식>							
					바	수설비	비준공검사	필증			
설	법	인	명						주민등록변	<u></u> 보호	
치	성민	병(대표	자)						전 화 번	호	
자	주		소								
시	법	인	명						주민등록변	<u>보호</u>	
공		병(대표	자)						전 화 번	호	
자	주		소								
배	설	치 위	치								
수	관		종	PVC	ン관, PE	E관, 휨	물관, VR관,	PC관, 건	강관, 주철	관, 기타	
설						, .	, ,		1		
刊	-J		-23			ر⊸ ت∼		ગ ઠળો ઘો	(-1 & -1	괴충 리제	소기하 라이(네 카스
현	관		경	Ψ	mm	연장	m	섭옥망법	[] (하수판,	맨쏠, 타배	수설비, 기타)에 접속
황						, , , –		) -) )			- ) 0 2 1 1 -0
_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	도・타 배수설비 훼
준		손여부									
공		배수설					1이상)				
검		배수설									
사							부식성)				
항		오수,									
목							·의 오접여				
				_신3	고사항	및 하	수도법 시		표의 기준	- 준수여부	
검		속(법인					직	위			
		민등록변	보호				전화변	<u> </u> 보호		성명	(성명또는인)
자	주		소								

시

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인)

###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 (2000. 1. 15)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 요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배수설비 설치자가 설치공사를 완 료한때 관리청에 제출하는 배수설 비 준공검사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별지 제55호서식)
- 나. 배수설비설치자가 설치공사를 완 료하고 제출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한 관리청의 처리기한을 7일로 지정하고 준공검사 필증 서 식을 신설함(제8조의2 및 별지 제 56호서식)

서울특별시하천점용규칙중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 2000. 3. 25 서울특별시장고건

●서울특별시규칙제3106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하천점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하다.

시

제명 "서울특별시하천점용규칙"을 "서 울특별시하천점용및점용료등징수에관한규 칙"으로 한다.

제3조중 "관리청(하천법 제12조ㆍ제82조, 하천법시행령 제57조. 서울특별시사무위 임조례,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한 관리청을 말한다)에 제출하여"를 "관 리청(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사무 위임조례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강관리사업소장 이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 출하여"로 한다.

제4조·제7조·제9조·제12조제2항·제13 조 및 제14조중 "시장"을 각각 "관리 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하천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시장에게 신고" 를 "하천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 리청에 신고"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점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6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의 전액 을 면제한다.
  -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 의 기간은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 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 에는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 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조례 제2조제1항 별표1 의 9호에 의한 점·사용면적의 산정기준 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해양수산 부 훈령) 제10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의 전문개정(2000. 1. 15)에 따라 관련규 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1) 현행: 서울특별시하천점용규칙
- (2) 개정: 서울특별시하천점용및점용 료등징수에관한규칙
- 나.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구체적으 로 명시함(제15조).
- (1) 현행 : 공공사업을 위하여 점용 하는 때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 (2) 개정
- ㅇ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및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 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 상인 때에는 그 이후의 기간에 대 하여 점용료 등을 전액 면제
- ㅇ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 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을 감면
- ㅇ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미만 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 다.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경유하도 록 한 규정 및 토석·사력채취요금 의 산정기준을 삭제함(제16조 및 제17조).
- 라. 준용규정을 변경함(제18조).
- (1) 현행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하는 사 항은 이 규칙을 준용
- (2) 개정: 조례 제2조제1항 별표1의 9호에 의한 점·사용면적의 산정기 준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 10조를 준용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2000. 3. 25 서울특별시장고건

# ●서울특별시규칙제3107호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당해구에 귀속시킬 수 있다"를 "당해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4항에 의하여 구에 위임 매각하는 체비지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 등납부방법은 제13조제3항제2호의 규정

을 적용한다.

- 가.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체비지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점 유·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동일 재개발구역안 의 다른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체결후 당초 계약체결자 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 ②(매각대금 분할납부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일까지 그 납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12조제 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방식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이 규칙 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 하는 매각대금(기 납부한 매각대금 및 연체금액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할납부기간을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의연장은 제1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는 최고기간인 20년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가 이루어진 기간을 제외한 기간내에서매매계약을 변경・체결하여야 한다.

#### <별지제11호서식>

#### 체비지매수신청서(제12조 관련)

처리기간 5일

1. 재산번호 :

2. 재산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3 면적: m²

4. 매수가격 : 귀시 결정가격 이상 별도결정

5. 매수일시 : 귀시 매각지정일

6. 대금납부방법 : 귀시 계약약정에 따름

위와 같이 재산을 매수하고자 관계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약

주 소:

신 청 인: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토지등기부등본

2. 현황측량성과도 1부

3. 인접지 소유자동의서(인감증명첨부): 매수신청자와 공동점유시 <재공고입찰 유찰토지 매수신청시>

550원

- 1. 견적서
- 2. 매수신청보증금 예치확인증

<일반수의계약매수신청>

3. 봉투(견적서 및 예치증 밀봉용)

#### \_\_\_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_\_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동 규칙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시장은 위임매각한 토지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구에 귀속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당해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제8조).

- 나.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체비지의 매 각대금 납부기간 및 이자율을 조정 함(제12조).
- (1) 건물소유자

(현행) 10년 분할납부, 연5%→(개 정) 20년 분할납부, 연5%

(2) 권리·의무 승계자

(현행) 5년 분할납부, 연8%→(개 정) 20년 분할납부, 연5%

다. 구비서류의 간소화(별지 제11호서식) 제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의계 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신청서 서식의 구비서류 9개항목중 6개항목을 삭제하고 2개항목은 변경함.

#### 공 고

시

# ●서울특별시공고제2000-184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공무워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3. 2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ㅇ 직렬: 사회복지직
  - ㅇ 계급 : 9급
  - 최종선발 예정인원 : 202
  - ㅇ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18~30세(1969. 1. 1~ 1982. 12. 31)
    - -거주지: 제한없슴
    - -자격: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 지자
    - -기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 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직렬: 사회복지직(장애인)
  - ㅇ 계급 : 9급
  - 최종선발 예정인원:11
  - ㅇ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18~30세(1969. 1. 1~ 1982. 12. 31)
    - -거주지: 제한없슴
    - -자격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

지자

- -기타 : 지방공무워법 제31조의 결격사 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가. 응시연령은 시험시행일과 관계없이 최종시험 시행연도에 속한 연령해당 자 응시 가능
- 나. 결격사유기준일 : 2000년 5월 4일(면 접시행일)
- 다. 장애인응시자는 ①장애인복지법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 준에 해당하는 자.
  -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제3항의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
  -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 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해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중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수행능력(필 기. 시각. 청각)이 있어야 함
  - ※ 원서접수 시 소관기관에서 발급하 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2. 시험방법 및 과목
  - 가. 필기시험: 사회. 사회복지학(2과목) ※ 배점비율(문항형식) : 매과목당 100 점 만점(매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 문항)
  -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 여 실시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 ㅇ 구분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0년 4월 14일(금)~4월 15일 (토)

 $(금): 09:00 \sim 18:00.$ 

(토): 09:00~13:00

ㅇ 장소 : 서울시의 각 구청 시민봉사실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 ㅇ 구분 : 필기시험
- 기간 : 2000년 4월 23일(일)
- 장소 : 2000년 4월 20일(목) 대한매일
   (구 서울신문)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교육원 게시판, 당 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edu.seoul.kr)에 공고
- ㅇ 합격자발표
  - -합격자명단 : 2000. 5. 1(월)~5. 2(화) 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2)700-1929 번으로 안내
  - -면접서류제출 및 면접시험계획: 2000. 5. 1(월) 대한매일 및 서울특별시지방 공무원교육원 게시판, 당 교육원홈페 이지 공고
- ㅇ 구분 : 면접시험
- 기간: 2000년 5월 4일(목)
- 장소: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서 초구 서초동 391번지)
- ㅇ 합격자발표
  - -합격자 명단 : 2000. 5. 15(월)~5. 16 (화)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2)700-1929번으로 안내 및 개별통지
  - -합격자 등록요령 등 안내사항 : 2000. 5. 15(월) 서울시 각 구청·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게시판 당 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 ※ 시험성적은 2000. 5. 15(월)부터 5. 16
     (화)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2)700- 1927
     번으로 안내함(이기간 이후에는 성적문의
     에 회신하지 않음)
- 4.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 가.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 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 2)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 신 반명함판(3.5cm×4.5cm)

-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나. 확인서류
-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 응시연령 확인용
-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 자격증 미발급자의 경우에는 시험
  시행기관에서 합격사실을 증명하는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면접시험일까지는 자격증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 3) 장애인수첩 등 장애인 증빙서류 1통 : 장애인 응시자에 한함
  - ※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를 반드시 자필로 기재한 후 접수처에 직접 제 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및 확 인서류를 빠짐없이 동봉하고 응시원 서에 있는 우편엽서(반신용)에 필히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표를 받아 볼 수 있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 편번호(응시원서에는 연락가능한 전 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만 유효함.

(우편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 우편번호 137-071)

-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첨부치 않 거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가 아닌 자 치구수입증지를 첨부 하였을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니 유 의하기 바람.
- 5. 여성채용 목표제
  - 가. 채용 목표 : 선발예정인원의 20%
  - 나.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한 경

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중에서 성적 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인원 만큼 최 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 선발(하한성 적은 합격선 -5점으로 함)

※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 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 은 아님.

-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가. 취업보호대상자
  -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 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 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 는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지)청에 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 여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 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 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가산함.
  - 다음의 1), 2)항의 자격증이 서로 중 복되는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함.
  -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 격증 가산비율
  - 분야 : 통신 · 정보처리분야
  - ㅇ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 분야: 사무관리분야
- ㅇ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컴퓨터활용능력 1급(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 급(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 급(1%)
  - -워드프로세서 3급(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을 가산함.
- 2)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가산비율: 5%
  - 위 "가" 항과 "나" 항이 중복되는 경 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7. 응시자 주의사항
  -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 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 시자의 책임으로 함.
  - 나. OMR용 응시원서 기재는 컴퓨터용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 까지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전형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 험일정 7일전까지 공고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지방 공무원교육원 전형팀(Tel 3488-2321) 으로 문의바람.
  - ※ 주요교통편(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 육원)
  - -지하철 : 3호선 남부터미널역(⑤번 출 구)에서 도보15분

(경부고속도로 방향 남부순환도로 옆) 본 공고문 내용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 육원 홈페이지(http://www.edu.seoul.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제2000-187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 계판매업자의 휴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2000. 3. 25 서울특별시장

시

#### 다단계판매업자 휴업신고

1. 상호 : 주식회사 참생활인터내셔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2

3. 대표자 : 이준선

4. 휴업일자 : 2000. 3. 22. ~ 2000. 9. 21.

5. 휴업사유 : 영업재정비

#### ◉서울특별시공고제2000-188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

서울특별시장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변경

- □ 등록변경사항
- ㅇ 신고인

-등록번호: 제50호

-상호 : 주식회사 미래네트웍인터내쇼날 (☎ 501-2262)

-대표자 : 성미련

0 변경내용

-변경전

· 상호 : 주식회사 보탬플러스

·대표이사 : 배경준 이사 : 이은주, 송석이 감사 : 차일권

· 수당지급율 : 24.5%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3번지 구일빌딩 4층

· 전화번호 : 561-5810

#### -변경후

· 상호 : 주식회사 미레네트웍인터내쇼날

·대표이사 : 성미련

이사 : 송석이, 윤경진, 김동하, 김윤하

감사 : 차일권

· 수당지급율 : 35%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5-22호 대유빌딩7층

· 전화번호 : 501-2262~4

가. 변경일자 : 2000. 3. 8

나. 변경사유 : 영업부진에 대한 활성화

를 위해 사업체정비

#### ●서울특별시공고제2000-19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

서울특별시장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 등록번호 : 서울E-2-164호

o 업체명 : (주)이도 엔지니어링 기술사사 무소

ㅇ 대표자 : 김태호

○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733-1

○ 종류 : 전문설계업 1종

○ 등록일자 : 2000. 3. 20

○ 등록번호 : 서울S-1-212호

ㅇ 업체명: 기술사사무소 다산씨엔디

이 대표자 : 원진희

○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718-30

ㅇ 종류 : 종합감리업

○ 등록일자 : 2000. 3. 20

○ 등록번호 : 서울E-3-047호

○ 업체명: 진산엔지니어링

ㅇ 대표자 : 김수연

○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57-11

종류: 전문설계업 2종등록일자: 2000. 3. 20

#### ◉서울특별시공고제2000-19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

서울특별시장

시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 등록번호 : 서울E-2-165호

ㅇ 업체명 :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ㅇ 대표자 : 이두화

○ 소재지 : 송파구 방이동 45

ㅇ 종류 : 전문설게업 1종

○ 등록일자 : 2000. 3.

○ 등록번호 : 서울E-2-166호

○ 업체명: 신명E&C기술사사무소

ㅇ 대표자 : 기수만

○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836-26

ㅇ 종류 : 전문설게업 1종

○ 등록일자 : 2000. 3.

#### ◉서울특별시공고제2000-192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69호('99. 11. 18)호로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되고 서대문구고시 제1999-99('99. 12. 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 및 지 적승인된 "가좌배수지건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수도) 실시계획인가를 위 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 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전화 390-7380~1) 및 서대문구 청 도시정비과(전화 330-1385)에서 공고 일로부터 14일간 공람할 수 있으며, 사 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시는 의견서 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 장소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3. 25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사업(수도)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가. 사업시행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산 26-170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수도)

다. 사업의 명칭: 가좌배수지 건설공사

라. 사업 규모: 배수지 용량 24,000 m²

마. 면적 : 18.755m²

바.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 일~2002. 12. 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항

자.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 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없 슴

차.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 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가좌배수지)

○ 토지소재:계

ㅇ 지번 : 4필지

○ 공부상면적(m²): 18,755

o 편입면적(m²): 18,755

○ 토지소재 : 서대문구 홍은동

○ 지번 : 산26-170

ㅇ 지목 : 임

공부상면적(m²): 17,911편입면적(m²): 17,911

ㅇ 소유자

-성명: 이우영외1인

-주소 : 성북구 성북동 330-267

ㅇ 토지소재 : 서대문구 홍은동

ㅇ 지번 : 산26-169

○ 지목 : 임

○ 공부상면적(m²): 484

o 편입면적(m²): 484

ㅇ 소유자

-성명: 유병우외3인 -주소:남가좌동 5-39

ㅇ 토지소재 : 서대문구 홍은동

ㅇ 지번 : 산26-168

0 지목 : 임

○ 공부상면적(m²): 158

○ 편입면적(m²): 158

ㅇ 소유자

-성명 : 연세대학교 -주소 : 신촌동 134

ㅇ 토지소재 : 서대문구 홍은동

지번 : 304-4 지목 : 전

공부상면적(m²): 202편입면적(m²): 202

ㅇ 소유자

-성명 : 연세대학교 -주소 : 신촌동 134

### ◉서울특별시공고제2000-194호

도로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54조의3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 다. 2000. 3. 25

서울특별시장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가. 도로의 종류 : 자동차전용도로 나. 노선명 :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구간 및 개요

가. 구간 : 서초구 우면동 시계~선암I.C 가

나. 개요 : 폭원 23m(4차로), 연장300m

- 3. 자동차전용도로 범위 : 진·출입시설을 포함하여 자동차 통행에 필요한 전체구 가
- 4. 통행의 방법: 자동차로서만 통행 가능
- 5. 지정의 이유

과천~우면산길 연결도로 신규 건설에 따라 서울시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감소하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 하고 자 함

6. 기타: 당해 구간에는 일반교통에 필요 한 다른 도로가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3707-81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제2000-189호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 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0. 3. 25.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 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1. 제정 이유

공영차고지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 및 운영관리 에 관한 조례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은
  - 1) 권역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 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도록 함
  - ①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 업자
  - ②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 시의 시책사 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 ③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 ④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
  - ⑤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 ⑥ 차고지가 부족한 운송사업자
  - ⑦ 자가 차고지외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 2) 공영차고지의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공영차고지로부터 3km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 를 할 수 있도록 함.
  - ①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 ②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 ③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 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절차는
  - 1)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운송사업자 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 2) 사용허가를 받은후 공영차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 3) 사용계약 체결 때 시장은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
- 3. 의견제출
  - 이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0년 4월 1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대중교통과장 전화 3707-973 5~6 FAX 3707-9749 주소: 서울 중구태평로1가31번지(우)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구 고 시

- ●성동구고시제2000-22호 하왕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변경인가(2차)
- 1. 건설부고시 제682('92. 12. 19)호로 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3호('94. 2. 24)로 사업계획 결정되고, 성동구고시 제17호('95. 3. 25)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고시제37(2000. 2. 26)호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변경된 하왕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과 및 하왕제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0. 3. 25 성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내역

-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하왕제5구역주 택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및면적 :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번지 14호외 147필지, 21,229㎡
- 다. 사업시행내용 : 공동주택 4개동(17층 -23층 아파트) 605세대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소 :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0번 지 745번지
- 나) 성명 : 하왕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양영남)
- 바. 사업시행기간 : 1995. 3. 25 ~ 공사 완료시기까지
- 2. 사업시행변경인가내용
  - 가. 사업시행면적변경 : 20,954m²→21,229 m²(증275m²)
  - 나. 난방방식의 변경(중앙공급방식→개 별난방방식)
  - 다. 지붕구조 변경

(철근콘크리트경사슬라브+아스팔트슁글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철골트러스경 사지붕+금속기와 잇기)

라. 상가동 면적축소

ㅇ 구분 : 변경전

o 대지면적(m²): 689.00

○ 연면적(m²): 1,215.86

ㅇ 주차대수 : 12대

ㅇ 구분 : 변경후

○ 대지면적(m²): 424.00

○ 연면적(m²): 505.44

ㅇ 주차대수 : 8대

ㅇ 구분 : 비고

○ 대지면적(m²) : 감 265.00

o 연면적(m²): 감 710.42

ㅇ 주차대수 : 감 4대

마. 기타

-단위세대 내부 결로방지용 단역몰탈

(T=10, W=450)→단열압축 스티로풀 등

### ◉성동구고시제2000-23호

하왕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

건설부고시제1992-682호('92. 12. 19)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43호('94. 2. 24)로 사업계획결정과 성동구고시제1995-17호('95. 3. 25)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같은고시 제1998-1호('98. 1. 8)로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서울시고시 제2000-37호(2000. 2. 26)로 재개발구역 변경지정되어 성동구고시제2000-22호(2000. 3. 16)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하왕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같은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0. 3. 25

성 동 구 청 장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하왕제5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0-19 외 147필지
- 3.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761-1
  - 나. 성명 : 하왕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
- 4. 관리처분계획 인가연월일 : 2000년 3월 20일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규모 등
  - 토지이용 현황(m²)

-건축시설의대지

·소계: 15,281

· 분양주택 : 12,315

· 임대주택 : 2,966

-공공시설

· 소계 : 5,287

·도로: 1.059 · 공원 : 3,615

· 공공공지 : 436 · 파출소 : 177

-기타

·소계:661 · 사찰 : 237 · 상가 : 424

ㅇ 건축시설의 총규모 및 이용현황

시

-건축규모

세대수: 605

• 연면적(m²): 71,499.62 -아파트 용도별 공급내역

· 조합원 : 145 · 일반분양 : 266 · 보류시설 : 3 ·임대주택 : 191

-상가:1 -사찰:1 -파출소 : 1

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

○ 시설명: 위치(기점, 종점)

ㅇ 공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동 1000-14외 53필지

ㅇ 공원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

ㅇ 도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1 가 동 1-120, 하왕십리1000-343

ㅇ 도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1 가 동 1-120

ㅇ 공용청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 십리동 1000-294외 3필지

ㅇ 공공공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 십리동 1000-334외 5필지

○ 시설명 : 면적(m²)

ㅇ 공원 : 3.398 ㅇ 공원 : 217

○ 도로 : 대로3류(25m) ○ 도로 : 소로3류(6m)

ㅇ 공용청사 : 177 ○ 공공공지 : 436

ㅇ 시설명 : 비고 ㅇ 공원 : 어린이공원 ㅇ 공원: 근린공원

### ◉성동구고시제2000-2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건설교통부고시 제14호(1977. 1. 31)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131호(1977. 4. 27)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살곶이 어린이공원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ㆍ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의3ㆍ제8조 및 서울 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 정비과(☎2290-7385~7) 및 지적과(☎ 2290-7494~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000. 3. 25 성동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 적승인 조서

ㅇ 구분 : 변경 ㅇ 시설명 : 공원

ㅇ 시설의세분 : 어린이공원

○ 위치: 행당동 1-77일대 ○ 면적(m²): -기정: 952

-증·감: 감)41

-변경: 911

ㅇ 비고 : 단순면적 정정 나. 관계도면: 도면생략

●성동구고시제2000-26호

금호제12구역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제 2251호

#### 변경인가

- 1. 서울시고시 제1996-115호('96. 5. 10)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 1999-71호('98. 3. 13)로 사업계획결정되어, 성동구고시 제1998-75호('98. 9. 5)로 사업시행인가된 후, 서울시고시 제1999-107호('99. 4. 22)로 구역(사업계획)변경결정되고 성동구고시 제1999-49호('99. 8. 5)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금호제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주택 과와 금호제1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 3. 25 성 동 구 청 장

#### 가. 인가내용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금호제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470번지 일대, 24,913㎡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778-1호
- 4) 시행기간 : '99. 7. 29~2001. 11. 30.
- 5) 시행변경인가년월일: 2000. 3.
- 6) 시행자
- 가) 성명 : 금호제12구역주택재개발조 합(조합장 이금옥)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1가 1778-1호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24,913㎡ (247필지)
- 8) 건축시설계획

-대지면적: 24,104㎡, 건폐율: 20.87%, 용적율: 228.12%, 규모: 지하3층 지상 13~15층 11개동 582세대,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9) 도시재개발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공 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공공시설등의 무상귀속대상 : 도 로 809㎡
- 나) 공공시설이 무상귀속될 관리청 : 성동구
- 나. 재개발사업시행 변경내용
- 1) 사업면적 변경없슴
- 2) 사업시행계획 변경 : 대지조성공사 중 토목 옹벽고 및 형태변경

(단위: m)

- 옹벽번호 : ①
- ㅇ 변경전

-옹벽형태 : L형옹벽

-L(길이) : 90.0

-H(높이): 1.0~7.2

ㅇ 변경후

-옹벽형태: 보강토옹벽

-L(길이) : 111.6

-H(높이) : 1.1~6.9

- 옹벽번호 : ②
- ㅇ 변경전

-옹벽형태 : L형옹벽

-L(길이) : 43.0

-H(높이) : 2.2

ㅇ 변경후

-옹벽형태: 역T형옹벽

-L(길이): 50.7

-H(높이) : 1.0~3.8

- 옹벽번호: ③
- ㅇ 변경전

-옹벽형태 : L형옹벽

-L(길이): 30.5

-H(높이) : 5~5.6

ㅇ 변경후

-옹벽형태: 보강토옹벽

-L(길이) : 29.5

-H(높이) : 0.7~4.7

시

■ 옹벽번호 : ③

ㅇ 변경전

-옹벽형태 : U형옹벽

-L(길이): 19.0

-H(높이): 7.2~7.8

ㅇ 변경후

-옹벽형태: 역T형옹벽

-L(길이): 15.6

-H(높이): 4.0~9.0

■ 옹벽번호: ④

ㅇ 변경전

-옹벽형태: L형옹벽

-L(길이): 238.2

-H(높이) : 2.0~7.3

ㅇ 변경후

-옹벽형태: L형옹벽

-L(길이) : 198.5

-H(높이) : 2.0~6.0

■ 옹벽번호: ⑤

ㅇ 변경전

-옹벽형태 : L형옹벽

-L(길이) : 74.0

-H(높이) : 1.0~4.6

○ 변경후

-옹벽형태: 역T형옹벽

-L(길이): 35.5

-H(높이): 1.5~4.4

■ 옹벽번호: ⑤

ㅇ 변경전

-옹벽형태: soil-nail옹벽

-L(길이): 177.1

-H(높이): 5.5~11.3

ㅇ 변경후

-옹벽형태: soil-nail옹벽

-L(길이) : 215.6

-H(높이) : 1.5~11.3

○ 비고: +38.5m

■ 옹벽번호: ⑥

ㅇ 변경후

-옹벽형태 : L형옹벽

-L(길이) : 25

-H(높이) : 2.5~6.7

#### ●광진구고시제2000-1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1998-20호 (1998. 4. 30)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 시계획 인가 고시한 바 있는 "노유동 92-1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 2. 도시계획법제25조, 동법26조 및 동법시 행령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 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광진구 도로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 3. 25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ㅇ 사업시행지 : 광진구 노유동 92-1주변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노유동 92-1주변 도로개설공사

○ 규모 : 도로개설 폭6m, 연장100m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다.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인가 일로 부터 5년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지,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마.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स्रो 225 र	51	<u>ই</u>	<u> </u>		시							보	بلبم	-	mln:			3. 25	5. (S	<u>(</u> )
설공		등	소유권이		I					H			수 수 유과	下。 下。	지장되	李7				
도로개설공사		관계인	사 선		ı	_			계인	수 소유권										
			주 <b>》</b> 품이		ı				관계	が ま 子 仝										_
: 노유동 92-1주변	权	·太·	사 식		노유동92				소유자	수				사						
 가		소유자	전 대		민병호	-		允		소유자				7	빈안기			T		
사업료					티				면적	파 전 [표	マト	₹F	37	-	4	4	4	マト	ব	_
<del>\frac{\frac{1}{2}}</del>	型	면적 (m²)	型る		7.0				令事	iN/o		-		-		2	K N		-	
			과 전		대 20			型		사 약 기	계단	철대문	주거	화장실	추거	주거	추거		저치고	7
			<u> </u>		91-33	//n				구조 (지붕/벽체)	콘크리트	H=1.9m L=3m	기와/벽돌	목재/목재	스라브/적벽돌	스라브/적벽돌	표	한전	48/ 1000	
		7 7	 <del>₹</del> (\	하 없습	상하	* 항 없습					H	H T	2 2		1	스라트	Д,	100 5	F   G	
				변동사항	-,1	변동사항				소재지				찬	92-4					I
		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1~6번 电	I	~15번 电			관계인	소유권										
		中	K- 소	1~	1	~			中	水 子 之										_
			多哥							사 수				か 上 「	h ;	31-10				
<del>~</del>	云		てて		<b>고유동92</b>				소유자					uri c	7m 2					_
<del>-</del>		<b>中</b>		거			ıK4	^7	소유자				라고	사마	다					
110 <u>0</u> 1		<u></u> ≺₁	소유자		민영호				면소	를, 살 [료 (j)	マト	ব্দ	32		4	4	4	7	Ţ	
型					티				충별면적	ıΝļο	-	_	-	-	-	2	지하	•	<b>-</b>	
스 교 교	70	면적 (m²)	지 전 전 전		20 4	_		70		사 화 과	계단	철내문	K K	화장실	추거	주거	주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서 □ 토지조서			스 라 머니		91-33 대	_	물)조서			구조 (지붕/벽체)	콘크리트	H=1.9m	L-JIII 7) 4/ 選琴		스라브/적벽돌	스라브/적벽돌	교로	ሎ	계량기	
시계획사 토지조서			<del>₹</del> ∀		사		건물(지장물)조서			수 원 지				사	92-4	_				
버		প্র মু			7				 ~~~	마파					_					

제	2251	호		시				-	보				200	0.3.2	5. (토)
	면	4	소재지, 소유자, 구조정정		소유자	구소~~ ~~~~~~~~~~~~~~~~~~~~~~~~~~~~~~~~~~		관계인,	사 변경 변경				H T	1	영업권 추가
	관계인	주 소유권 소 이외권리								_				소유권이외의권리	I
		~ 점											관계인	자 구소	_
TTO	소유자	<b>٢</b> ⊢ 소₊	자양동 553-176	장 바 나	0条 100 41	대립	8-101	가 아 바	91-6				17-	자 연 전	ı
₹%	<b>√</b> 4	소유자	김명자		5	<u> </u>		फ़ <u>च</u> र	<u>5</u>			天	\.\tau_\.\tau_\.	< 소구	노유동 91-33
	空海海	면 작 (m²)	19	19	11	হ ে	否	33	五				소유자	<u></u>	
	₩O Æ1	,K 0			П	-	3	-						소유자	서금란
型		사 역0 11년	상가	주거		설 무 마		주거				型	별면적	면적 (m²)	수
	7.7/7	光(A) (単刈)	다. 서	스라브/ 적벽돌	기와/벽돌 H=1 9m	L=1.5m	한건 계량기	<u>기와/</u> 적벽돌	한전 계량기				る	٥ [١١]	1
			w 83	.,						Jim				전 다 다	문구점
		소째지	노유동 91-33		나 라	91-1		사 사	91-42	향했				<u> </u>	무 자
		소유권 이외권리						다 사	华	변동사항없슴					
	<u>1</u>							r <u>+</u> §	1w, 11-6					수조	노유동 91-33
	관계인	Ϋ́-							동성하100, 노유동91-6					소유권이 외의권리	
		次 品						제일 은행	이명환				관계인	사 선 선 <u>의</u>	
ιKł		./1	바 ㅡ		바			쌍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u> </u>	자 소	노유동 91-1		구 수 마	91-1		상	9-16			'KH			
	소유자	소유자	<u> </u>		; ;	<u>~</u> 짜 와		ار الإ	0 2년 일				소유자	소유자 주소	
心	多语为原	면 작(m²)	19	19	11	マト	否	æ	否				TET.		
	씨마	14/0		-	T	-	က	-	-			70	별면적	면적 (m²)	
		사 역 다	% ₹7	K K	주거	철대문		77				По	ıK]•	역0 17 네0	
	12(7)	- 구(시 분/벽계)	기와/ 백돌	스라브/ 적벽돌	기와/ 벽돌	H=1.9m L=1.5	한전 계량기	기와/ 적벽돌	한전 계량기		<u> </u>			구조	
	क्रा	수 본 도	노유동 91-1		구 수 마	91-1	1	가 야 %	91-42		영업권조시			소교지	
	স্থ	판			2			c	o	4			দ্ব	型	$\vdash$

#### \_\_\_\_\_\_ ◉성북구고시제2000-17호

# 성북아리랑아파트 제3회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성북구 돈암동 525번지 2호외 320필지상의 성북아리랑재건축조합 대표 김용규외 173명이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한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0. 3. 25

성북구청장

- 1. 사업명 : 성북아리랑 민영주택건설사업 제3회사업계획변경승인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가. 성북아리랑재건축조합 김용규, 성북 구 돈암동 527-36호
  - 나. (주)동신 대표 이균보, 강남구 역삼 동 694-10
-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가. 위치: 성북구 돈암동 525번지 2호외 320필지

나. 면적 또는 규모

	구	j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합	계	34,922.00 m²	34,753.00 m²	감 169.00 m²
사		대지면	적	31,458.00 m²	31,313.00 m²	감 145.00 m²
업	7]	소	계	2,802.00 m²	2,778.00 m²	감 24.00 m²
l –	부	도	로	2,454.00 m²	2,426.00 m²	감 28.00 m²
부	체	구상	·징물	102.00 m²	106.00 m <sup>2</sup>	증 4.00 m²
지	납	환경/	시설대	246.00 m²	246.00 m²	변경없슴
	亚.	회부지(	[제척)	662.00 m²	662.00 m²	변경없슴
7	신축단	면적(건)	폐율)	7,207.015m²(22.90%)	7,050.595 m² (22.49%)	감 156m²(감0.41%)
	연면	적(용적	율)	117,634.787 m² (284.09%)	115,783.027 m² (279.56%)	감 1,851 m²(감4.53%)
	세	대	수	719세 대	689세대	감 30세대

- 4. 사업시행기간 : 2000. 4~2003. 5. 30
- 5. 의제사항(주택건설촉진법제33조4항)
  - 가. 도시계획법제4조 규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 나. 도로법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동법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 다. 건축법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 법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 라. 도시계획법제2조제5항 및 동법시행 령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의 지정 및 동법제25조 및 동법시행 령제26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별첨

- 6. 기타 및 도서 : 성북구청 주택과에서 이 해관계인이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 □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자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 중로1류(B=25.0m : 아리랑길) 일 부 개설
  -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명 : 성북아리랑재건축도시계획사 업(도로)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36-32~정릉 113-93
  - ㅇ 사업규모 : 도로확장

폭(B) = 6m~19m 연장(L) = 130m

3.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주)동신 대표 이균보, 서울특별시 강남 구 역삼동 694-10

4. 사업의 착수, 준공년월일

-착공년월일 : 2000. 4 -준공년월일 : 2003. 5. 30

5. 공공시설의 토지조서 : 생략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 명, 주소

ㅇ 연번 : 1

토지지번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09-85

지목: 대지 지적: 46㎡

o 편입면적: 46m²

ㅇ 소유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2

-성명 : 김희철외2

ㅇ 소유권이외의 권리 : 없슴

7. 자금조달계획: 사업주체 자체자금 조달

8. 공사설계서: 생략

# ●성북구고시제2000-19호 도시계획사업(학교증축) 실시계획 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00-64호 (2000. 3. 2)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 도시계획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처리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건축과(920-3390~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 3. 25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 안암동5가 1-2호 외 2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2) 사업의 명칭 : 학교시설 증축

#### 다. 사업시행내용

7 11	도시계획	대지면적		건축시설		건폐율	용적율	n) =
구분	결정면적	( m²)	변경전	금회증축	변경후	(%)	(%)	비고
계	630,427 m²	630,427	동수 : 88동 연면적 : 440,204.40㎡	동수 : 2동증축 연면적 : 515.19㎡	동수 : 88동 연면적 : 440,719.59㎡	17.67	60.34	
본교 캠퍼스		209,030.8	동수 : 35동 연면적 : 159,731.86㎡	변경없슴	동수 : 35동 연면적 : 159,731.86㎡	19.58	65.13	
녹지 캠퍼스		264,556	동수 : 25동 연면적 : 137,551.44㎡	동수 : 2동증축 연면적 : 515.19㎡ (실습동 : 422.80㎡ 아이스링크 : 92.39㎡)	동수 : 25동 연면적 : 138,066.63㎡	15.00	45.60	실습및창고동, 아이스링크동 제1회 설계변경
자연계 캠퍼스		156,840.2	동수 : 38동 연면적 : 142,921.10㎡	변경없슴	동수 : 88동 연면적 : 142,921.10㎡	19.62	78.94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성북구 안암동 5가 1-2호

2) 성명: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0. 2. ~ 2001. 12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성북구청 건축 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사용할 토지 : 성북구 안암동 5가 1-2호외 25필지

아. 토지 소유자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 ◎강북구고시제2000-14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1988-22('98. 3 20)호로 인가고시한 "미아2동 ~수 유1동경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시행 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실시계획인가) 및 제26조(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의 규정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 치수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0. 3. 25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ㅇ 구분 : 당초

○ 사업시행지 : 미아2동~수유1동경계

○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 도시계획사 업(도로)미아2동~수유1동경계간 도로 개설공사

○ 규모 : B=10m, L=600m중200m구간

o 결정고시 : 강북구고시 제1997-10호 ('97. 2. 6)

지적고시 : 강북구고시 제1997-86호 ('97. 10. 16) 강북구고시 제1997-77호 ('97. 9. 18)정정

ㅇ 구분 : 변경

-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모, 결정고시, 지적고시: 변경없슴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다. 사업기간 : 변경없슴

라. 변경조서: 따로붙임 토지조서(추가분)

마.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강북구청 토 목치수과에 비치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토목 치수과(901-6405~8)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토지조서(추가분)

○ 사업명: 미아2동 ~수유1동 경계간 도 로개설공사

ㅇ 연번 : 1

○ 소재지지번 : 미아동 791-3931

0 지목 : 대

○ 지적(m²):3

o 편입면적(m²): 3

ㅇ 소유자

-주소 : 미아동 791-2973

-성명 : 임재길

0 이해관계인

-주소 : 남양주시 금곡동 158-7 금곡빌 라 에이-307

-성명: 이승락

-권리의 내용 : 가압류

-주소: 의정부시 의정부동 491

-성명: 의정부농업협동조합

-권리의내용 : 근저당권

ㅇ 연번 : 2

○ 소재지지번 : 미아동 791-3932

ㅇ 지목 : 대

o 지적(m²): 17

o 편입면적(m²): 17

ㅇ 소유자

-주소 : 미아동 791-2974

-성명 : 양학수외 1인

이 이해관계인

-주소 : 중구 을지로2가 50 삼양동지점

시

-성명: 중소기업은행 -권리의 내용 : 근저당권

ㅇ 연번:3

○ 소재지지번 : 미아동 791-3920

0 지목 : 대 o 지적(m²): 13

o 편입면적(m²): 13

ㅇ 소유자

-주소 : 미아동 791-2975

-성명 : 조병직

0 이해관계인

-주소 :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성명 : 국민리스(주) -권리의 내용: 근저당권

ㅇ 연번:4

○ 소재지지번 : 미아동 791-3921

○ 지목 : 대 o 지적(m²): 2 o 편입면적(m²): 2

ㅇ 소유자

-주소 : 미아동 791-3224

-성명 : 박한일

ㅇ 이해관계인

-주소 : 고양시 삼송동 26-8

-성명: 신도농업협동조합

-권리의 내용 : 근저당권

-주소 : 강북구 미아동 791-3224

-성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권리의내용: 근저당권

### ●양천구고시제2000-15호

민영주택(재건축) 건설사업계획승인

1. 양천구 목4동 739-5호외 4필지상의 한 신 · 미도연립재건축주택조합 대표 양승 일 및 길성건설(주) 대표 황인우가 시행 하는 민영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주

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주택과에서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00. 3. 25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명 : 한신 · 미도연립재건축주택 사업

나. 공동사업주체

○ 성명 : 한신 · 미도연립재건축주택조합 대표 양승일

o 주소 : 양천구 목4동 739-5

ㅇ 성명 : 길성건철(주) 대표 황인우

○ 주소 : 양천구 신정동 995-4

다. 사업시행개요

○ 위치 : 양천구 목4동 739-5호외 4필지

ㅇ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3,220.80 m²

o 건축연면적: 11,596.25m²

o 건축면적: 1,252.85㎡

ㅇ 용적률 : 281.85%

ㅇ 건폐율 : 38.90%

○ 규모: 지하1층, 지상 15층 1개동 91세대 및 부대시설

라. 사업시행기간 : 2000. 3~2002. 8

마.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사항

ㅇ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 ●마포구고시제2000-22호

### 마포로1구역제47지구도심재개발사업시 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72호('95. 6. 14) 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 시 제1996-66호('96. 9. 24)로 사업시행변경 인가된 마포로1구역 제47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1항

보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 다.

> 2000 3. 25 마 포 구 청 장

시

- 가. 사업의 명칭 : 마포로1구역제47지구도 심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 동52-1외 40필지
- 다. 시행면적 : 3,699m²(대지 : 2,829m², 공 공용지 : 870m²)
- 라.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 포구 신공덕동52-1
-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마포로1구역 제47지구 재개발조합장 주길례
  - -서울특별시마포구 신공덕동 52-1
- 바. 변경내용
- 구분 : 당초
- 시행기간 : '95. 6. 14~'99. 12. 31
- ㅇ 구분 : 변경
- 시행기간 : '95. 6. 14~2003. 6. 30
- 비고: 기간연장기타: 변경없슴
- 사. 변경사유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 ●구로구고시제2000-19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50조 및 서울 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3조에 의거 민영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건설촉진 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00. 3. 25 구 로 구 청 장

- 1. 사업명: 신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 2. 사업주체 주소 및 성명

- 구로구 오류2동 135-6 신장미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박갑석
- 종로구 운니동 98-20 삼환기업(주) 대표 손정무
- 3. 사업시행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치 : 구로구 오류2동 135-6
- 대지면적 : 11,919.0 m²
- o 건축연면적: 54,356.04m²
- 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3층 6개 동 387세대 및 부대시설
- 4. 사업기간 : 2000. 7 ~ 2003. 11.

#### ●구로구고시제2000-2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123호('78. 3. 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서울 특별시구로구고시 제160호('78. 4. 15)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공 고 제2000-58호(2000. 2. 25)로 공람공고 한「개봉동 공영주차장옆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860-240 5~7), 건설관리과(860-2400~2)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 3. 25 구 로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개봉동 134-7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 명칭 : 개봉동 공영주차장옆 도로개 설공사
- 다. 사업규모 : A=62m²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3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실 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 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 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 토지조서

제 2251호

o 일련번호 : 1

○ 소재지 지번 : 개봉동 134-7

0 지목: 답

○ 지적(m²): 62

o 편입면적(m²): 62

ㅇ 소유자

-성명: 김수천

-주소 :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9동 205호

ㅇ 비고(공부상주소) : 동대문구 용두동 144-55

일련번호:1

○ 소재지 지번 : 개봉동 134-7

0 지목 : 답

o 지적(m²): 62

o 편입면적(m²): 62

ㅇ 소유자

-성명: 김상배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832-1벽산타운2단지@205동1602호

ㅇ 비고(공부상주소) : 동대문구 용두동 232-1

○ 일련번호:1

○ 소재지 지번 : 개봉동 134-7

0 지목:답

o 지적(m²): 62

o 편입면적(m²): 62

보

0 소유자

-성명 : 임규성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06-2 장

미연립 A동 207호

○ 비고(공부상주소) : 동대문구 용두동 221-1

#### ◎구로구고시제2000-2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04호('97. 12. 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서울특 별시구로구고시 제118호('97. 12. 26)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공 고 제2000-59호(2000, 2, 25)로 공띾공고 한「온수동길확장공사(온수초교앞)」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시 행령 제6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하고, 도시 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860-240 5~7), 건설관리과(860-2400~2)에 비치 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 2000. 3. 25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구로구 온수동 산2-7, 산2-9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 온수동길확장공사(온수초교앞)

다. 사업규모 : A=58m²

라. 사업시행자의성명 및 주소

-성명: 구로구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35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실

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 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 토지조서

o 일련번호:1

○ 소재지지번 : 온수동 산2-7

ㅇ 지목 : 임

○ 지적(m²): 41

o 편입면적(m²): 41

ㅇ 소유자

-성명: 이광호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남구 괴안동 189-11

ㅇ 이해관계인

-성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 구로구 구로동 435번지

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 가처분결정(96 카단20708)

o 일련번호 : 2

○ 소재지지번 : 온수동 산2-9

ㅇ 지목 : 임

o 지적(m²): 17

o 편입면적(m²): 17

ㅇ 소유자

-성명 : 이광호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남구 괴안동 189-11

이 이해관계인

-성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소: 구로구 구로동 435번지

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 가처분결정(96 카단20708)

# ◉영등포구고시제2000-24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영고시 제59호('97. 10. 16)로 도시계 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서영고시 제98호('99. 10. 15)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한 「신길동31~4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구간 추가로 인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보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주와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00. 3. 25 영 등 포 구 청 장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조서 가. 인가내용
  - 사업명 : 신길동31~47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지 : 신길동31-50~47-25간
  - 사업규모 : -당초 : B=6m, L=90m -변경 : B=6m, L=160m

ㅇ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3년

○ 변경내용 : 사업시행구간 추가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 서영고시 제 59호('97, 10, 16)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다. 사업 시행자 성명, 주소 : 영등포구 청장,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 라. 사용 및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붙임
- 마.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계인 주소, 성명: 따로붙임(토지조 서 참조)
- 바. 별첨 토지 및 물건조서중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은 당초 인가사항과 같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토목과(Tel : 670-3405~7)

세 225	1 ই	<u>.</u>				人									5					2	2000. ;	3. 2	5. (	토)
영등포구청장			r T																					
파 H			장	사																				
			관계	주 연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도시계획사업(도로)	신길동 31-50~47-25간	70	소유자	κ <u></u> ↑	<b>√</b>  □	신디	<b>√</b>  □	Υ'	ļn	~	ļo	۲'	п	Υ'	п	그	<b>√</b> ]□	小口	√\□	신ㅁ	신ㅁ	신미	く つ	신ㅁ
용 동 동	신길	型」		晋	ক <u>র</u> কু	ক ক	₹5 ₹5		₩		⊙ ∰	চ দ		R R		경 판	ক হই	ফ≨ ক্স	ক্র ক্র	₹ 23	五 2 3 3	ক হহ	रू इङ्	ক হই
る 場 峠	<u>K</u>			₹%	型型	型	型		찬		Łη ′°	T		r H		用	型	型	中人	型	型	型	型	型
明天 至	<u>a</u>		실제	<u> </u>																				
- 사 서			海の	[ ] [ ] [ ]	_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자의 사업 및	: 3≖		윈	κ⊢ <																				
4 4 4 5 4 4	<u></u>		관계인	で で で																				
		水	유자	사	신길동186-286	신길동31-13	신길동40-16	メ]フ] E 91 AG	신설551-40	17 15 01 17	신설表31-4/	시기도91 99	77_TC 으로 구	メラフ モイク オ	신결중4/-4	신길동32-10	신길동31-11			신길동41-9	신길동31-12			
		☆	선	形 ぞ	하인식	유수용	이금자 외4인	الم الم الم	<u> </u>	رة <u>ل</u> ارة	5¤ ₹º	7] \\}. El]	Σ	71717	石道工	이영기	이정의	국(재무부)	국(재무부)	최점순 외10인	최근복 외3인	유민지구	서울시	국(재무부)
			실제	· 하 호 호	古	舌	舌	버	古	너	古	낸	舌	버	퓸	古	너	舌	舌	五	五	너	낸	舌
			型品		1	16	19	12	6	6	9	9	13	1	30	2	2	1	2	88	$\infty$	157	1	14
			K	러디	古	古	否	[L	5	ົ້າ	7	ī	7	[L	5	귝	舌	舌	古	吞	五	버	舌	否
		소계기 기배		신길동31-50	신길동31-45	신길동40-27	) 17 E 91 MG	신설~21~40	17 1501 17	신설ㅎ51-4/	171年91 40	산 큰 5 의 -49	7) 7) 12 1/2 00	신 큰 54/ 70	신길동32-37	신길동31-48	신길동44-21	신길동44-22	신길동31-28	신길동31-44	신길동35-22	신길동40-28	신길동41-17	
			큠	전	-	2	33	_	4	L	ი ი	U	)	7	,	8	6	10	11	12	13	14	15	16

제	22	51 3	Ē.			,	۷							보				2	000. 3	3. 2	5. (	(토)
	٠٦ ټ							<u> </u>		추가	추가 (근저당권)	李가	추가 (근저당권)	추가 (구저당권)	李가	추가 (근저당권)	수가 (근저당권)	추가	추가 (근저당권)	李가	추가	幸가
	. 계 인	사									신길2동186-356		서울중구태평로 2가 150	서울중구태평로 27-150	-	신길2동186-356	서울중구남대문도 2가 130		신길2동186-356			
	計	~ ~									신길2동 새마을금고		삼성생명 보험(주)	삼성생명 <sup>라</sup> 철(주)		신길2동 새마을금고	(小) (小) (小) (如) (如)		신길2동 새마슬금고			
변경	소유자	κ⊢ 쉭	战 宁	<b></b> 公	2漢 신ㅁ		公司	신길동40-3	经		신길동47-12		신길2동47-11	신길2동47-11		신길동170-7우성(아) 세마을금고	403동 1103호	신길동47-14	신길동47-14	신길동47-1		
		次 配	田	用多	强多	元。	电温	우제민	中分	국(재무부)	호상이	국(재무부)	아수이	<u> </u>	국(재무부)	よ が が に		정기섭	신광수	정봉선	유지자	영등포구
	실	이용 수축						버		五	대	古	雪	否	古	古		古	五	五	古	대
	型 Su	(里, 还						4		175	4	23	31	38	7	61		20	53	61	17	17
	관계인	명수																				
K	유자	사 성 ॐ						신길동40-3	신길동47-16	행구간추가	행구간추가	행구간추가	행구간추가	행구간추가	행구간추가	행구가추가		행구간추가	행구간추가	행구간추가	행구간추가	행구간추가
70	쉭	次 配	국 (재무부)	국 (재무부)	수표을	는 표 을 용	영등포구	수제민	시기염	사업시	사업시	사업시	사업시	수요시	사업시	수 관 시		사업시	사업시청	사업시	사업시	사업시
	실 M	<u>ㅎ</u> *	否	舌	버	너	버	급	古													
	<u>화</u> 으=	면적 (m²)	17	3	36	20	10	4	15													
	K		舌	古	버	ļ.,	버	9 대	77	五	日 日	古	否	占 7	五	7		元 元	古	五	버	) 도
	소계기 기배	;; - - - -	신길동41-21	신길동41-22	신길동41-28	신길동41-27	신길동41-23	신길동40-29	신길동47-29	신길동47-25	신길동47-39	신길동47-21	신길동47-38	신길동47-37	신길동47-23	시길동47-34		신길동47-36	신길동47-32	신길동47-30	신길동41-30	신길동41-29
	판	전	17	18	19		21	22	83	74	22	28	22	88	63	8		31	32	33	34	35

제 2251	호				시							5	ᅺ				20	000.3	. 25. (	(토)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청장 사 업 의 중 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 업 시 행 위 치 : 신길동 31-50~47-25간		비고																				
		소 휴 자	& 명 구 수																			
	ম্০	공부상 저촉 면저 면서	(m²) (m²)		紀		2곳 신 <sup>□</sup>				27 신ㅁ				2곳 시ㅁ	2포 시ㅁ						
	型	다 다 여	H		型	重	型			进 %					軍	æ1 ‱						
		14 14	_																			
		수 교지 지표																		Í	- 70	
물 건 사업시호 사 사 업		# 상	수		관악구 흑석동 산15-17	관악구 흑석동 산15-17			신길동31-13				신길동31-14			이정임 신길동31-11		신길동31-22		1	135	
		<b>√</b> 4	か 品		김기형		최근복 외3인		윤순용		<u> </u>				이 곳 이 가 이 마		김상태					
	云	% 不 系 水		ರ	হু-	<u> </u>	= =	10	2식	2m	4m	2식	7.	1구	10m	2소	2	2	ರ	자		
		왕부상 면적 (m²)					EV.	75														
	<b>☆</b>	al D		화장실및 보일러실	늄		화장실및 작업장	주거.부엌	대문	담장	담장	대문	수고	정화조	담장	대	화장실	상고	점포 및 주거	라		
		LI K	수 소 정택돌/		- 41 /			브럭/기와	철재/브럭	H 대국	표	松山		ΡΈ	적벽돌	알루미늄/ 적벽돌	비력/ 스라브	브럭/ 스라브	<u> 브럭/기</u> 와	알루미늄		
		수 제 지 지 배	  		신길동35-2, 31-16		신길동31-12		신길동31-13			시기도에 14	신설ㅎ511~114 			신길동31-11		신길동31-22				
		田	Юļ		` <del>-</del>		2		<u>ښ</u>			_				വ	9					

세.	<i>_</i>	1 오				^					포			20	)UU. 3.	۷٥.	(工)			
用江												물건 수가 (수도)								
	유자	수													신길동 32-9					
	선	성명													정만술					
	不予	(m²)												ιO	전.	작.	1식			
Ko	강부상	(m²)		<b>시</b> □		<b>〈</b>  □			<b>√</b>  □			√ □								
軍	. 40 다			E S S S		년 32 왕		世						주거, 보일러실, 화장실	라	도시가스	수도			
	1	\ ├												주거, 브럭/기와 보일러실 화장실	브릭/철재 /스라브					
	ر بارا رادار بارا	소세시 시민										신길동32-9								
	* *	주		신길동41-17		신길동41-18				ר ל ה	시엽   신설 중4/-10   		신길동32-9							
	쉭	を 4 一部		명재광	# 장면 가				김삼수   신길동47-4			\$ 7	₹ <u>₹</u>		정만술					
.v1		[ 1 년 2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24		9	1	П	1층45 2층20 계65	4	지 기	10m	14 6m		rC	হা	-	1식			
'W	상부상 면적 (m²)																			
<b>∵</b>	L	ф Н	주거 화장실 및 부엌		주거	부엌 및 보일러실	화장실	주거	화장실	내담	다양	대는	큐	주거,보일러 실,화장실	다	=	도시가스			
	<del>Ļ</del> Қ		변력/기와 변력/ 스라브		변택/기와 변택/ 스라브 변택/ 스레트		/ 하 기 하	변력/ 스라브	알루미늄	加川	브럭/철재 /스라브 브럭		변력/기와	브럭/철재	/스라브					
	ر بابار مابار	소세시 시번		신길동41-17		신길동41-18				10 신길동47-29		신결동32-9								
	型水		۲- ۲-			∞ ~-			9 신길동47-4			10 3		11 Å						
								l												

제	2251호 시												보					2	000	0. 3	. 2	5. (	토)	_	
	비고												<b>☆</b>												
. ⊢	소유자	8 8 4 4															이상호  신길2동47-12								
	よ を な な											88	1식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2주	사	17	사	2주	i		
	4	(B (B)	世 28 29 4				55 55 70 70				٠	]n	79.44												
	a U										Ŧ	라 ⓒ 瑛	주거	내문	창고 및 보일러실	정화조	수도	화장실	매추나무	상미	사과나무	목권	포도나무		
		r⊢ M												세멘브럭조 세멘와즙	철재		P.E								
	수제기 기배	다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신길2동47-12							135 - 72					
	야 사 수 선			시기도39-10	U1 70 0 2		신길동40-16					신길동40-16									1				
	서	で 型。		이영기 신길동32-10			이금지		<u> </u>		7	83인													
иH	· 五 4 2	(EE)	-	7m	77	1구	2	자	2식	17	31	2	<del> </del>												
	공부상 면적	(m)																							
±,	역o 다		화장실	화장실 다라 다 사 정원수		부 4 4 3 2 고 교육		주거,창고	화장실	사업시행구간															
	Ц К	H	다락/ 스레트 브럭/ 알루미늄 나무		브럭/ 스라브 브럭/철제 /스라브 P.E				브럭/ 스라브	브럭/ 스라브	₹														
	소재지 지번		신길동32-10-신길동40-16					변력/ 기기도 M 10 스라브	신설 중 40-10																
	当る			13							-	71	15												

제	22	51	호					시											보						2	2000.	3. 25	. (토	)
	山江			(本)	-	2추가	1 추가	幸才			<b>李</b>			1 李 7	-			추가				구청장				디미		李가	
	소유자	소		5 시작2동47-12		5 신길2동47-12	- 신길2동47-11	4 신길2동47-8			1 신길2동47-1			- 시길?돛47-14		1 0	신실2동]/(0-// 오셔(al.)	15 103年 103年	400。 1103호			385-1 영등포구청장				유자		신길2동47-11	
		~ ~		이삿ㅎ	1 5 -	이상호	아승이	정기섭			정봉선			ム. な. か.	- ) J			             				4	( ]	25간		선	Þ		_
	内山		$\vdash$	1	15	깐	36	=	23	1식	1식	17	1구	83	깐	33	7.	7	7.	17		당산동3가	를(도쿄	$\sim 47^{-}$		~		<u> </u>	_
T.	상투상	L(_m)						95.74	52.9					59.16		26.45						영등포구 당	도시계획사업(도로	신길동31-50~47-25간	尺	2 <u>∓</u> ₩0	<b>√</b>  □	<u></u> 무욕장업	
蛮	d u		라일락	라	주거	화장실	도 유 소	주거	주거	내돈	창고	정화조	수도	추거	화장실	주거	내는	상고	정화조	수도		• •		치 : 신길	型	상호명	祖 3	수 수 수 우 다 다	
	Ц Х				내라/ 라다		시멘트브릭 /스레트	세멘브럭 조와즙	목조와즙	알미늄		P.E		연와조기와 및 스라브		목조와즙	철재		P.E				Mo	않		多岩	1 '	영명	
	소개기 기배	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시 지 2 동 47-19	F 60 3	신길2동47-26	신길2동47-11, 10	신길2동47-8			신길2동47-1			시길?독47-14			,	신길2동47-9			땅	<u> </u>	ল মুম	고 자		소재지 지번		신길2동47-11	135-73
かべ	공부성   소개기 기배   구 ス   요 ㄷ   명자	トイン マセー マー タ ナード・ファー (III)		<ul><li></li></ul>	- - - -	사업시행구간추가	사업시행구간추가	8 사업시행구간추가			사업시행구간추가			) 사업시행구가추가	- - - - I			1 사	- - - -		क्र∘	사업	₩	₹	₩.	- 소재지 지번 물건 상호명 엄 중 <u>소 유 자</u>	신길동31-22 영업권 경복상회 담배소매업격업 김우태 신길동31.	사업시행구간추	-
	多百円	H		Ę	3	16	17	18			19			8	ì			21								돌	П	2	

### ◉영등포구고시제2000-26호

제 22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 1. 영등포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서울특 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 항,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 도시관리과(670-33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 3. 25 영등포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 구분 : 기정

ㅇ 규모

-등급:소로 -류별 : 3류 -폭(m) : 8

ㅇ 기능: 국지도로

o 연장(m): 36

o 기점(현지점): 신길동 137 ○ 종점(현지번) : 신길동 137

ㅇ 시용형태 : 일반도로

0 비고 : 폐지

○ 구분 : 변경 ㅇ 비고 : 폐지

○ 구분 : 기정

ㅇ 규모

-등급:소로 -류별 : 3류 -폭(m) : 6

ㅇ 기능: 국지도로

○ 연장(m): 113

o 기점(현지점) : 신길동 118(신길동

117-2

o 종점(현지번): 신길동 119-7(신길동 124-11)

ㅇ 시용형태 : 일반도로

보

ㅇ 비고 : 폐지

o 구분 : 변경 0 비고: 폐지

나. 관계도면: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 ◉영등포구고시제2000-27호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

- 1. 건설부 고시 제447호('89. 8. 4)호 시설변 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57호('90. 3. 5)로 변경 지적승인되고 영등포구고시 제1998-16호('98. 4. 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 104번지 일대 경부제4 시설녹지에 대하여 도시계 획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 업(녹지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 3. 25

영등포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등포구 영등 포동 618-104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

2) 사업의 명칭 : 영등포동 618-104호 주변 녹지조성

다. 사업의 규모: 녹지조성 527m²

라. 시행자의 주소 ·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마.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

-당 초 : 1998. 4. 3~2000. 4. 2

-변 경 : 1998. 4. 3~2002. 4. 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 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 따로붙임

#### 토지조서

여			지	시행	소유자		이해관	<b>난</b> 계인	
연 번	소재지지번	지목	적 (m²)	면적 (m²)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내용
1	영등포구영등포동 618-104	대지	182	182	영등포동 618-104	유춘선			
2	영등포구영등포동 618-105	대지	86	86	영등포동 618-105	고도선	중구충정로1가75	농협협동 중앙회	가압류
							영등포구여의도동 36-3(안산지점)	한국주택 은행	가압류
							종로구연지동136-74	대한보증 보험	가압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압류
							중구다동85	엘지신용 카드	가압류
							중구남대문로2가9-1 (송탄지점)	국민은행	가압류
							대전시대덕구송촌동 292-3	주)대우 캐피탈	가압류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22상록마을우성@ 323동1505	양근혜	근저당
3	영등포구영등포동 618-312	대지	179	179		서울특 별시			
4	영등포구영등포동 618-313	대지	7	7		철도청			
5	영등포구영등포동 618-314	대지	73	73	영등포동618-314	전순섭			-
계	5필지		527	527					

#### 건물조서

여		물건의		건물(	m²)	소유	·자	이해관계	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연 번	소재지지번	종류	구조및규격	공부상	저촉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외의권리 내용
1	영등포구 영등포동	주택	연와조와즙	1층 48.6		영등포동 618-104	류춘선			
	618-104	주택	목조와즙	1층 39.67						
		주택	연와조 슬라브	1층 54.15						
		주택	연와조 슬라브	2층 54.15	59					
2	영등포구 영등포동	주택	목조와즙	29.75	59	영등포동 618-105	고도선	중구충청로 1가75	농협협동 중앙회	가압류
	618-105	세면장			3			영등포구여의 도동36-3 (안산지점)	한국주택 은행	가압류
		화장실			1			종로구연지동 136-74	대한보증 보험	가압류
					1.0			중구다동85	주)엘지 신용카드	가압류

목재

^II	2231 <del>Y</del>		^					=	2000. 3.	20. (王)
여		물건의		건물(	m²)	소유	·자	이해관계	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연 번	소재지지번	종류	구조및규격	공부상	저촉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외의권리 내용
2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105	화장실			1	영등포동 618-105	고도선	중구남대문로 2가9-1 (송탄지점)	국민은행	가압류
								대전시대덕구 송촌동292-3	주)대우 캐피탈	가압류
								성남시분당구 정자동122상 록마을우성@ 323동1505호	양근혜	근저당
3	영등포구	주택	목재와즙	31.67	55	영등포동	전순남			
	영등포동 618-314	화장실			1	618-314				

#### 영업권조서

연번	소재지지번	상호	업종	소유자		비고
건민	소세시시 한	[ 영모	110	주 소	성 명	1 11 12
1	영등포구영등포동618-104	성림정공	제조업	영등포동618-104	황철수	

1식

# ●영등포구고시제2000-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0. 3. 25 영 등 포 구 청 장

-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 사업주체
  - 가. 범우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이수 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38)
  - 나. 흥화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승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4-31)
- 3. 사업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 3가 38 번지

나. 사업 면적 및 규모

ㅇ 구분 : 아파트

ㅇ 규모

-층 : 7~18

-동 : 2

-세대수 : 170

○ 대지면적(m²): 5,761.6

○ 건축면적(m²): 1,590.52

o 연면적(m²): 23,780.24

4. 사업시행기간 : 2000. 3. ~ 2003. 4.

5. 관계법률에 의거 의제 처리사항

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도시가스공급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다. 하수도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조의7 규정에 의한 하수도설치 인가

ㅇ 처리구역 : 가양하수 처리구역

ㅇ 배수구역 : 안양천

○ 위치: 양평동 3가 38

ㅇ 하수처리방식 : 합류식

○ 하수관거규모 : D=600mm. L=34m

시

6. 사업승인도면: 생략(영등포구 건축과에 비치)

#### ◉서초구고시제2000-15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43호(2000. 2. 29)로 우리구 방배동 산102-20일대에 대 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된 사항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 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적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570-6385~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 3. 25 서초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지적승인 조 서

o 구분 : 결정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산102-20일대

ㅇ 시설명 : 공원

ㅇ 시설의 세분 : 근린공원

o 면적(m²): 7.003

나. 관계도면: 생략(서초구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 ●서초구고시제2000-16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7호(2000. 1. 14) 로 우리구 서초동 1355(양지변전소)~시 경계 및 양재동 산67-1~사당변전소간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사

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570-6385~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 3. 25

서초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 정 지적승인 조서

○ 구분 : 변경

ㅇ 시설명 : 전기공급설비

○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355(양지변전 소)~시경계

○ 규모(m): -기정: 4,452

-변경: 감)323

-변경후: 4,129

0 비고

· 154kV 급송전선로 : 감)323m

-철거 : 623m

-추가설치 : 300m

· 송전설비 : 증)306.3m²

· 철탑 : 2기철거, 1기신설

구분: 변경

o 시설명 : 전기공급설비

○ 위치 : 서초구 양재동 산67-1~사당 변전소

○ 규모(m): -기정: 4,445

-변경 : 증)23

-변경후 : 4,468

0 비고

· 154kV 급송전선로 : 증)23m

-철거 : 160m -추가설치 : 183m

· 철탑 : 1기철거

나. 관계도면 : 생략(서초구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 ●강남구고시제2000-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시

- 1.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00-98호 (2000. 3. 3)로 공락공고한 강남구 논현 동 96-1~96-12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 여 도시계획법 제25조(실시계획인가) 규 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 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26조(실시계획인 가의 고시) 및 같은법 제27조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및 토 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 (지장 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0. 3. 25

강 남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 강남구 논현동 96-1~논현 동 96-12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 논현동 96-1~논현동 96-12간 도로확장공사
- 3.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
- 4. 사업의 규모 : 폭6.0m→10m(확장), 길 o] 80m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인가 일로부터 ~ 2000.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 지 · 지번 ·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조서 참조
- 7. 토지 또는 지장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별첨조서 참조
- □토지 및 건축물 (지장물)등 실태조사

○토지조서(1필지, 면적 : 316.9m²)

0 연번:1

○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105-12

ㅇ 지목 : 대 ○ 면적(m²)

-지적면적 : 316.9

-편입예정 면적 : 316.9

ㅇ 소유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3-8

-성명 : 이종대

ㅇ 연번 : 계

ㅇ 소재지 : 1필지

o 면적(m²)

-지적면적 : 316.9

-편입에정 면적 : 316.9

○ 지장물 조서

ㅇ 연번 : 1

○ 소재지 지번 : 강남구 논현동 105-12

ㅇ 물건의 종류 : 담장

ㅇ 구조 및 규격: 벽돌

○ 수량: 15.8m²

ㅇ 실제이용상황 : 담장

ㅇ 소유자

-주소 : 강남구 논현동 105-4

-성명 : 박양기

ㅇ 연번 : 1

○ 소재지 지번 : 강남구 논현동 105-12

ㅇ 물건의 종류 : 골프장지지대

ㅇ 구조 및 규격 : 철선

○ 수량: 4개

ㅇ 실제이용상황 : 골프장 지지

ㅇ 소유자

-주소 : 강남구 논현동 105-4

-성명 : 박양기

#### ●강동구고시제2000-8호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강동구고시 제1998-78호('98. 11. 26)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적승인된 "천호1동 221-3 노외주 차장 건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교통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 3. 25

강동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천호1동 221-3외2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⑦ 종류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 ( ) 명칭 : 천호1동 221-3 노외주차장건설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ㄱ. 변경전
- ⑦ 사업면적 : 2.744m²
- ↔ 규 모 : 자주식(지평식)주차장 102대
- ㄴ. 변경후
- ⑦ 사업면적: 6,607.29m²
- ④ 규모: 지상2층, 지하3층주차대수: 192대
- (4)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 일로부터 공사완공시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해당없슴"

-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해당없슴"
- (8)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슴"

### ●강동구고시제2000-9호

보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에 의거 민영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00. 3. 25 강 동 구 청 장

- 1. 사업명 : 보성연립재건축
- 2. 사업주체: 보성연립재건축 조합장 이용우 신우건설(주) 김철화
-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강동구 성내동 467번지 1, 2호

- 나. 대지면적 : 1,953.60m²
- 다. 연면적 : 6,906.18m²
- 라.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1층, 아파 트 1동 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업시행기간 : 2000. 5. ~ 2002. 5
- 5. 설계도서: 생략
- 6. 기타 의제처리 법률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로 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수도법, 하 수도법.

## ◉강동구고시제2000-1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69. 1. 18)로 도 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되 어 강동구 공고 제2000-54호(2000. 3. 6) 로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실시계획 공 람·공고한「천호동 123~21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하고 도시 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00. 3. 25 강동구청장

시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천호동 123~21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2) 사업의 명칭 : 천호동 123~21간 도 로확장공사
-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폭8M, 연장530M
- 라. 사업의 시행자 : 강동구청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로 부터 2년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 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따로붙임)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 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ㆍ 성명(따로붙임)
-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슴)
- 자.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동구 청 건설관리과 및 도시계획도로과 (480-1405~7)에 관련도면과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ㅇ 연번 : 1
- 소재지번 : 천호동114-4
- 지적(m²): -공부: 367

-편입: 367

- ㅇ 지목 : 도로
- ㅇ 소유자 : -성명 : 강동구
- ㅇ 연번 : 2
- 소재지번 : 천호동110-72
- 지적(m²): -공부: 417
  - -편입: 417
- ㅇ 지목 : 도로
  - 소유자 : -성명 : 강동구
  - ㅇ 연번 : 3
- ㅇ 소재지번 : 천호동56-40
- 지적(m²): -공부: 797
  - -편입 : 797
- ㅇ 지목 : 도로
  - 소유자: -성명: 강동구
- ㅇ 연번 : 4
- 소재지번 : 천호동83-29
- 지적(m²): -공부: 99
  - -편입: 99
- 0 지목 : 도로
- ㅇ 소유자
  - -성명 : 아증순
  - -주소 : 종로구 당주동 111
- ㅇ 연번 : 5
- ㅇ 소재지번 : 천호동82-29
- 지적(m²): -공부: 347
  - -편입: 347
- ㅇ 지목 : 도로
- 소유자: -성명: 강동구
- ㅇ 연번 : 6
- o 소재지번 : 천호동82-33
- 지적(m²): -공부:1

-편입:1

시

지목 : 답 소유자

-성명 : 오세경

-주소 : 관악구 신림4동534-13

ㅇ 연번: 7

o 소재지번 : 천호동82-32

○ 지적(m²): -공부: 36

-편입: 36

지목 : 답 소유자

-성명 : 손문식

-주소 : 천호동 82-32

ㅇ 연번:8

○ 소재지번 : 천호동82-31

○ 지적(m²): -공부: 56

-편입 : 56

0 지목:도로

○ 소유자: -성명: 강동구

ㅇ 연번 : 9

○ 소재지번 : 천호동82-30

○ 지적(m²): -공부: 30

-편입: 30

0 지목: 도로

ㅇ 소유자: -성명: 강동구

ㅇ 연번 : 10

○ 소재지번 : 천호동82-37

○ 지적(m²): -공부: 2

-편입 : 2

○ 지목 : 전

○ 소유자: -성명: 강동구

ㅇ 연번 : 11

o 소재지번 : 천호동82-1

○ 지적(m²): -공부:1

-편입:1

ㅇ 지목 : 전

○ 소유자: -성명: 강동구

ㅇ 연번 : 12

○ 소재지번 : 천호동72-4

○ 지적(m²): -공부: 73

-편입 : 73

○ 지목 : 대

ㅇ 소유자

-성명 : 심우봉

-주소 : 천호동 72

ㅇ 연번 : 13

o 소재지번 : 천호동73-9

○ 지적(m²): -공부: 11

-편입 : 11

○ 지목 : 대

ㅇ 소유자

-성명 : 안용준

-주소 : 천호동 73

ㅇ 연번 : 14

○ 소재지번 : 천호동21-213

○ 지적(m²): -공부: 141

-편입 : 141

○ 지목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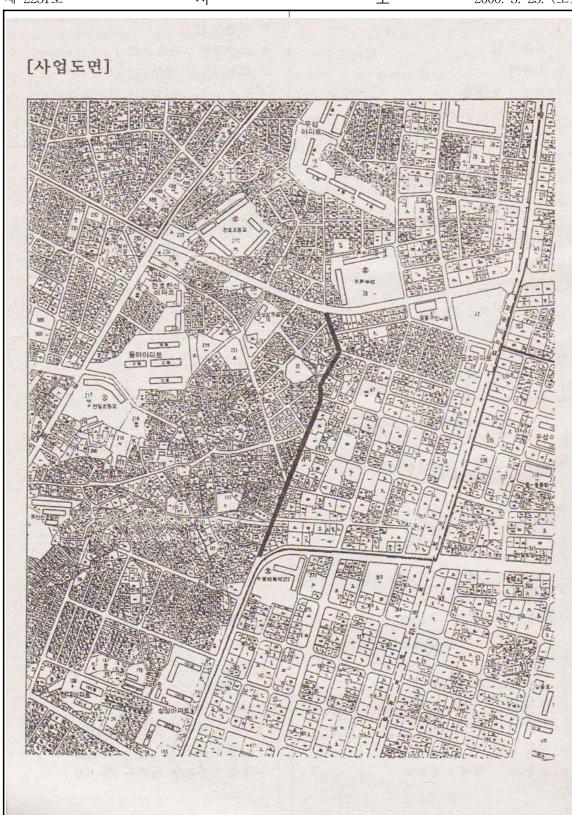
ㅇ 소유자

-성명 : 이재호

-주소 : 성북구 정능동 21-10

-성명 : 홍종혁

-주소 : 은평구 녹번동 29-106



# 구 공 고

# ●중구공고제2000-6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1. 서울특별시고시제1999-203호(1999. 7. 2)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제1999-48호(1999. 7. 15)로 지적승인된 청구역 교차로 도로확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해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7조의2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3.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

- 은 공람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공람장소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 과(☎2260-1405~7)
- 다.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2000. 3. 25 중 구 청 장

- ㅇ 공람요지
- 1. 사업시행지 : 신당동광장~금호동고개 구간중 청구역 교차로 주변
- 2. 사업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 3. 사업명칭 : 청구역 교차로 도로확장공사
- 4. 사업개요 : B=20~22m, L=180m
- 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6.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 7.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첨부
- 8.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 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첨부

#### 토지조서

□ 사업명 : 첫구역 교차로 도로활장공사

	VI 19 0 0 70 1	71	-/12		700	^F				
이러	소재지		기 저	수용할		소유자		이해관계인	1	
일련 번호	도세시 번호	지목	지적 (m²)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의 종류및내용	비고
1	신당동 304-746	도로	1.4	1.4	중구					
2	신당동 304-745	대	3	3	중구					
3	신당동 296-39	도로	4	4	도시철 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4	신당동 296-48	대	3	3	송영순	중구 신당동 296-15	도시철 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3/7)
					박효성	"				(2/7)
					박효진	"				(2/7)
5	신당동 296-51	대	5	5	김정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1 동남아파트 A동 107호	서울 특별시		지상권	
6	신당동 296-50	대	9	9	박우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68-1 주공아파트 607동 203호	도시철 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7	신당동 296-37	도로	842	842	중구					
8	신당동 296-49	대	131	131	고성원	광명시 하안동 고층주공 아파트 A동402동 104호				
9	신당동 296-52	대	2	2	서울시		도시철 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10	신당동 296-45	대	13	13	서울시					
11	신당동 295-45	대	8	8	서울시	1.05	도시철 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변호 변호 10 (m) (m) (m)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6 (m) 4 (m) 성명   12 (m) 4 (m) 성명   12 (m) 4 (m	제 2	251호			人	<b>-</b>		보		2000. 3. 25	5. (토)
1	A) 7)	> _1] →1		-1 -1	수용함		소유자		이해관계인	]	
1	일단 번호		지목		면적 (m²)	성명	주소				비고
14	12	신당동 295-53	대	26	26	서울시		도시철 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15   신앙동 296-55   대   2   2   서울시   #   전시	13	신당동 295-46	대	20	20	국	재정경제국				
1	14	신당동 295-51	대	8	8	인현구	중구 신당동 387-28				
17 신앙동 235-54 대 6 6 6 서울시 " 도청사 용답을 223-3 시장인	15	신당동 295-55	대	2	2	서울시	"				
17 전등 295-21 모모 73 73 국 전설부 19 신당동 295-21 모모 73 73 국 전설부 20 신당동 292-200 형과 135 135 서울시 서울시 교육감 20 신당동 294-124 대 99 99 이제원 전남구 암구성동 456 도시철 서울시 성동구 도공사 용담동 223-3 지상권 21 신당동 294-127 대 104 104 이준용 중구 신당동 294-63 도시철 서울시 성동구 조공사 용담동 223-3 지상권 22 신당동 294-123 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6	신당동 296-47	대	13	13	서울시	"	도시철 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19	17	신당동 295-54	대	6	6	서울시	n	도시철 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20	18	신당동 295-21	도로	73	73	국	건설부				
20 신당동 294-124	19	신당동 292-200	학교 용지	135	135	서울시	서울시 교육감				
22 신당동 294-123 대 1 1 1 이수 이단동 중구 건당동 294-63 도공사 용답동 223-3 시작용반   23 신당동 296-38 대 1 1 1 1 도시철	20	신당동 294-124	대	99	99	이재원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74동 301호	도시철 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23         신당동 296-38         대         1         1         토시철 등 구 용답동 223-3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기사부         의         기사부         의         기사부         의	21	신당동 294-127	대	104	104	이준용		도시철 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24 신당동 297-31 대 29 29 국 제무부	22	신당동 294-123	대	1	1	이석희	강남구 압구정동 433 현대A 112동 1106호				
25   신당동 294-128   대   4   4   이장훈   전남 보성군 율어민 문양리 238   (14/44)   (14/4	23	신당동 296-38	대	1	1	도시철 도공사					
20 전당동 294-125 대 4 4 이왕한 문양리 238 (1944) 10 이성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수 원자동 294-45 (10/44) 11 이성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수 원자동 238-31 (10/44) 12 이상당 294-125 대 14 14 김수 리두식 중구 신당동 294-33 한국주 상진동 130-6 수 사원시동 369 원대아파트 64동 301호 한국구 왕진동 130-6 수 사원원시 청동구 도공식 청당동 294-21 대 10 10 이연우 중구 신당동 294-21 전로(주) 서울시 성동구 도공식 청당동 223-3 지상권 12 신당동 294-121 대 10 10 이연우 중구 신당동 294-21 전로(주) 서울시 성동구 도공식 성당동 223-3 지상권 12 신당동 294-18 대 3 3 3 국 재무부 도공식 성당동 294-101 대 13 13 13 국 재무부 148-3 인당동 294-103 대 7 7 7 국 13 신당동 294-101 대 9 9 9 김영미 사율시 성동구 화왕1동 233-1 대 10 10 10 국 13 13 13 사율시 성당구 294-101 대 8 8 8 국 13 신당동 294-100 대 9 9 7 김영미 사율시 성동구 화왕1동 280-126 대 31 31 서울시 성동구 함당 294-101 대 8 8 8 국 13 신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구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구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0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0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0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0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0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0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0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0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0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0 8 8 국 14 전용시 성당동 294-101 대 8 0 8 8 국 14 전용시 성당유 295-14 도로 79 79 국 14 전용시 성당당 294-104 대 13 13 13 14 전용시 14	24	신당동 297-31	대	29	29	국					
10	25	신당동 294-128	대	4	4	이장훈	전남 보성군 율어민 문양리 238				(14/44)
10						이종애					(5/44)
1						이성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푸른마을 510동 1802호				(10/44)
1						이종태	서초구 원지동 238-31				(10/44)
26 신당동 294-125 대 14 14 김두식 중구 신당동 294-33 만나 한 한 창진동 130-6 -서소문지점 도시초문지점 도시청 서울시 성동구 도공사 왕답동 223-3 지상권 27 신당동 294-21 대 10 10 이연우 중구 신당동 294-21 전로(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8-3 근저당권 도공사 성당동 294-18 대 3 3 국 재무부 도공사 성당동 294-104 대 13 13 국 재무부 30 신당동 294-103 대 7 7 국 국 31 신당동 294-31 대 10 10 조국 32 신당동 294-99 대 7 7 7 국 34 도요구의 도요구의 도요구의 도요구의 도요구의 도요구의 도요구의 도요구의						이종연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아파트 64동 301호				(5/44)
27     신당동 294-21     대     10     10     이연우     중구 신당동 294-21     전로(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8-3     근저당권       28     신당동 294-18     대     3     3     국     재무부     교육     교육     교육       29     신당동 294-104     대     13     13     국     재무부     교육     교육       30     신당동 294-103     대     7     7     국     교육     교육     교육       31     신당동 294-31     대     10     10     국     교육     교육     교육     교육       32     신당동 294-100     대     9     9     김영미     서울시 성동구 화왕1동     교육     교육     교육     교육       33     신당동 294-100     대     8     8     국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35     신당동 294-126     대     31     31     서울시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국     건설부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26	신당동 294-125	대	14	14	김두식	중구 신당동 294-33	한국주 택은행	창진동 130-6 -서소문지점	근저당권	
28     신당동 294-18     대     3     3     국     재무부       29     신당동 294-104     대     13     13     국     재무부       30     신당동 294-103     대     7     7     국       31     신당동 294-31     대     10     10     국       32     신당동 294-99     대     7     7     국       33     신당동 294-100     대     9     9     김영미 서울시 성동구 화왕1동 280-1호       34     신당동 294-101     대     8     8     국       35     신당동 294-126     대     31     31     서울시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국     건설부								도공사	용답동 223-3	지상권	
28     신당동 294-18     대     3     3     국     재무부        29     신당동 294-104     대     13     13     국     재무부         30     신당동 294-103     대     7     7     국          31     신당동 294-31     대     10     10     국           32     신당동 294-99     대     7     7     국            33     신당동 294-100     대     9     9     김영미 소울시 성동구 화왕1동 280-1호          34     신당동 294-101     대     8     8     국           35     신당동 294-126     대     31     31     서울시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국     건설부	27	신당동 294-21	대	10	10	이연우	중구 신당동 294-21			근저당권	
29     신당동 294-104     대     13     13     국     재무부       30     신당동 294-103     대     7     7     국       31     신당동 294-31     대     10     10     국       32     신당동 294-99     대     7     7     국       33     신당동 294-100     대     9     9     김영미 서울시 성동구 화왕1동       34     신당동 294-101     대     8     8     국       35     신당동 294-126     대     31     31     서울시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국     건설부								도시철 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30 신당동 294-103     대     7     7     국       31 신당동 294-31     대     10     10     국       32 신당동 294-99     대     7     7     국       33 신당동 294-100     대     9     9     김영미 서울시 성동구 화왕1동 280-1호       34 신당동 294-101     대     8     8     국       35 신당동 294-126     대     31     31     서울시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국     건설부	28	신당동 294-18	대								
31     신당동 294-31     대     10     10     국       32     신당동 294-99     대     7     7     국       33     신당동 294-100     대     9     9     김영미 서울시 성동구 화왕1동 280-1호       34     신당동 294-101     대     8     8     국       35     신당동 294-126     대     31     31     서울시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국     건설부	29	신당동 294-104	대	13	13		재무부				
32     신당동 294-99     대     7     7     국       33     신당동 294-100     대     9     9     김영미 서울시 성동구 화왕1동       34     신당동 294-101     대     8     8     국       35     신당동 294-126     대     31     31     서울시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국     건설부	30	신당동 294-103	대	7	7	국					
33     신당동 294-100     대     9     9     김영미 서울시 성동구 화왕1동 280-1호       34     신당동 294-101     대     8     8     국       35     신당동 294-126     대     31     31     서울시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국     건설부	31	신당동 294-31	대	10	10						
33     신당동 294-101     대     9     의 시청에 280-1호       34     신당동 294-101     대     8     8     국       35     신당동 294-126     대     31     31     서울시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국     건설부	32	신당동 294-99	대	7	7	국					
35     신당동 294-126     대     31     31     서울시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국     건설부	33	신당동 294-100	대	9	9		서울시 성동구 화왕1동 280-1호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국 건설부	34	신당동 294-101	대	8	8						
	35	신당동 294-126	대	31	31	서울시					
37   시다도 205-50   대   15   15   구   구세천	36	신당동 295-14	도로	79	79		건설부				
37   전 5 등 290 - 30   대   13   13   국   국 개 8	37	신당동 295-50	대	15	15	국	국세청				

보

건물조서 □ 사업명 : 청구역 교차로 도로확장공사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용할 물건의 일려 소재지 구조 및 규격 면적 비고 소유권이외권리 의 종류및내용 번호 종류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m^2)$ 시멘트벽돌조 광명시 하안동 고층주공 지물포건물 건물 고성원 신당동 296-16 80 1 /스레트기와 아파트 402-104호 기보상 도시철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신당동 297-31 환기통 25 2 도공사 223-3 3 신당동 296-15 대문 1식 송영순 신당동 296-15 (3/7)화장실 1 박효성 (2/7)수도 1식 박효진 (2/7)계량기 정화조 1식 목조시멘트/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32-1 서울 지상권 신당동 296-34 건물 1 김정원 기와-지상1층 동남아파트 A동107호 특별시 대문 1식 화장실 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32-1 동남아파트 A동 107호 수도 서울시 신당동 296-34 김정원 지상권 1식 5 계량기 정화조 1식 담장 1식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668-1 주광아파트 607동 203호 목조/기와 6 신당동 296-33 건물 2 박우봉 지상1층 대문 1식 화장실 2 정화조 1식 수도 1식 계량기 신당동 292-66 담장 1식 서울시 수목 10주 정원등 1주 강남구 압구정동 193-3 현대아파트 74동 301호 8 신당동 294-13 담장 1식 이재원 철근콘크리트/ 9 신당동 294-63 건물 429 이준용 중구 신당동 294-63 143\*3층 연와조 지상3층 정화조 1식 철근콘크리트 신당동 294-19 건물 김만성 중구 신당동 294-19 14\*5층 10 70 지하1,지상4층 1식 정화조 대문 1식 서초구 목조/기와 신당동 294-21 건물 22 이연우 중구 신당동 294-21 서초동 근저당권 11 진로(주) 11\*2층 지상2층 1448-3 수도 계량기 정화조 세멘조/기와 12 신당동 294-72 건물 19 최영섭 중구 신당동 294-72 무허가건물 지상1층 대문 수도

계량기

이러	人 케 기	무거이		수용할 면적		소유자	Ó	해관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번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의 종류및내용	비고
13	신당동 294-21	건물	세멘조/기와 지상2층	14	장박민	중구 신당동 843 삼성아파트 108동 701호				무허가건물 7*2층
		수도 계량기		1식						
14	신당동 294-21	건물	세멘조/기와 지상2층	20	김창용	중구 신당동 294-21				무허가건물 10*2
		수도 계량기		1식						
15	신당동 294-31	건물	세멘조/기와 지상2층	18	김영미	성동구 하왕1동 280-1				무허가건물 9*2층
16	신당동 294-78	건물	세멘조/기와 지상1층	12	김영삼	중구 신당동 294-31				무허가건물
		정화조		1식						

# ●중구공고제2000-67호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처리하였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 중 구 청 장

o 업종 및 등록번호 : 승강기설치공사업 중구00-26-01

업체명: 삼성에버랜드(주)소재지: 중구 을지로1가 50

○ 대표자 : 허태학

법인 번호: 110111-0015762등록일자: 2000. 3. 16시공능력: 2,014,540천원

# ●중구공고제2000-68호

#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처리하였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중 구 청 장

업종 및 등록번호 : 토공사업 중구 00-02-01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구 00-13-01

○ 업체명 : 신송개발(주)

Ħ

○ 소재지 : 중구 쌍림동 151-11

ㅇ 대표자 : 유민상

○ 법인 번호 : 110111-1599012 ○ 등록일자 : 2000. 3. 16

ㅇ 시공능력: 962.192처원

# ◉용산구공고제2000-79호

용산구도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구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0. 3. 25

2000. 3. 25. (토)

용 산 구 청 장

1. 노선 인정내역

- 연번/구분/종류/노선명/노선번호/기점/종점/연장(m)/주요경과지/전용구간/중용구간: "별항 노선의 인정·인가조서 참조"
- 2.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조례" 시행일 이전의 위 노선 및 미 공고 노선에 대한 도로와 도로부속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 한다.
- 3. 위 구도 노선상 사유지는 제외한다.

제 2	251	호		_			)	Ŋ	_	_	_						보		_	_	_	_	20	)OC	). 3	. 2	5. (	(토)
		전용 중용 구간 구간	88,308	310	92	107	4,725	268	87	108	77	484	493	325	80	149	55	128	100	92	553	293	275	359	97	474	130	154
		연장 주요경과지 (m)	88,308	310	92 국민서관	107 금강여관	4,725 대한동운서울지사	268 매일환경일보	87 서계동 247-6	108 만리시장	77 서계동 252-13	484 세계빌딩	493 성안약국	325 대성빌라	80 엘림빌라	149 청파1가 89-7	55 회림빌라	128 현대빌라	100 청파1가 89-34	92 현대빌라 가동	553 청파1가 116-7	293 청파하이츠빌라	275 대화목욕탕	359	97 청파2가 119-30	474 동양빌딩	130 롯데기공㈜	154 종합기계상사
인정 · 인가 조서		사~	8	서계동 236-16	서계동 224-8	서계동 234-2	서계동 264-1	서계동 246-5	서계동 247-20	서계동 260-9	서계동 255-1	서계동 247-1	청파1가 3-11 (연화연립주택)	서계동 33-31	청파1가 1-115	청파1가 89-21	청파1가 1-14	청파1가 1-162	청파1가 89-32	청파1가 3-7	청파1가 115-8	청파2가 10-23	청파2가 114-4	청파3가 118-280	청파3가 118-119	청과2동 118-24	원호1동 37-2	원효1동 41-5
노선의		기 점		서계동 220-5	서계동 226-9	서계동 229-8	서계동 47-3	서계동 33-44	서계동 247-2	서계동 245-17	서계동 257-7	서계동 194-5 (새한카정비공사)	서계동 193-2 (명성카인테리어)	청파1가 59-2	17	청파1가 58-15	청파1가 1-27	청파1가 1-46	청파1가 91-41	청파1가 3-22	청파1가 173-2	청 파2가 101-1	청 파2가 90-1	청파3가 61	청파3가 121-1	원효1동 108-56	원호1동 105-1	원호1동 12-4
		사 전 성		501	202	909	208	206	516	519	520	525	527	528	529	531	532	533	535	537	540	544	546	547	220	552	554	929
		구 선 명	408개 노선	시계50	서계51	서계52	서계53	서계54	서계55	시계56	서계57	서 계58	서 계59	청과20	청파51	청파52	청파53	청 과54	청파55	청파26	청파57	청파58	청파29	청파60	청파61	원호50	원호51	원호52
		冷点		나	노	그 논	나	그	구 돈	구 돈	나	나	나	나	그	그	그	그 난	노	그	노	노	그 논	그	나	그	나	노
	산구】	라		신규	, "	"	"	"	"	, "	, "	*	*	"	, "	, "	신규	"	, "	"	"	,,	"	"	,,	"	, "	"
	[용산구]	8년 포리	更	1	2	3	4	5	9	2	$\infty$	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제 22	5 1	<u> </u>	-					人	.[										보	·					2	00	о. З	3. 2	5. (	(토)
전용 중용 구간 구간	100	483	200	132	62	191	80	200	103	140	09	195	414	158	207	183	168	139	126	272	445	187	84	461	86	122	145	94	179	230
연장 구요경과지 (m)	100 554	483 삼성전자 써비스	200㈜기술정보	132 중앙아트빌라	79 원호1동 22-17	191 789	80 아카데미문화사	200성회피아노	103 용산구 의료보험조합	140 성광교회	60 원효6동 129-11	195사랑원효1동노인정	414 백승빌딩	158 동원교회	207 용문동 78-10	183 중정빌딩	168 보인의원	139 풍기주유소	126 삼보빌딩	272 967	445 원효전자상가10동	187 아탐피아노	84 소망빌딩	461 화성인쇄화학㈜	98 경향신문	122 풍전아파트	145 풍전아파트	94청암동 64-1	179기아부페	230 610
<b>사</b> 고	원효1동 38-3	효창동 25(성수탕)	원호1동 17-28	원호1동 17-94	원호1동 22-12	문배동 1-3	원호1동 43-6	원호1동 81-7	원호1동 43-8	원호1동 27-41	원호1동 130-1	원호1동 27-36	신계동 2-21	원호1동 2-4	원호1동 1-86	원호1동 18-18	신계동 26-2	신계동 26-14	신계동 33	용문동 1-49	신계동 23-2	원효2동 8-1	원효2동 30-1	원효2동 124-1	원효2동 251-2	원효2동 103	원효2동 116-1	Skoh과트	<u> </u>	한강로1가 50-1
기 점	원호1동 39-1	원호1동 46-10	원효1동 13-20	원호1동 17-117	원호1동 21-1	원호1동 10-10	원호1동	원호1동 53-1(강성치과)	원호1동 45-8	원호1동 28-13	원호1동 129-22(상원빌딩)	원호1동 27-6	원호1동 2-3	원호1동 1-32(고당빌딩)	원호1동 2-1	원호1동 27-2	원호1동 36	원호1동 70-2	원호1동 70-2	원호1동 85-1	원효1동 92-8	원효2동 97-2	원효2동 62-1	원효2동 146-2	원효2동 278-12	원효2동 109-4	원효2동 109-4	청암동 60-2	갈월동 98-35	로1가 27-2
노선 변호	257	258	229	999	295	563	564	292	999	292	268	569	571	275	929	278	280	581	285	283	285	989	282	591	009	601	602	603	809	609
노 선 명	원호53	원호54	65호용	원호56	원호57	원호58	원호59	원호60	원호61	원효62	원효63	원호64	원호65	원호66	원효67	원효68	원효69	원효70	원효71	원호72	원효73	원효74	원효75	원호76	원효77	원호78	원효79	청암50	<u> </u>	한강51
る記	구 돈	구 돈	크 논	그 논	그	그	그	그	그	구 도	소	나	그	그 는		구 돈	구 돈	가	그 논	크 논	구 돈	크 논	구 돈	그	그 논	그	그	그	구 돈	구
구분	"	"	"	"	"	신규	"	"	"	"	"	"	"	"	"	"	"	"	"	"	"	"	신규	"	"	"	"	"	"	"
연변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20	51	52	53	54	22

제 22	251	ই	-					人	.										보						2	000	Э. З	3. 2	5. (	토)	
전용 중용 구간 구간	141	105	121	149	202	268	106	120	162	222	192	127	128	126	85	124	133	215	87	283	107	97	273	88	93	200	122	307	250	196	
연장 주요경과지 (m)	141 한강로1가 69-1	105 서울지방보훈청	121 한강로1가 158	149기독교복음침례회교육관	202 용산초등학교	568 우양직업전문학교	106미도빌딩	120 정광인쇄소	162 우석빌딩	222 한국통신용산전화국	192 태일기업	127 보원빌딩	128 효진빌딩	126 희영빌딩	85 우성장여관	124초원빌딩	133 서림장여관	215 국제빌딩	87 신용산빌딩	283 용산동5가 1-5	107 한강로3가 1-15	97 한강로3가 1-53	273 신용산빌딩	88 한강로3가 63-11	93 한강로3가 63-149	200 세아제강	122 동아일보사	307 한강로3가 65-198	250 아세아아파트	196 한강로3가 40-156	
そり	한강로1가 30-3	한강로1가 105	한강로1가 1-9	한강로1가 180-1	한강로1가 257-2	한강로2가 311-3	한강로2가 256-2	한강로2가 302	한강로1가 231-11	한강로2가 221-8	한강로2가 52-6	한강로2가 85	한강로2가 83-4	한강로2가 81-2	한강로2가 112-2	한강로2가 336	한강로2가 400-5	한강로3가 63-45	한강로3가 196	용산동5가 2-12	용산동5가 1-41	용산동5가 1-43	한강로3가 63-370	한강로3가 63-8	한강로3가 63-13	한강로3가 40-199	한강로3가 65-193	한강로3가 65-84	한강로3가 66-26	한강로3가 40-200	135-89
<u>万</u>	한강로1가 70-3	한강로1가 133-5	한강로1가 153	한강로1가 201	한강로1가 292-3	한강로2가 261-1	한강로2가 261-1	한강로2가 309-5	한강로1가 245-5	한강로2가 43-3	한강로2가 44-3	한강로2가 93-4	한강로2가 101(삼성생명)	한강로2가 119-4	한강로2가 116-4	한강로2가 319-4	한강로2가 391	한강로3가 225-1	한강로3가 193-2	용산동5가 1-13	용산동5가 1-13	한강로3가 63-8	한강로3가 230-2	한강로3가 63-41	한강로3가 63-162	한강로3가 40-147	한강로3가 65-159	한강로3가 65-449	한강로3가 65-54	한강로3가 40-669	
지 된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8	620	621	622	623	624	625	979	627	628	630	631	632	633	634	635	989	637	639	640	641	642	645	
노 선 명	한 강52	한강53	한강54	한강55	한강56	한강57	한강58	한강59	한강60	한강61	한강62	한강63	한강64	한강65	화366	한강67	한강68	한강69	한강70	용산50	용산51	한강71	한강72	한강73	한강74	한강75	한강26	한강77	한강78	한강79	
冷点	나	구 돈	그 논	구 돈	그 논	그 논	나	그	그 는	구 돈	그 논	나	구 돈		나	구	구 돈	구 도	그 논	그	나	그 논	그 논	크 논	구 돈	나	크 논	그 논	크 논	구 돈	
十	"	"	"	"	"	"	"	"	"	신규	"	"	"	"	"	"	"	"	"	"	"	"	"	"	"	*	신규	"	"	"	
요 라	99	22	28	29	09	61	62	63	64	. 65	99	29	89	69	20	71	72	73	74	75	92	22	78	79	80	81		83	84	82	

제 22		호						시											보						2	000	0. 3	. 25	5. (1	三)
전용 <del>중용</del> 구간 구간	198	118	119	119	216	183	114	116	383		294		288	100	172	355		145		235	165		346	325	62	122	295	310	431	
연장 주요경과지 (m)	198 한강로3가 40-322	118신원빌딩	119신용산교회	119 용산외과의원	216 동제빌딩	183 서빙고동 4-100	114아리랑모텔	116 영산골프랜드	383 한신아파트		294 한신아파트		288 용산2가동 5-894	100 용산2가동 5-1047	172 용산2가동 5-810	355 용산2가동 5-1034		145 용산2가동 5-640		235 용암목욕탕	165 용산2가동 5-464		346 시립용산2가노인정	325이태원2동 210-23	62 이태원2동 246-13	122 690	295 688	310 이태원2동 258-38	431 이태원2동 322	
<i>사</i>	한강로3가 40-369	한강로2가 220-1	한강로2가 197-4	한강로3가 63-50	한강로3가 63-241	서빙고동 4-54	이태원2동 273-10	이태원2동 274-2	용산2가동 11-13	(용산2가동사무소)	용산2가동 47-1	(용암목욕탕)	용산2가동 35-30	용산2가동 35	용산2가동 42-7	용산2가동 34-3		용산2가동 36-3	(쌍둥이빌라)	용산2가동 25-1	용산2가동 25	(용산2가동노인정)	용산2가동 5-1524	이태원2동 207-3	이태원2동 247-1	이태원2동 243-36	이태원2동 210-43	이태원2동 258-47	이태원2동 154-7	(이태원빌라)
长 [/	한강로3가 40-518	한강로2가 213-2	한강로2가 207	한강로3가 63-120	한강로3가 63-99	서빙고동 4-52	이 태원2동 714	이 태원2동 638	용산2가동 47-17	(한신아파트)	용산2가동	46-6(용암파출소)	용산2가동 5-754	용산2가동 35-7	용산2가동 44-7	용산2가동	38-20(새마흘금고)	용산2가동 39-9(태능식당)		용산2가동 26-9(종점약국)	용산2가동 24-16(명춘장)		용산2가동 15-9	이 태원2동 211-14	이 태원2동 229-5	이 태원2동 5-13	이 태원2동 258-9	이 태원2동 3-3	이태원2동 561	·
나 전 호	646	647	648	649	920	829	661	299	663		664		999		299	899		699		671	672		675	683	289	889	069	691	692	
나 선 명	한강80	한강81	한 강82	한 강83	한강84	서 빙 고50	이 태원20	이 태원51	용산2가50		용산2가51		용산2가52	용산2가53	용산2가54	용산2가55		용산2가56		용산2가57	용산2가58		용산2가59	이 태원52	이 태원53	이태원34	이태원25	이 태원26	이 태원57	
冷点	나	그 논		그	그	나	구 돈	그 논	그		구 돈		구 돈	그 논	노	노		그		구 돈	구 돈		구 돈	그 논	그	나	노	나	나	
나	"	"	"	"	"	"	"	"	"		"		"	"	"	신규		"		"	"		"	"	"	"	"	"	"	
연변	98	87	88	89	90	91	92	93	94		92		96	97	86	66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제 2251 호	٨	보	2000. 3. 25. (토)
전용 중용 구간 구간 199 389 268 563	344 315 170 264 307 336 445 263	200 302 153 446 182 146 280	168 165 149 192 151 138
연장 주요경과지 (m) 199이태원초등학교 389이태원1동 44-32 268이태원1동 79-53 563 조달아파트	344 동병고동 1-47 315 보광동 366-2 170 보광동 217-16 264 보광동 216-33 307 한남2동 723-325 336 한남2동 726-359 445 한남2동 726-345 263 스페인대사관	200 한남동 713-7 302 한남동 729-36 153 한남동 532-8 446 한남2동 647-36 182 한남동 614-13 146 한남동 644-2 280 단국대학교	168 성아맨션 165 한남동 657-115 149 한남동 639-5 192 한남2동 653-66 151 한남동 653-44 138 한남동 657-15
종 점 이태원2동 455-4 이태원1동 36-41 이태원1동 72-35 이태원1동 387-5	이태원1동 1-77 보광동 217-59 보광동 306 보광동 726-332 한남동 726-322 한남동 726-322 (한남경정비) 한남동726-111 (혈사이트아파트)	한남동 712-10 한남동 682-1 한남동 641-2 한남동 765-27 한남동 578-19 한남동 32-6 (멕시코대사관)	한남동 73-2 한남동 704-16 한남동 641-9 한남동 653-91 한남동 653-105 (한남별라) 한남동 657-17
	이태원1동 1-95 보광동 387-1 보광동 218-96 한남동 795-2 한남동 726-63 한남동 726-54	한남동 732-2 한남동 696-14 한남동 619-5 한남동 619-3 한남동 620-5 한남동 657-47	한남동 30-1 한남동 657-104 한남동 639-8 한남동 633-1 한남동 653-7(타이대사관) 한남동 657-41
유 변호 698 699 701 704	705 707 709 710 712 713 714 715	717 718 720 721 722 723 735	736 737 738 739 740
노 선 명 이태원58 이태원59 이태원60 이태원61	이태원62 보광50 보광51 보광52 한남50 한남51 한남53 한남53	한남55 한남56 한남57 한남58 한남59 한남60	한남62 한남63 한남65 한남65 한남65
1 "?		H H H H H H H	H H H H H
# = = = = = = = = = = = = = = = = = = =		+++++++	

제 22	5 1	<u>.</u>	-		_	_	_	人	.[		_		_		_	_	_	_	보			_			2	000	0. 3	3. 2	5. (	토)	_
전용 중용 구간 구간	173	391	982	312	181	109	392	117	174		199	62	234	171	115	280	146	80	149	175	215	100	140	604	675	367	259	326	822	208	
연장 주요경과지 (m)	173 보광동 240-30	391 한남동 657-25	685 한남동 732-73	312 보광동 760-39	181 한남동 684-85	109 한남동 684-51	392 한남동 101-1	117 한남동 173-2	174 한남동 510		199 연화연립주택	62 청파1가 89-66	234 만리중앙교회	171 만리중앙교회	115 서계동 252-39	280 청파초등학교	146 청파1가 202-7	80 청파1가 202-11	149 청파1가 202-21	175 청과동교회	215 평화주택	100 서계동 261-23	140 용산2가 5-203	604 남산주공아파트	675 캐나다대사관	222 222	259 779	326 삼각지주차장	822 동양제과	208 새마을경로회관	
<b>№</b>	한남동 653-15	한남동 684-65	이태원1동 136-6	한남동 764-20	한남동 685-1	한남동 684-32	한남동 468-5	한남동 115-1	한남동 522-1	(한남아파트)	청파1가 3-102	청파1가 89-63	서계동 1-115	서계동 249-1	서계동 252-65	청파2가 1-157	청파1가 200	청파1가 203	청파1가 202	청파1가 89-27	청파1가 89-49	서계동 245-36	용산2가동5-1471	이 태원2동 255-1	이태원2동 258-21	이 태원2동 258-279	이 태원2동 258-228	한강로3가2-352	신계동 35-6	신계동 1-57	135-92
기 점	한남동 653-56	한남동 657-34	한남동 686-42	한남동 732-191	한남동 685-44	한남동 684-53	한남동 87	한남동 116-2	한남동 497		청파1가 1-152	청파1가 89-61	서계동 260-18	서계동 252-11	서계동 252-15	청파1가 205-5	청파1가 205-5	청파1가 203-12	청파1가 204-10	청파1가 89-152	청파2가 1-34	서계동 261-19	용산2가동 5-1714	이태원2동 262-22	이 태원2동 255-2	이 태원2동 260-213	이 태원2동 258-357	한강로2가 2-199	문배동 33-3	신계동 2-8	
사 전 성	742	743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8	759	092	761	762	292	764	292	992	292	892	692	772	773	775	779	780	781	783	784	
노 선 명	화유68	69무호	화남70	한남71	한남72	한남73	한남74	한남75	92무관		청파62	청파63	서계60	서계61	서계62	청파64	청파65	<b>多中66</b>	为平67	<b>参</b> 平68	청파69	시계63	용산2가60	이 태원63	이 태원64	이 태원65	이 태원66	한강85	문배20	신계50	
<b>상</b> 타	구 도	구 도	구 돈	구 돈	나	나	그 난	나	나		구도	구 돈	구	그	구	그 논	크 논	그	나	나	나	나	그	나	감	나	구 돈	구	구 돈	구 돈	
라	, "	"	"	"	*	"	*	*	*		"	"	*	*	"	신규	"	*	*	*	"	*	"	*	"	"	"	*	"	, "	]   
연원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4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기 점         중         점         (m)         주요경과기         건강           40-23         문비동 57-13         194 789         구간           7-121-20         원효로27+43-12         247 566         구간           5-48         용단용 8-3         252 583         구간           5-71         도원동 1-23         252 583         구조           5-74         도원동 1-23         252 583         -           5-266         호관동 1-186         158 47 4-13         -           5-266         호관동 5-186         158 47 4-13         -           7-1-33         용산동 5-186         156 49 4-13         -           7-1-33         용산동 5-186         156 49 4-13         -           7-1-34         용산동 5-186         158 41 4-13         -           7-1-35         용산동 7-166-1         910 7-8 대사관         -           8-5-5         16-186         173-40 4-13         -           8-5-7         이태원15 187-5         327 40 40 40 40         -           8-18-8-5         이태원15 187-6         327 40 40 40 40         -           8-18-9-6         이태원15 187-8         180 41 40 40 40         -           8-18-1-1         이태원15 182-2         327 40 40 40 40         -	제 2	251	_ ই	-					人										5	Ź					2	200	0. 3	3. 2	5. (	(토)	_
기 점         총         점         역장         주요경과기         권소           40-23         문배동 57-13         194 789         구간         구간           7+121-20         원효로27+43-12         24/1566         구간         구간           5-48         용문동 8-3         22/2583         구간         구간           5-71         도원동 1-23         22/2783         구간         구간           5-71         도원동 1-39         78 청구목욕탕         78 청구목욕탕         78 청구목욕탕           5-200         효원동 5-186         156 이광실업고등학교         78 청구목욕탕         78 청구목욕탕         78 청구목욕탕           5-266         한남등 4-1         215 학남 4-13         78 학남 4-13	왕 수 수																														
7 점 중 점 (m) 수요 경 40-23 문 바 동 57-13 194 789 7 121-20 원효료27443-12 247 566 5-48 용-3 252 583 5-71 도원동 1-23 254 기화발라 5-290 도원동 1-23 254 기화발라 5-290 도원동 1-23 254 기화발라 5-296 효광동 5-186 156 의원임고 4-7(혈사이트) 현남동 4-1 215 15 학남동 4-1 7 1-33 용산동3가 106-1 215 학남동 4-1 7 1-33 용산동3가 106-1 215 학명 이 배원1동 58-5 이 배원1동 187 181 이 배원1동 58-5 이 배원1동 187 181 이 배원1동 58-5 이 배원1동 187 181 이 배원1동 187 184 학의 학원 학원 학원 학원 188-188 189-189 254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188-189 이 배원1동 155-6 325 이 배원1동 168-12 231 학원 학원 학원 학원 188-189 이 배원1동 152-23 335 학남학 109 대원1동 523 189-26 548 1137-56 114월 25 200-6 114월 15 52 200-6 1137 이 배원1동 52 200-6 1137 이 배원1동 52 200-6 1137 이 배원1동 52 200-9 보광동 265-962 271 보광동 265-85 255 265 265 265-269 1153 보광동 265-85 265 265-269 1153 보광동 265-85 265-269 1153 보광동 265-85	전 구 각		247	252	254	78	156	215		91	910	325	181	327	894	251	336	332		202	198	173	1,071		109	112	271	497	153	336	
7 점 40-23 가 121-20 5-48 5-48 5-71 5-290 4-7(할사이트) 7-1-33 5-266 4-7(할사이트) 7-1-33 5-266 7-1-33 5-266 7-1-33 5-266 7-1-33 5-1-41 5-5-20 5-1-33 5-1-33 5-1-33 5-1-33 5-1-33 5-1-33 6		194 789	247 566	252 583	254 기화빌라	78 청수목욕탕	156이광실업고등학교	215 한남동 4-13		삼각지어린이	910 가봉대사관	325이태원1동 63-26	181이태원시장	327 남산유치원	894 벨기에대사관저	251 해밀턴가든	336 한남동 106-4	335 캐나다대사관저		505이태원빌라	198이태원2동 205-29	173 이태원2동 204-11	1,071 한남1동 620-171			112구정빌라	271	497 보광동 265-196	153 보광동 265-436	336 보광동 270-5	
7 점 40-23 7 121-20 7-121-20 5-48 5-71 5-290 5-266 4-7(회사이트) 7-1-33 7-1-33 5-266 4-7(회사이트) 7-1-33 5-266 5-123-26 5-123-26 5-123-1 5-12		문배동 57-13	원효로2가43-12	용문동 8-3	도원동 1-23	도원동 1-39	효창동 5-186	한남동 4-1	(말레이지아대사관)	용산동3가 106-1			태원1동	태원1동	이태원1동	태원1동	盂				이태원2동 200-5	이태원2동 200-6	보광동 2-3	(소산하이츠맨션)	이태원1동 136-1	이태원1동 137-8	지원 502-625 지원 1925	지원 Se2-82	보광동 265-269	1 3 267-5	135 - 93
		바	효로1가 121	용문동 2-48	용문동 5-71	효창동 5-290	효 창동 5-266	한남동 4-7(힐사이드)		산동3가	원1동	원1동	원1동 181-8(제일은	원1동	이태원1동 123-26	원1동	이태원1동	이태원1동 101-40	(이집트대사관)	이태원2동 234-1	원2동	대원2동	원1동		태원1동	태원1동	이태원1동 20-9	이태원1동 20-5	보광동 265-17	보광동 274-17	
지원	과 선	7887	789	792	793	797	800	801	) )	802	804	808	810	811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6	827	837	838	
노 선 명 문배51 용문50 용문50 용운51 호청50 호청51 호청51 이태원68 이태원72 이태원72 이태원76 이태원76 이태원76 이태원76 이태원76 이태원76 이태원76 이태원76 이태원76 이태원76 이태원78	전	문배51	원효80	05금융	용문51	효장50	효장51	한남77	: 1 J	용산52	이 태원67	이 태원68	이 태원69	이 태원70	이태원71	이 태원72	盃	이 태원74		이 태원75	이태원76	이 태원77	이태원78		이 태원79	이 태원80	이 태원81	이 태원82	보광53	보광54	
1 "?	함																									١.				버	
#	坤			1					-														巾							는 "	
				짓					!														신							190	

제 22	251	قِ	5					人	.[										보						2	000	0. 3	3. 2	5. (	토)	
전용 중용 구간 구간	190	225	337	109	123	130	503	146	284	814	120	226	463	303	549	594	109	209	248	124	192	225	177	188	113	233	271	117	357	100	
연장 주요경과지 (m)	190 보광동 266	225 한남동 686-14	337 한남동 744-25	109 한남동 739-17	123 한남동 744-9	130 한남동 683-30	503 한남동 683-132	146 한남동 683-8	284 한남동 684-6	814 한남동 742-3	120 한남동 739-21	226 한남동 744-16	463 서빙고동 106-2	303 동병고동 69-1	549 주성동 42-13	594 한전보광동지점	109 주성동 43-1	508 울고 유울 85-52	248 동병고동 28-12	124이태원1동 127-15	192 뉴명쇼핑센타	225 이화빌라	177 보광동 253-4	188 보광동 248-4	113 보광동 80-1	233 보광동 263-12	271 보광동 9-81	117 보광동 65-2	357 보광동 14-5	100 보광동 2-18	
名	보광동 265-164	한남동 686-31	한남동 743-26	한남동 741-8	한남동 738-13	한남동 683-127	한남동 683-127	한남동 683-19	한남동 684-24	한남2동 133-6	한남동 739-17	한남동 744-5	서빙고동 51	동빙고동 39-2	보광동 123	동빙고동 7-40	주성동 43-17	동빙고동 43	보광동 191-12	이태원1동 132-1	이태원1동 72-8	이태원1동 79-53	5-292 울윤百	보광동 258-1	11-6 1-12	보광동 260-1	15- <b>2</b> 92 울윤百	89 울윤百	1 3 265-26	보광동 27-8	135-94
7 松	보광동 265-270	한남동 736-1	한남동 737-1(제일기획)	한남동 737-16(유정약국)	한남동 738-1	한남동 682-20	한남동 685-21	한남동 683-1	한남동 684-1	한남동 739-27	한남동 739-28	한남동 743-24	서빙고동 133	동빙고동 98-1	주성동 53	주성동 52-2	주성동 43-30	동빙고동 33-13	동빙고동 28-7	이태원1동 131-3	이태원1동 130-1	이태원1동 130-6	보광동 259-1	보광동 251-10	533-e 123-e	보광동 10-59	보광동 10-58	보광동 63-2	보광동 75-1	보광동 15-13	
지 전 성	848	850	851	852	853	854	855	928	857	828	826	098	861	998	870	871	872	873	874	928	877	878	884	288	688	890	892	895	868	899	
노 선명	보광22	한남78	한남79	한남80	한남81	한남82	한남83	한남84	한남85	한남86	6유유2	한남88	서빙고51	운 위 고 50	주성50	주성51	주성52	동 빙 고51	동 빙 고52	이 태원83	이 태원84	이 태원85	958年百	13分子	1 광28	1 광29	09&百	보광61	798日	보광63	
冷	나	구 돈	그	구 돈	그 논	그 논	그 논	그 논	그	그 근	五 논	나	그 논	그	나	구 돈	구 돈	구 돈	그 논	그 논	그	그 논	구 돈	구 돈	구 돈	그	크 논	구 돈	크 논	구 도	
十	,,	, "	, "	· "	, "	, "	, "	, "	,,	, "	신규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 "	, "	
연변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701	202	203	204	202	206	207	808	506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4	219	220	

	25	1 3	Ē					,	Ŋ											보						20	000	). 3	. 25	5. (3	토)	
전용 중용 구간 구간	220	292	994	L	c/	98	128		112	736		08		302		788		105		123		799		374		128		122		219		
연장 주요경과지 (m)	220 보광동 265-129	267 한남2동 269-6	994서부성결교회	5	6-7.17. 웅7. 포함(다)	86 제일은행	128 삼보아파트		112 신성아파트	736 용산파출소		80 맨션아파트		302 현대한강아파트		788이촌역		105 제일아파트		123미주맨션아파트		662 신용산초등학교		374 노들맨션아파트		128이촌1동사무소		122 한강우체국		219 용강중학교		
Mo Kr	보광동 265-822	한남1동 620-181	이촌2동 199-1	(새담터전수교회)	이손2동 212-18	이촌2동 206-17	이촌2동 203-69	(농협판매점)	이촌2동 199-50	한강로3가 40-911	(용사의집)	이촌2동 193-4	(성문교회)	이촌2동 400	(현대한강아파트)	이촌1동 301-78	(용강중학교)	이촌1동 302-55	(동부아과트)	이촌1동 302-48	(미주맨션)	이촌1동 301-10	(로얄아파트)	이촌1동 302-64	(장미아파트)	이촌1동 301-179	(경로당)	이촌1동 301-252	(대영아파트)	이촌1동 301-110(천주교)		135-95
下 公	보광동 265-92	한남1동 568-134	이촌2동 212-1(쌍용주유소)	ار 17	212-6(%	이촌2동 205-2(제일은행)	이촌2동 203-1(영천의원)		이촌2동 191-3(향원장)	한강로3가 40-73	(빗창빗물펌프)	이촌2동 193-3(강변맨션)		이촌2동 192-1(이촌카센타)		이촌1동 301-155	(수정아파트)	이촌1동 302-82		이촌1동 302-51(국민은행)		이촌1동 404(한가람아파트)		이촌1동 302-96		이촌1동 410	(한가람아파트208동)	이촌1동 409	(한가람아파트211동)	이촌1동 301-75		
나 전 호 호	904	206	910	5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5		976		
노 선 명	보광64	한남89	이孝50	17	0(全5)	이촌52	이촌53		이촌54	한강86		이촌55		이촌56		이촌57		이촌58		이촌59		이季()		이촌61		이촌62		이촌63		이촌64		
Mo uh	그	그 논	그 논			구 돈	나		구 돈	크 논		그 는		그 논		그 논		그 근		그		그 는		크 논		그		그 논		나		
바	"	"	"		<i>"</i>	"	*		"	"		"		"		"		"		"		"		신규		"		"		*		
년 년	221	222	223	2	7.74	225	226		227	872		229		230		231		232		233		234		232		236		237		238		

제 22	251	1 3	2					,	۸Į										-	보						20	000	). 3	. 2	5. (	토)
전용 중용 구간 구간	802	553	144	108	160	196	375	263	187	275	215	217	275	441	268	149	128	122	52	45	133	120	63	80	89	297	195	255	120	152	123
연장 주요경과지 (m)	802 선천중,상업고등학교	553 대한천리교분회	144 삼창빌라트	108 희망속셈학원	160 청파2가 47-15	196 숙명여대	375 청파맨션	263 한마음빌라트	187 효창파출소	275 청산상업	215 서울도시가스	217 효장그리스도교회	275㈜신동아	411 효도빌라	268 대성빌라A동	149 백오빌딩	128 동호빌딩	122 대림주차장	52 용문동 32-130	45성심모자원	133 965	120 966	63 용문동 8-146	80 영화당한의원	68 용문동 83-1	297 원효2가파출소	195 영성교회	255 962	120 용문동 50	152이화보습학원	123 용문동 38-178
<b>수</b> 전	원호1가 22-39	청 파2가 132-16	청파1가 198-11	청파1가 97-58	청과2가 60-1	숙명여대	청파2가 8-23	청파1가 89-24	효창동 3-209	효창동 3-202	청파3가 132-88	효장동 5-17	효장동 5-1	효창동 5-219	효창동 5-44	효창동 5-85	효창동 5-500	용문동 32-15	용문동 32-91	도원동 4-6	용문동 1-62	용문동 12-4	8-33	용문동 12-9	용문동 15-1	원효3가58-1	원효로1가 88-5	도원동 2	용문동 43-2	용문동 38-214	용문동 38-162
지 점	청파3가 116-61	청파2가 63-5	청파2가 10-36	청파1가 84-2	청과2가 55-9	숙명여대	청과2가 1-146	청과2가 6-16	효창동 3-150	효창동 3-9	청 파3가 132-54	청파3가 132-23	효창동 5-36	효창동 5-582	효창동 5-674	효창동 5-666	효창동 5-107	8문동 29	8돈욷 35-51	도원동 9-126	용문동 8-20	용문동 8-139	8-54	용문동 10-4	용문동 18-19	원효2가 90-1	용문동 27-23	용문동 41-33	용문동 40-3	용문동 38-52	용문동 38-191
노선 변호	934	932	936	937	939	941	942	943	944	946	951	952	953	954	922	926	957	096	362	963	964	965	996	296	896	696	970	972	974	977	826
노 선명	청파70	청파71	청파72	청파73	청과74	청과75	청과76	청파77	호 창52	효 장53	청파78	청파79	호 창54	효 창55	효 장56	효 장57	효 장58	8-11-25	85금융	용문24	95금융	95금융	25금융	85금융	65금융	원효81	09금융	용문61	8~문65	8 또 63	용문64
冬草	나	구 돈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노	노	노			노		노	구 돈	그 논	그	노		나	나	나	그 논
] 구류	"	<i>"</i> (	"	"	*	"	" (	*	"	*	*	"	"	신규	*	"	"	"	"	"	"	" (	"	"	"	*	*	*	" "	*	) 신규
원 판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제 22	5 1	2	5					人	.[										보						2	000	Э. З	3. 2	5. (	토)	
전용 중용 구간 구간	135	181	107	367	346	159	89	98	116	192	216	142	121	210	163	39	06	131	286	93	357	447	186	134	06	113	89	41	174	185	
연장 주요경과지 (m)	135 980	181 용문동사무소	107 용문동 38-47	367 로즈빌라	346 용문하이츠빌라	159 신창동 85	89 신창동 77-10	86 성원주택	116신창동 77-30	192 성심수녀회	216 살토트성바오로수녀원	142 경희주택바동	121 경희주택D동	210 심원빌라	163 선인중앙교회	39 한남2동 726-239	90 한남2동 726-217	131 한남2동 726-193	286 한남2동 726-357	93 한남2동 726-435	357 한남2동 728-4	447 순천향대학병원	186 순천향대학병원	134 순천향대학병원	90 순천향대학병원	113 한남2동 657-11	68 한남2동 657-9	41 한남2동 682-46	174 한남2동 743-8	185 한남2동 744-12	
<b>사</b> 0 참대	융문욷 38-36	용문동 38-156	8돈 38-36	용문동 38-248	용문동 38-128	신창동 82-7	신창동 77-14	신창동 77-39	신창동 77-27	신창동 31-2	산천동 1-5	신창동 80-1	신창동 82-13	원효로4가 90	원호로4가 80	한남2동 793-5	한남2동 726-250	한남2동 726-343	한남2동 726-331	한남2동 726-348	한남2동 727-3	한남2동 92-204	한남2동 657-201	한남2동 657-139	한남2동 657-51	한남2동 657-172	화남2동 657-7	한남2동 683-18	한남2동 738-37	한남2동 743-14	135 - 97
기 점	용문동 38-175	용문동 38-143	용문동 38-51	8문동 38-20	용문동 38-118	신창동 80-22	신창동 77-86	신창동 77-34	신창동 77-114	신창동 88-2	신창동 96-1	신창동 56-36	산천동 1-32	원효4가 35-1	산천동 82	한남2동 792-31	한남2동 726-231	한남2동 726-397	한남2동 726-239	한남2동 726-328	한남2동 696-3	한남2동 657-131	한남2동 657-158	한남2동 657-64	한남2동 657-44	한남2동 657-124	한남2동 657-4	한남2동 683-41	한남2동 743-27	한남2동 744-25	
는 다 전 전	626	980	981	982	983	985	986	286	886	686	066	991	992	993	994	1000	1001	1002	1003	1004	1007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7	1018	
노 선 명	59금융	99금융	29금융	89금융	69금융	신창50	신창51	신창52	신창53	신창54	신창55	신창56	신창57	원효82	산천50	한남90	한남91	한남92	한남93	한남94	한남95	96무관	한남97	한남98	한남99	한남100	한남101	한남102	한남103	한남104	
冷点	구 돈	구 돈	그 논	노	구	나	구 돈	그 논	그 논	구	구 돈	그 논	그 논	나	그 논	구 돈	구 돈	그 논	나	그 논	나	그 논	五 논	노	구 돈	나	구 돈	구 돈	구 돈	구 도	
구	"	"	"	"	"	"	"	"	"	"	"	"	"	"	"	"	신규	"	"	"	"	"	"	"	"	"	"	"	"	"	
성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586	23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제 22	251	_ ই	-	_	_	_	_	人	.[	_	_	_	_	_	_		_	_	보			_		_	2	00	0. 3	3. 2·	5. (	토)	_
중 구 구																															
전용 구간	148	135	176	107	69	107	93	63	39	124	72	178	181	289	222	143	180	101	119	29	300	170	100	100	113	326	205	400	273	88	
주요경과지	한남2동 743-10	한남2동 743-43	한남2동 653-9	후판울무교	한남2동 632-137	한남2동 732-36	청파1동 234-16	청파1동 32-1	강병홍국주유소	원효로2가 52-17		원효로2가 25-9	한강로3동 3-10	시장파출소	원효전자상가		한강로3가 2-36	한강로3가 312-4	이촌2동 205-4	이촌2동 206-9	이촌2동 199-52	샛	이촌2동 203-28	이촌2동 203-12	이촌2동 203-21	한강로3가 40-210	한강로3가 40-221	한강로3가 40-313	한강로3가 40-640	한강로3가 40-136	
ය දුර (m)	148	135	176	107	69	107	93	63	39	124	72	178	181	289	222	143	180	101	119	62	300	170	100	100	113	326	202	400	273	88	
<b>₩</b> 0	한남2동 743-13	한남2동 743-1	한남2동 653-4	화남2동 86-7	한남2동 732-13	한남2동 732-19	청파1동 234-26	청파1동 27-2	청암동 168-39	원효로2가 54-1	원효로2가 57-14	원효로2가 55-1	신계동 25-10	한강로3가 15-6	한강로3가 23-1	한강로3가 3-33	한강로2가 2-16	한강로2가 2-35	이촌2동 206-27	이촌2동 206-11	이촌2동 206-25	이촌2동 203-53	이촌2동 203-34	이촌2동 203-16	이촌2동 203-4	한강로3가 40-113	한강로3가 40-463	한강로3가 40-429	한강로3가 40-153	한강로3가 40-131	135-98
<u>/</u>	한남2동 744-15	한남2동 744-5	한남2동 653-21	한남2동 621-2	한남2동 732-150	한남2동 732-13	청파1동 32-5	청파1동 15-7	청암동 168-22	원효로2가 57-13	원효로2가 57-12	원효로2가 61-9	한강로3동 3-2	한강로3가 16-9	한강로3가 16-9	한강로2가 17-8	한강로2가 316-9	한강로2가 2-37	이촌2동 206-17	이촌2동 206-6	이촌2동 199-41	이촌2동 199-39	이촌2동 203-25	이촌2동 203-10	이촌2동 203-66	한강로3가 40-302	한강로3가 40-227	한강로3가 40-366	한강로3가 40-258	한강로3가 40-43	
지 된	1019	1020	1022	1023	1024	1025	1033	1034	1035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사 명	한남105	한남106	한남107	한남108	한남109	한남110	청파80	청파81	청암50	원효83	원효84	원호82	한 강87	한강88	한강89	한강90	한강91	한 강92	이촌(2	99궂(0	이춛67	89돻[0	이춛()	이촌70	이촌71	한강93	한강94	한강95	화장96	한강97	
冷平	나	구 돈	구 돈	구 돈	그 논	노	그	구		구 돈	그 논	나	노		그		구 돈	구 돈	구 돈	노	그 논	크 논	구 돈	크 논	그	나		구 돈	크 논	구 도	
十	"	, "	, "	신규	*	"	*	"	"	"	, "	*	"	*	"	"	"	"	"	"	신규	, "	"	"	"	*	"	"	, "	, "	
요) 본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제 22	5 1	ػٙ	5					人	.[										보						2	00	Э. З	3. 2	5. (	토)	
중용 구간																															
전용 구간	44	88	28	82	81	98	22	20	66	29	74	84	174	118	132	104	118	531	49	70	94	92	93	29	94	154	104	78	164	133	
주요경과지	44 한강로3가 40-445	89 한강로3가 40-878	58 청과동1가 1-13	82 청파동1가 1-10	81 청과동1가 89-10	98 청과동2가 1-40	57 청과동1가 132-3	50 동자동 30-1	99 갈월동 8-12	67 동자동 35-136	74 성분도병원	84 갈월동 16-12	174 후암동파출소	118 후암천주교회	132 후암동 247-12	104 후암동 335-6	118 청파동3가 132-24	31 남영동 57-5	49 해태빌딩	70 이태원3동 261-74	94 용산제일교회			59 용문동 38-62	94 이광실업고등학교	54 효창동 5-66	104 효창동 5-78	78 효창동 5-98	164 효창동 5-86	133 효창동 5-45	
연장 (m)	7	~		$\sim$			4.7	4.				~	17		T	1(	Τ	531	7			3	0,			T	1(		1(	15	
중 전	한강로3가 40-138	한강로3가 40-880	청파동1가 1-4	청파동1가 1-5	청파동1가 89-11	청파동2가 1-24	청파동1가 138	동자동 38-3	<u> </u>	동자동 35-53	동자동 19-101	후암동 22-3	후암동 244-92	후암동 30-17	후암동 247-5	후암동 336-6	청과동3가 132-28	<u> </u>	후암동 255-9	이태원3동 261-105	조원동 3-6	용문동 38-197	용문동 38-155	용문동 38-64	효상동 5-262	효장동 5-44	효창동 5-508	효창동 5-49	효창동 5-48	효창동 5-46	135 - 99
기 점	한강로3가 40-141	한강로3가 40-875	청과동1가 1-8	청과동1가 1-7	청과동1가 89-15	청과동2가 1-33	청파동1가 135	동자동 41-7		동자동 35-142	동자동 19-45	<u> </u>	후암동 244-75	후암동 30-69	후암동 247-8	추암동 334-2	청과동3가 2-41	남영동 114-9	후암동 254-47	이태원2동 508	도원동 3-1	용문동 38-143	용문동 38-148	9-88 울금융	효창동 5-198	효창동 5-52	효창동 5-97	효창동 5-76	창동	효창동 5-73	
노선 변호	1061	1062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노 선 명	한강98	한강99	청파82	청파83	청파84	<b>岁</b> 平85	考과86			동자52	동자53	<u> </u>	호유20	후암51	후암52	추암53	청 파87	<b>公司</b>	후암54	이 태원86	8 문 20		8문72	8113	효 창59	효장60	효창61	효 창62	₹ <del>9</del> 63	효 창64	
종류	구 돈	그 논	그	그	그	그 논	구 돈	구 王	그 난	그 논		그	노	소	그 논	구 도	구 조	소	그 근	그 논	그 논	크 논		그	노	그	五 논	그 논	五 논	구 돈	
구두		<i>"</i>	"	"	*	"	<i>"</i>	신규	上 "	*	*	*	ナ "	*	*	<i>"</i>	는 "	*	*	*	*	<u>'</u>	十 /	"	신규 구	*	<u>'</u>	<i>"</i>		, "	
연변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2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4	355	326	357	358	359	

제 22	5 1	ই	-					人	.[										보						2	000	э. З	3. 2	5. (	토)	
중용 구간																															
전용 구간	125	181	152	216	83	66	62	87	75	36	81	45	34	116	194	210	22	118	92	53	53	22	84	89	108	177	53	122	111	180	
주요경과지	효창동 5-104	동방약국		원효로 47-19		<u> </u>	서울시청소년사업관	갈월동 103-1 <i>7</i>		용산동2가 5-880	용산동2가 5-670	용산동2가 5-823			한남2동 733-33		효창동 8-79				용문동 25-30		원효로2가 85-1	원효로2가 68-3		한강로1가 47-5	이태원1동 204-15	이 태원1동 155-29	이태원1동 155-2	이태원1동 135-28	
연장 (m)	125	181	152	216	83	66	62	87	75	36	81	45	34	116	194	210	22	118	92	53	53	22	84	89	108	177	53	122	111	180	
장 전	효창동 5-585	원효로2가 5-46	원효로1가 47-32	원호로1가 39-2	청과동2가 120-40	청과동2가 120-57	<u> </u>	갈월동 103-17	문배동 40-1	용산동2가 42-26	용산동2가 39-10	용산동2가 29-3	용산동2가 35-4	이태원2동 247-12	한남2동 733-75	한남2동 733-29	용문동 8-3	용문동 8-106	용문동 28-57	용문동 25-1	용문동 25-13	용문동 22-38	원효로2가 72-2	원효로2가 69-3	신계동 40-6	한강로1가 59-1	이태원1동 203-3	이태원1동 155-14	이태원1동 159-10	이태원1동 135-9	135 - 100
7] 점	효상동 5-577	원효로2가 1-10	원호로1가 50-10	원호로1가 53-11	<u> </u>		<u> </u>	갈월동 98-15	원호로1가 117-6	용산동2가 42-29	용산동2가 39-19	용산동2가 39-4	용산동2가 35-6	이 태원2동 247-15	한남2동 733-69	한남2동 748-19	용문동 8-74	용문동 8-160	용문동 41-11	용문동 22-2	용문동 25-11	용문동 25-17	원효로2가 83-3	원효로2가 67-3	신계동 45	한강로1가 50-1	이 태원1동 200-4	이태원1동 191-10	이 태원1동 190-10	이태원1동 135-39	
노선 변호	1098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4	11115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노선명	호 장65	원효86	원효87	원효88	갈월53	<u> </u>	<u> </u>	5등류	원효89	용산2가61	용산2가62	용산2가63	용산2가64	이 태원87	한남111	한남112	용문74	8문75	92 금융	8문77	82금융	62금융	원효70	원효71	신계51	한강100	이 태원88	이 태원89	이 태원90	이 태원91	
る。	버	구 돈	五 건	<u> </u> 고	버	버	버	버	버	버	거	버			버	과 건	버		버	버	버		과 건	도 건	그 -	버	五 년	그 건	<u> </u>	건	
坤	ナ "	. 구	는 "	는 "	十 "	ナ "	ナ "	는 "	ナ "	ナ "	ナ "		十 "	ナ "	ナ "	는 "	十 "	ナ "	十 /	十 /	ナ "	<u>+</u> "	는 //	上 / "	는 "	十 /	는 "		] 규   노	는 /	
연변	360	361	362	363	364	365	399	367	368	369	370	371 신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2	383	384	385	988	387	388 신	389	

제 22	251	قَ	5					人	.[										보	2000. 3. 25. (토)	
전용 중용 구간 구간	158	53	164	122	145	110	46	51	320	310	148	246	84	45	54	54	112	118	153		
연장 주요경과지 (m)	158 이태원1동 102-11	53 태국대사관저	164 이태원1동 108-1	122 이태원1동 737-42	145 이태원1동 737-59	110 한강로3가 65-164	46 한강로2가 124-3	51 한강로2가 33	320 한강로2가 44-2	310 한강로2가 49-1	148 한강로2가 185-3	246 이태원1동 1-34	84 한강로3가 48-2		54 한강로3가 63-107	54 한강로3가 63-165	112 용산공고교	118 용산세무서	153 청파1가 44-8		
Mo Ka	이태원1동 102-8	이태원1동 101-4	이태원1동 104	이태원1동 737-63	이태원1동 737-20	한강로3가 65-228	한강로2가 123-3	한강로2가 36-1	한강로2가 27-2	한강로2가 217	한강로2가 187-6	이태원1동 1-33	한강로3가 44-7	한강로3가 63-39	한강로3가 63-105	한강로3가 63-101	한강로3가 65-372	한강로3가 65-426	<u> </u>		135-101
不	이태원1동 102-227	이태원1동 133-46	이태원1동 108-5	이태원1동 737-41	이태원1동 737-47	한강로3가 65-228	한강	한강로2가 37-2	한강로2가 77-2	한강로2가 76-2	한강로2가 185	이태원1동 1-37	한강로3가 49-2	한강로3가	한강로3가 63-254		한강로3가 65-399	한강로3가 65-401	청파1가 154-41		
지 전 전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노 선 명	이 태원92	이 태원93	이 태원94	이 태원95	이 태원96	한강101	한강102	한강103	한강104	한강105	한강106	이 태원97	한강107	한강108	한강109	한강110	한강111	한강112	<b>考</b> 平88		
冷	그 논	구 도	그 논	구돈	구	그 논	그	그 논	구 도	구 돈	구 돈		나		나	구 돈	구 돈	구 도	그 논		
다	,	, "	,	,	,	,	, "	· //	, "	,,	,	,	"	"	, "	신규	, "	, "	,		
8년 포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성동구공고제2000-90호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처리 하였음을 동법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2000. 3. 25 성 동 구 청 장

-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업종및등록번호 : 도장공사업 성동00-05-02
- 상호및법인번호 : (주)삼정종합주택110111-1718183
- ㅇ 대표자 : 김혜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2
   동 13-2 광성빌딩5층 (☎ 499-1655)
- 등록일자 : 2000. 3. 17

### ◉성동구공고제2000-93호

성동구 지방계약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성동구에서는 교통분야 지방계약직공무 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2000. 3. 25 성 동 구 청 장

-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분야 : 교통
- ㅇ 등급 : 전임 라급
- ㅇ 채용예정인원: 1명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이상 만 40세이하
- ㅇ 응시자격
- · 석사학위 취득한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당해분야 경 력
- ·국가기술자격 1급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 2급 취득한 후 4년이상 해당 분야 경력자
- ※ 자격 및 경력은 교통관련분야
- 0 기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

- 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4. 응시원서 교부 및 시험일정
- ㅇ 구분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일시 : 2000. 4. 4~4. 7. (09:00~18:00)
- 장소 : 성동구 마장동 527-6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구분: 1차 서류전형

ㅇ 일시 : 2000. 4. 7

ㅇ 장소 : 성동구청

ㅇ 구분 : 2차 서류전형

○ 일시 : 2000. 4. 18(금) 10:00

○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시 안내

- ㅇ 합격자 발표 :
- ・1차 합격자 발표

-기간: 4. 14~4. 16

-방법: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 4. 20

-방법: 성동구청게시판공고 및 개별통지

- 5. 제출서류(원서접수시 지참)
  - 가. 응시원서 1통(당 구청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나. 자필이력서 1통(연락처 명기)
  - 다.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 사항 기재분) 1통
  - 라. 최종학교 졸업·성적(대학교 및 대학 원 학위논문 기재)·경력증명서 각1통
  - 마.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1통
  - 바. 사진(반면함판 3.5cm×4.5cm)3매(응시 원서 부착용)

- 사.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성동구 수입증지)
- ※ 성동구 홈페이지(www.songdong.seoul. kr) 에서 응시원서 출력가능.
-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 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 니다.
  - ※ 기타사항은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2290-7480~3)로 문의 바랍니다.

### ●강북구공고제2000-66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 공람

- 1. 강북구 고시 제2000-13(2000. 3. 10)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적 승인한 아래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서류의공람)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 합니다.
- 2. 관련조서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에 비 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 의 견서를 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 2000. 3. 25 강 북 구 청 장

- 가. 사업개요
- 소재지 : 강북구 미아4동 48번지 일대
-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주차장)미아4동4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 o 규모: 1.315m²
- 도시계획 결정사항 : 강북구고시 제 2000-13(2000. 3. 10)호
-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장
- 다. 사업기간 : 2000. 3~2000. 12. 31
-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 : 별 청조서 참조
- 마. 위치도 및 지적도 : 별첨(생략)
-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사. 공람장소 :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교통행 정과(☎901-6481~3)로 문의 바랍니다.

따로붙임: 1. 토지조서 1부 2. 물건조서 1부

#### □ 토지조서

순 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편입 면적	실제 이용	소	유자		이해관계인		비
번	12/11/1C	(m²)		(m²)	상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유	고
계		1,315		1,315							
1	미아동48-1	40	대	40	주거	전형기					
								박래진	미아동79-17	가압류	
								강북구	(세무과)	압류	
								강북구	(하수과)	압류	
2	미아동48-2	308	대	308	주거	강북구	수유동192-59	(주)제일 은행	종로구공평동 100 남산지점	가압류	
								(주)국민 은행	중구남대문로2가 9-1 안양지점	가압류	
3	미아동48-14	102	대	102	주거	채춘자	성북구장위동 240-22				
4	미아동48-30	116	대	116	주거	이홍	미아동48-30				

순 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편입 면적	실제 이용	소	유자	이해관계인			
빈		(m²)		(m²)	상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유	고
								박래진	미아동79-17	가압류	
	미아동48-18		대	119	공가	강북구	수유동192-59	강북구	(세무과)	압류	
								강북구	(하수과)	압류	
5		119						(주)제일	종로구공평동100	가압류	
								은행	남산지점		
								(주)국민	중구남대문로2가	가압류	
								은행	9-1 안양지점		
6	미아동48-31	93	대	93	주거	김양임	미아동48-31				
7	미아동49-57	76	대	76	주거	송영종	미아동49-57				
8	미아동49-61	66	대	66	주거	사성구	미아동49-61	(주)국민	중구남대문로2가	근저당설정	
								은행	9-1 개포동지점	'98.12.10	
	미아동856-32		대	96	주거	강북구	수유동159-59	박래진	미아동79-17	가압류	
								강북구	(세무과)	압류	
								강북구	(하수과)	압류	
9								(주)제일	종로구공평동100	가압류 기압류	
								은행	남산지점	/   日	
								(주)국민	중구남대문로2가	가압류 -	
								은행	9-1 안양지점	/ I H II	
10	미아동856-33		대	2	공지	(국)재무부					
11	미아동856-2	297	구거	297	도로	국(건설부)					Щ

### □ 물건조서

순	소재	므고		수량	실제	소유자		이해관계인		
T 번	고색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m²)	이용 상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내용
1	미아동 48-1	건물 화장실 대문	기와지붕 시멘트 블록조	26 1 1식	주택	전형기	미아동 48-1			
2	미아동 48-2	건물 건물 계단 대문	벽돌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	69 18 1식 1식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강북구	수유동 192-59	박래진 (주)제일 은행 (주)국민 은행	미아동 79-17 종로구 공평동100 남산지점 중구남대문 로2가9-1 안양지점	원인 '96.5.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가압류결정 원인 '99.2.26 서울지방법원 가압류결정 원인 '99.5.20 수원지방법원 가압류결정
3	미아동 48-14	건물 화장실 건물 대문	시멘블럭조 기와	45 1 9 1식	주택	채춘자	성북구 장위동 240-22			

세	2251오		,	^		<u></u>			2000. 3. 25. (도)	
순	소재	물건의		실제	소유자		이해관계인		인	
번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m²)	이용 상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내용
4	미아동 48-18	건물(1층) 건물(지층) 화장실 장독대 대문	슬라브, 적벽돌	70 13.85 2 4 1식	주택	강북구	수유동 192-59			
5	미아동 48-30	건물(지층) 건물(1층) 건물(2층)	벽돌조,슬래브 지붕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5가구)	57.93 64 64	주택	이홍	미아동 48-30			
6	미아동 48-31	화장실 장독대 화장실 건물 대문 단풍나무 대추나무 사철나무	기와,적벽돌	1 5 3 62 1식 1주 2주 1주	주택	김양임	미아동 48-31			
7	미아동 49-57	건물 화장실 화장실 대문	기와,적벽돌	45 3 1 1식	주택	송영종	미아동 49-57			
8	미아동 49-61	건물 화장실 대문	기와,적벽돌	52 1 1식	주택	사성구	미아동 49-61	(주)국민 은행	중구남대문 로2가9-1 개포동지점	근저당설정 원인'98.12.10 설정계약
9	미아동 856-32	건물	스레트, 시멘블럭	79	근생	강북구	수유동 192-59			

# ◉노원구공고제2000-102호

856-32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

시멘블럭

- 1. 아래와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 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제25조의2, 서 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제3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14일간 공람합니다.
- 2. 본 사업에 대한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하수과(950-3415~8) 및 건설 관리과(950-3400~2)에 의견제출 및 문 의 바랍니다.

2000. 3. 25 노워구청장

- 가. 공람장소 : 노원구청 하수과 및 건설 관리과
- 나. 공람기간 : 2000. 3. 25.~2000. 4. 7.
- 다.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내용
- 사업위치 : 상계동 산164-19
- ㅇ 사업내용 도로종류 및 명칭 : 도시계 획시설(도로) 일반도로 상계동 덕릉초 등학교주변 개수로 정비공사
- 규모 : B=4m, L=66m

192-59

○ 사업기간 : 2000. 3. ~ 2000. 12.

○ 결정고시일자 : 노고제2000-6호(2000. 1. 20)

시

지적고시일자: 노고제2000-6호(2000.1. 20)

○ 시행자 : 노원구청장

라. 사업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생략

□ 토지조서

공사명: 상계동 덕릉초등학교 주변 개 수로 정비공사

○ 사업시행자명 : 노원구청장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ㅇ 연번 : 1

○ 소재지지번 : 상계동 산164-19

지목 : 임야지적(m²) : 268

○ 편입면적(m²): 268

ㅇ 실제이용상황 : 임야

ㅇ 소유자

-성명: 김옥남

-주소 : 서울 종로구 혜화동 10-21

□ 물건조서

공사명: 상계동 덕릉초등학교 주변 개 수로 정비공사

○ 사업시행자명 : 노원구청장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ㅇ 연번 : 1

○ 소재지지번 : 상계동 산164-19

ㅇ 물건의 종류 : 수목

○ 구조 : 정원수 ○ 수량(m²) : 51주

ㅇ 소유자

-성명: 이기영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107-970

# ◉서대문구공고제2000-73호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

서 대 문 구 청 장

○ 등록업소명

ㅇ 업종 : 난방시공업2종

○ 등록번호 : 서대문00-28-2-6

○ 상호명: 성진종합설비

ㅇ 대표자 : 이천일

○ 주민등록번호 : 700730-1\*\*\*\*\*

○ 영업소재지 : 홍제동321-10

○ 등록일자 : 2000. 3. 21

### ◉양천구공고제2000-50호

신정제5구역주택재개발사업공사완료

- 건설부고시 제470('73. 12. 1)호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50('92. 2. 28)호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양천구 고시 제1993-19('93. 5. 15)호로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서울특별 시양천구고시 제1995-30('95. 6. 19)호로 관리처분인가 되었으며, '98. 2. 7 임시사 용 승인되었고.
-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206('99. 7. 10)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30('99. 10. 19)호로 사업구역변경지정 및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1999-65 ('99. 12. 22)호로 사업시행변경 인가된 신정제5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 개발법 제38조(준공검사 및 분양처분등)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00. 3. 25

양천구청장

가. 사업명칭 : 신정제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나. 위치 : 양천구 신정동 78-1번지 일대

시

다. 시행면적 : 83.199.7m²

라. 시행자 : 신정제5구역 주택재개발조 합(구로구 고척2동 172-13)

마. 시행기간: '93. 5. 15~2000. 3. 21 바. 건축시설

-규모 : 아파트15개동 2.280가구 및 상 가등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14.961.81 m²(건폐율: 23.92%) -연면적: 229.716.18m²(용적율: 289.02%)

사. 토 지

-사업면적: 83,199.7m² -대지면적 : 62,557.4m²

-공공시설·도로: 8,466.7m²

· 공원 : 10.213m²

· 공용의 청사 : 919m²

·종교부지: 489.6m²

· 단독택지 : 554m²

아. 사업비 재원별 내역 : 생략

# ● 강서구공고제2000-77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 하였기 같은법시행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2000. 3. 25 강서구청장

-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내역
- 업종 및 등록번호 : 실내건축공사업 강 서-00-01-03
- 상호 및 대표자 : (주)청목애드 김승태
- 소재지 : 강서구 염창동 283-11
- 법인 등록번호: 110111-1468043
- 등록일 : 2000. 3. 18
- 자본금(단위:천원): 100,000
- o 업종 및 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공 사업 강서-00-10-02

- 상호 및 대표자 : (주)도형건설 구갑회
- 소재지 : 강서구 화곡본동 24-145 동형 빌딩3층

법인 등록번호: 110111-1879399

○ 등록일: 2000. 3. 18

○ 자본금(단위:천원): 130,000

# ◉강서구공고제2000-80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 하였기 같은법시행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0. 3. 25

강서구청장

-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내역
- ㅇ 업종 및 등록번호 :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 강서-00-10-03
- 상호 및 대표자 : (주)정산토건 김대현
- o 소재지 : 강서구 화곡1동 918-15신진 오피스텔901호

○ 법인등록번호: 110111-1501067

○ 등록일: 2000. 3. 21

○ 자본금(단위:천원) : 800.000

# ◉강서구공고제2000-81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 하였기 같은법 시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0. 3. 25

강서구청장

-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내역
- 업종 및 등록번호 : 토공사업 강서-00-02 - 02
- ㅇ 상호 및 대표자 : (주) 무한건설 최인영
- 소재지 : 강서구 등촌3동 697-1 그랜드 빌딩 402호
- 법인 등록번호 : 110111-1708746

○ 등록일: 2000. 3. 22

○ 자본금(단위:천원): 300.000

ㅇ 업종 및 등록번호

·조경식재공사업 강서-00-18-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서-00-19-01

시

○ 상호 및 대표자 : 라이프실업(주) 서권수

○ 소재지 : 강서구 화곡6동 1115-15

○ 법인 등록번호: 110111-1611163

○ 등록일: 2000. 3. 22

○ 자본금(단위:천원): 300,000

ㅇ 업종 및 등록번호 : 시설물 유지관리업 강서-00-29-01

○ 상호 및 대표자 : 시도종합건설(주) 장기수

○ 소재지 : 강서구 등촌1동 649-2 동명빌 딩1층

○ 법인 등록번호: 110111-1729544

ㅇ 등록일 : 2000. 3. 22

○ 자본금(단위:천원) : 300.000

# ●구로구공고제2000-106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령 제11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2000. 3. 25 구로구청장

#### □ 전문건설업등록내역

ㅇ 업종 : 난방시공업(제1종) ○ 등록번호 : 구로-00-28-1-3

ㅇ 상호명: 세린설비기업사

ㅇ 대표자 : 김영

○ 소재지 : 구로구 구로3동 782-45

○ 등록일자 : 2000. 3. 20

# ●금천구공고제2000-68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하 였기에 같은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

금 천 구 청 장

ㅇ 업종 : 난방시공업(제2종)

○ 등록번호: 2000-28-2-5

ㅇ 상호명 : 보령종합설비

○ 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 : 조영구 (650515-1\*\*\*\*\*)

○ 영업소재지(전화번호) : 독산4동 194-10 **(25** 862-1349)

○ 등록일자 : 2000. 3. 16

○ 업종: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등록번호: 2000-27-3-2

ㅇ 상호명 : 보령종합설비

○ 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 : 조영구 (650515-1\*\*\*\*\*)

○ 영업소재지(전화번호) : 독산4동 194-10

**(25** 862-1349)

○ 등록일자 : 2000. 3. 16

# ● 금천구공고제2000-73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하 였기에 같은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

금천구청장

업종: 난방시공업(제1종)

○ 등록번호: 2000-28-1-4

○ 상호명: 남경설비공사

○ 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 : 남궁수철

(621225-1\*\*\*\*\*)

ㅇ 영업소재지(전화번호) : 독산본동 959-

#### 35 (28 830-3064)

○ 등록일자 : 2000. 3. 18

ㅇ 업종 : 난방시공업(제1종)

○ 등록번호: 2000-28-1-5

ㅇ 상호명 : 미래건설공사

○ 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 : 이장율 (560112-1\*\*\*\*\*)

시

○ 영업소재지(전화번호) : 시흥4동 819-2 **(28** 892-7860)

○ 등록일자 : 2000. 3. 18

○ 업종: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등록번호: 2000-27-3-3 ㅇ 상호명 : 미래건설공사

○ 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 이장율 (560112-1\*\*\*\*\*)

o 영업소재지(전화번호) : 시흥4동 819-2

**(28** 892-7860)

o 등록일자 : 2000. 3. 18

# ● 금천구공고제2000-78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제11조 및 시행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 다.

2000. 3. 25

금 천 구 청 장

ㅇ 업종 등록번호 : 상하수도설비업 금천 -2000-13-1

○ 업체명 법인(주민)번호 : 탐라기공(주) 110111-1644726

이 대표자 : 양근호, 이재헌

○ 소재지 : 서울.금천구 시흥동984 시흥유 통에이지원상가302

○ 자본금(단위:천원): 200,000

○ 등록일자 : 2000. 3. 22

# ◉영등포구공고제2000-104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00. 3. 25

영등포구청장

□ 전문건설업등록내역

ㅇ 등록업종 : 난방시공업제2종 ○ 등록번호 : 영등포-00-28-2-06

ㅇ 업체명: 신흥종합설비

이 대표자 : 이우돈

ㅇ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 립1동 906-60

○ 등록일자 : 2000. 3. 17

# ◉영등포구공고제2000-106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기 동법시행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 2000. 3. 25 영등포구청장

□ 전문건설업등록내역

ㅇ 업종: 미장방수공사업

○ 등록번호 : 영등포-00-03-01

○ 업체명: (주)동방캠

ㅇ 대표자 : 신동석

소재지: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0

○ 시공능력평가액(천원): 244,090

○ 등록일자 : 2000. 3

# ◉영등포구공고제2000-110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기 동법시행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 2000. 3. 25 영등포구청장

시

- □ 전문건설업등록내역
- ㅇ 업종 및 등록번호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등포-00-13-4
- -철물공사업 영등포-00-11-2
- 업체명(법인번호) : 근일토건(주) (110111-1293797)
- ㅇ 대표자 : 조성근
- 소재지 :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 당415
- 시공능력평가액(천원) : 1,473,623
- ㅇ 등록일자 : 2000. 3

# ◉영등포구공고제2000-114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기 동법시행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 2000. 3. 25 영등포구청장

- □ 전문건설산업등록내역
- ㅇ 업종: 건축물조립공사업
- 등록번호 : 영등포-00-20-2
- 업체명(법인번호): (주)우촌엔지니어링 (110111 - 1078313)
- ㅇ 대표자 : 이승수
- ㅇ 소재지 : 여의도동 14-2
- 시공능력평가액(천원) : 486.342
- 등록일자 : 2000. 3. 21

# ◉동작구공고제2000-73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등록증(등록수첩) 자진반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하 였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 2000. 3. 25 동작구청장

- 가.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리내역
- ㅇ 업종 및 등록번호 : 난방시공업 제2종 (구:온돌시공업 동작-97-29-1)
- ㅇ 상호 : 중앙종합설비
- ㅇ 대표자 : 윤옥준
- 주민(법인)번호: 540211-1\*\*\*\*\*
- 소재지 : 동작구 흑석동 180-4
- 등록말소일자 : 2000. 3. 21
- ㅇ 등록말소 : 자진반납
- ㅇ 업종 및 등록번호 : 난방시공업 제2종 (구:온돌시공업 동작-97-29-3)
- ㅇ 상호 : 광동설비
- 이 대표자 : 장광숙
- 주민(법인)번호 : 540210-1\*\*\*\*\*
- 소재지 : 동작구 사당동 1022-44
- 등록말소 일자 : 2000. 3. 21
- ㅇ 등록말소 : 자진반납
- ㅇ 업종 및 등록번호 : 난방시공업 제2종 (구:온돌시공업 동작-97-29-4)
- ㅇ 상호 : 재일종합설비
- 대표자 : 윤재식
- 주민(법인)번호: 421109-1\*\*\*\*\*\*
- o 소재지 : 동작구 흑석동 228-2
- 등록말소 일자 : 2000. 3. 21
- ㅇ 등록말소 : 자진반납
- ㅇ 업종 및 등록번호 : 난방시공업 제2종 (구:온돌시공업 동작-97-29-8)
- ㅇ 상호 : 대련설비
- ㅇ 대표자 : 경원성

제 2251호

○ 주민(법인)번호: 440825-1\*\*\*\*\*

o 소재지 : 동작구 대방동 393-60

○ 등록말소 일자 : 2000. 3. 21

ㅇ 등록말소 : 자진반납

ㅇ 업종 및 등록번호 : 난방시공업 제2종 (구:온돌시공업 동작-97-29-9)

ㅇ 상호 : 성민설비 ㅇ 대표자 : 민석규

○ 주민(법인)번호: 470305-1\*\*\*\*\*

○ 소재지 : 동작구 상도동 262-2

○ 등록말소 일자 : 2000. 3. 21

ㅇ 등록말소 : 자진반납

○ 업종 및 등록번호 : 난방시공업 제2종 (구:온돌시공업 동작-97-29-14)

ㅇ 상호 : 영남설비 ㅇ 대표자 : 조미상

○ 주민(법인)번호 : 471205-1\*\*\*\*\*

소재지 : 동작구 노량진동 267-49

○ 등록말소 일자 : 2000. 3. 21

ㅇ 등록말소 : 자진반납

#### ●서초구공고제2000-102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 등록 기준에 적합하여 아래 와 같이 동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등록 처리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2000. 3. 25 서초구청장

ㅇ 업종 및 등록번호

-철물공사업 서초-00-11-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초-00-10-10

-조적공사업 서초-00-06-03

ㅇ 상호 : 포석건설(주)

ㅇ 대표자 : 이정봉

○ 소재지 : 양재동 262-5

○ 법인등록번호: 110111-1565823

○ 등록일자 : 2000. 3. 17

ㅇ 업종 및 등록번호 : 실내건축공사업 서 초-00-01-13

○ 상호: (주)사운드스피어코리아

ㅇ 대표자 : 정완진

○ 소재지 : 방배동 1022-5 한국감정업협 회빌딩2층

○ 법인등록번호: 110111-1274359

○ 등록일자 : 2000. 3. 17

#### ◉서초구공고제2000-104호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위 반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동법 시행 령 제10조의3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3. 25

2000. 3. 25. (토)

서초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처분내역

0 연번:1

○ 등록번호 : 서초구-주택건설사업자-84

ㅇ 상호 : 여지종합건설(주)

ㅇ 대표자 : 조해식

ㅇ 영업소재지 : 서초동 1626-5 서일빌딩 201호

○ 위반사항: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

○ 영업정지기간 : 2000. 3. 27~5. 26(2월)

ㅇ 연번 : 2

ㅇ 등록번호 : 서초구-주택건설사업자-33

○ 상호 : 풍산종합건설(주)

ㅇ 대표자 : 유여진

ㅇ 영업소재지 : 방배동 475-22 청진빌딩7

층

○ 위반사항 :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

○ 영업정지기간 : 2000. 3. 27~5. 26(2월)

# ●강남구공고제2000-143호

#### 전문건설업등록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 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0. 3. 25

강남구청장

시

- 가. 건설업 등록업체 내역
- o 업종및등록번호
  - -창호공사업 강남00-08-05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00-01-22
  - -상하수도공사업 강남00-13-11
  - -토공공사업 강남00-02-21
- ㅇ 상호
  - -(주)신명테크
  - -(주)예닮건축
  - -동서터널(주)
- 대표자 : 박병헌 / 방희석 / 박창진
- ㅇ 소재지
  - -강남구 신사동 515-9
  - -강남구 대치동 990-2
  - -강남구 압구정동 450
- 발급일자 : 2000. 3. 18

#### ●강남구공고제2000-144호

#### 전문건설업등록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고수리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

강남구청장

○ 업종및등록번호 : 토공사업 강남00-02-19

○ 상호 : (주)유이온엔지니어링

110111-1839806

○ 대표자 : 홍재경

○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 │ 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이츠Ⅲ 1314호

- ㅇ 업종및등록번호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00-01-23
- -토공사업 강남00-02-18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남00-10-21
- 상호 : (주)새천년건설 110111-1877400
- ㅇ 대표자 : 박한희 / 김봉안
-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789-4 영B/D603호

#### ◉강남구공고제2000-153호

####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0. 3. 25

강남구청장

가. 건설업 등록 업체 내역

ㅇ 업종 : 조경식재

○ 등록번호 : 강남-00-18-05

○ 상호: (주)워지조경

이 대표자 : 마상현

○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115-1호

○ 발급일자 : 2000. 3. 20

o 업종 : 조경시설물설치

○ 등록번호 : 강남-00-19-05

○ 상호 : (주)원지조경

ㅇ 대표자 : 마상현

o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115-1호

o 발급일자 : 2000. 3. 20

# ◉강남구공고제2000-154호

####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 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0. 3. 25 강 남 구 청 장

가. 건설업 등록 업체 내역

ㅇ 업종 : 조경식재

○ 등록번호 : 강남-00-18-04

상호: 안평조경대표자: 안성조

○ 소재지 : 강남구 삼성동 159-1호

○ 발급일자 : 2000. 3. 20

# ●강남구공고제2000-156호

전문건설업자자진반납수리

전문건설업등록에 대한 자진 반납을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

강남구청장

○ 상호 : (주)사운드메카엔지니어링

○ 대표자(법인등록번호) : 이계혁 (110111-0512487)

○ 업종 및 등록번호 : 철물 강남-99-11-25

○ 소재지 : 강남구 대치동 949-4호

수리사유 및 수리일 : 자진반납 (2000.3. 21)

# ●송파구공고제2000-118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발급하 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0. 3. 25 송 파 구 청 장

가. 등록일자 : 2000. 3. 10

나. 전문건설업 등록발급내역

ㅇ 업종 및 등록번호

-비계구조물해체 송파-00-07-04

-철근콘크리트 송파-00-10-34

○ 업체명 : (주)대증건설

ㅇ 대표자 : 김신동

○ 소재지 : 송파구 잠실동 196-1

○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1889629

# ●송파구공고제2000-132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발급하 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3. 25 송 파 구 청 장

가. 등록일자 : 2000. 3. 17 나. 전문건설업 등록발급내역

○ 업종 및 등록번호 : 기계설비 송파-00-12-03

○ 업체명: (주)확일이엔지

ㅇ 대표자 : 권혁일

소재지 : 송파구 문정동 139-4 수파빌당 201

○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1878929

업종 및 등록번호 : 미장방수 송파-00-03-08

○ 업체명 : 우량건설(주)

○ 대표자 : 허재룡

ㅇ 소재지 : 송파구 오금동 1 홍일빌딩 703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1869382

업종 및 등록번호 : 시설물유지관리 송 파-00-29-03

○ 업체명 : 하은건설(주)

ㅇ 대표자 : 이경주

○ 소재지 : 송파구 가락동 7-10

○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1366148

# ●송파구공고제2000-139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발급하 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0. 3. 25 송 파 구 청 장

시

가. 등록일자 : 2000. 3. 20 나. 전문건설업 등록발급내역

ㅇ 업종 및 등록번호

-토공 송파-00-02-31

-철근콘크리트 송파-00-10-35

ㅇ 업체명 : 충심건설(주)

○ 대표자 : 기야서

○ 소재지 : 송파구 잠실동 196-1

○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1701766

# ●송파구공고제2000-142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발급하 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0. 3. 25 송 파 구 청 장

가. 등록일자 : 2000. 3. 21 나. 전문건설업 등록발급내역

o 업종 및 등록번호 : 토공 송파-00-02-32

○ 업체명: 우립건설(주)

ㅇ 대표자 : 김수만

○ 소재지 : 송파구 오금동 77-2

○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1815567

업종 및 등록번호 : 비계구조물해체 송 파-00-07-05

○ 업체명 : 우립건설(주)

ㅇ 대표자 : 김수만

○ 소재지 : 송파구 오금동 77-2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1815567

○ 업종 및 등록번호 : 상하수도설비 송파 -00-13-10

○ 업체명 : 우립건설(주)

ㅇ 대표자 : 김수만

소재지: 송파구 오금동 77-2

○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1815567

업종 및 등록번호 : 시설물유지관리 송 파-00-29-04

○ 업체명:(주)덕양가

ㅇ 대표자 : 김형각

소재지: 송파구 가락동 50-2 두현빌딩 302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1302225

# ●송파구공고제2000-140호 전문건설업 양도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양도신고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3. 25 송 파 구 청 장

◎ 양도신고 년월일 : 2000년 3월 20일

◎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등록번호 : 상하수도설비공사업(95-서울-13-41)

◎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ㅇ 양도자

· 상호 : 천호건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13-2

·대표자 : 표익한

ㅇ 양수자

· 상호 : 강부건설(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2동 764-1 · 대표자 : 장석정

# 사업소고시

#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2000-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 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000. 3. 25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

시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성명: 마리나문화회관 최정득

3. 점용자의 주소 : 목포시 복만동 1-24

4. 점용위치 : 광진구 자양동427-7(한강)

5. 점용면적 : 총 929m²

6. 점용목적 : 유선장

7. 점용기간 : 2000. 3. 21~2000. 13. 31

#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2000-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0. 3. 25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

ㅇ 허가받은자

-성명: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

ㅇ 허가점용(행위)개요

-하천법 : 한강 (잠실대교 북단~남단)

-점용(행위)면적: 선박 3척

-점용목적 : 잠실대교 성능 개선 공사용

선박운항

-점용기간: 2000. 4. 1~2000. 12. 31

ㅇ 허가 연월일 : 2000. 3. 22

# 사업소공고

#### ●중부소방서공고제2000-1호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

중부소방서장

#### 소방시설공사업등록

○ 등록번호 : 서울중부 제2000-1호

○ 업종(상호): 전문공사업(주)삼연건업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조정연

(550302-1\*\*\*\*)

○ 영업소재지 : 종로구 숭인동 234-86

○ 자본금: 133,401,000

○ 도급한도액 : 133,401,000

○ 등록일자 : 2000. 3. 17

#### ◉동대문소방서공고제2000-6호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0. 3. 25

동 대 문 소 방 서 장

####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ㅇ 등록번호 : 제서울동대문 2000-2호

ㅇ 업종 (등급 및 분야) : 소방시설설계업

(2급:전기)

○ 상호 : 동양전기설계 주식회사

ㅇ 대표자

-오승렬 (671003-1\*\*\*\*\*)

-오성수 (380131-1\*\*\*\*\*)

○ 소재지 : 동대문구 장안동 433-19

○ 등록일자 : 2000. 3. 18

# ●성동소방서공고제2000-6호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소방법 제52조·제53조 규정에 의한 소 방시설공사업을 등록 하였기, 같은법시행 규칙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 고합니다.

> 2000. 3. 25 성 동 구 청 장

○ 등록번호 : 제서울성동2000-5호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상호 : 서울소방안전시스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이기철(610728-1\*\*\*\*\*\*)

○ 영업소재지 : 광진구 자양동 695-1

○ 등록일자 : 2000. 3. 20

# ●마포소방서공고제2000-4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

소방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 리유지업을 등록하였기,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0. 3. 25

마포소방서장

○ 등록번호 : 서울마포 제2000-1호

ㅇ 업종 : 소방시설 관리유지업

○ 상호 : (주)새서울이엔지산업

이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김진국

(660929-1\*\*\*\*\*)

○ 영업소재지 : 마포구 연남동 225-14 수 영빌딩

○ 등록일자 : 2000. 3. 16

#### ●구로소방서공고제2000-5호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 사업의 등록 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1 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 2000. 3. 25 구로소방서장

#### 소방시설공사업등록

등록번호: 서울구로 제2000-4호

ㅇ 업종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ㅇ 상호 : FIRETEC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임인택 (581025-1\*\*\*\*\*\*)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954-32

○ 등록일자 : 2000. 3. 20

# ●서초소방서공고제2000-7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 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 같은 법시행규칙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2000. 3. 25 서 초 소 방 서 장

(법인번호: 110111-0877485)

등록번호: 서울서초제2000-5호

ㅇ 업종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ㅇ 상호: 경문설비(주)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박노준 (491202-1\*\*\*\*\*\*)

○ 영업소재지 : 서초구 서초동 1451-20

○ 등록일자 : 2000. 3. 20

# ●서초소방서공고제2000-8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소방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방 시설의 설계업의 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 칙 제69조의4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3. 25

서초소방서장

시

- 등록번호: 서울서초제2000-1호
- ㅇ 업종(등급 및 분야) : 소방시설 설계업 2급(기계)
- ㅇ 상호 : 세영 엔지니어링
- 대표자 : 김흥중 (651106-1\*\*\*\*\*\*)
- 소재지 : 서초구 방배동 1038 가동 403호
- 등록일자 : 2000. 3. 20

#### ●강남소방서제2000-19호

소방시설공사업체등록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의견수렴계획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계획을 공고합니다.

- 1. 소방법위반 의견수렴 대상업체
  - 가. 상호: 태양전설
  - 나. 대표자 : 한성재
  - 다. 영업소재지 : 강남구 개포동 158-4
- 2. 의견수렴
  - 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99년도 소 방공사실적 미신고
  -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3월
  - 다. 법적근거 : 소방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ㆍ제97[별표16]제2호 마목(6)(타)
  - 라. 의견수렴 기한 : 2000. 4. 24. (월)까지
  - 마. 장소 : 강남소방서 예방과 예방계(☎ 566-5663, FAX 556-2119)
- 3. 의견수렴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서면·컴퓨터통신(wjvkfro @shinbiro.webmail.com)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 제출한 후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 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소방서공고제2000-20호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소방시설설계업·공사감리업을 등 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2000. 3. 25 강 남 소 방 서 장

소방시설설계업 • 공사감리업 등록

- 등록번호 : 서울강남 제2000-6호
- 업종(등급및분야) : 소방시설설계·공사 감리업 2급(기계·전기)
- ㅇ 상호 : (주)백림종합건축사사무소
- ㅇ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이승택(500514-1\*\*\*\*\*)
  - -정동근(620911-1\*\*\*\*\*\*)
  - -이명진(550716-1\*\*\*\*\*)
- ㅇ 영업소재지 : 강남구 삼성동 41-18번지
- 등록일자 : 2000. 3. 17

#### ◉강남소방서공고제2000-21호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3. 25

강 남 소 방 서 장

####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 ㅇ 등록번호 : 서울강남 제2000-10호
- ㅇ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ㅇ 상호 : (주)유일이엔지

ㅇ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박남신

(540908-1\*\*\*\*\*)

ㅇ 영업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790-15번지

시

○ 등록일자 : 2000. 3. 17

# 공문시행

####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치수43500-554 시행일자 2000. 3. 25 (1년)

공개여부 공개

제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 1. 우리시(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서 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관 리전환소요여부를 조회하오니, 희망기관 (부서)에서는 시보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전환 요청하시기 바라며,
- 2. 위 기간내 요청이 없을 때에는 해당없 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내역>

ㅇ 연번 : 1

○ 컴퓨터, 개인용(P.C)

○ 정부물품분류번호: 7021-300

○ 규격(모델명) : 펜티엄 P54C/EP

0 단위 : 대

○ 수량:4

○ 제작업체 : 삼보컴퓨터

ㅇ 구입년월일: '95. 8. 31

○ 구입가액(대당) : 1.199.000

ㅇ 물품의 상태 : 요정비품

ㅇ 불용사유 : 노후

ㅇ 연번 : 2

○ 컴퓨터, 개인용(P.C)

○ 정부물품분류번호 : 7021-300

○ 규격(모델명) : 펜티엄 SPC8200PG

0 단위 : 대 ○ 수량:8

○ 제작업체 : 삼성전자

o 구입년월일 : '96. 6. 20

○ 구입가액(대당): 989.200

○ 물품의 상태 : 중고품

○ 불용사유: 노후

서울특별시장

# 인사발령

#### 4급에의 승진임용

발령 제117호(2000, 3, 20,자)

건설국건설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尹相秀 지방서기관에 임함

행정관리국 지방행정사무관 韓國暎 지방 서기관에 임함

행정관리국 지방행정사무관 金榮翰 지방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장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및 파견(해제)

○ 발령 제148호(2000. 3. 15.자)

국제협력담당관 지방행정주사 남기덕 행 정1부시장실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 김태도 비상기획관

시의회사무처 지방행정주사 김종식 산업 경제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탁기주 문화월드컵 기획담당관

전산정보관리소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건 설안전관리본부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송명호 시의회사무처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지방행정주사

박종천 시의회사무처

행정관리국(인력POOL) 지방행정주사 김영철 행정관리국

시

행정관리국 지방행정주사 강금수 환경관 리실

도봉구 지방행정주사 이광수 서울특별시 전입 산업경제국

중소기업과 지방행정주사 정희천 도봉구 전출

기획관리실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윤 건설국 시의회사무처 지방행정주사보 박용파 행 정관리국

난지도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김현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파견(2000. 3.  $15 \sim 2001$ , 3, 14)

폐기물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진규 수 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파견 해제

중랑구 지방행정주사보 이규호 서울특별 시 전입 여성정책관

북부여성발전센터 지방행정주사보 신인숙 중랑구 전출

남부여성발전센터 지방행정주사보 이춘식 시의회사무처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서기 이순자 정무부 시장실

> 서 울 특 별 시 장 별정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149호(2000, 3, 16,자)

여성정책관 지방별정7급상당(가정상담 원) 성희석(450228-2\*\*\*\*\*)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여성정책관 지방별정7급상당(여성복지상 담원) 이순덕(590110-2\*\*\*\*\*) 원에 의하 여 그 직을 면함

체육청소년과 지방별정7급상당(청소년지 도교사) 유은숙(540408-2\*\*\*\*\*) 원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체육청소년과 지방별정7급상당(청소년지

도교사) 정현미(651001-2\*\*\*\*\*) 원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주택재개발과 지방별정7급상당(판독사) 이광수(530228-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동부병원 지방별정7급상당(방사선관리) 이상빈(620210-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여성정책관 지방별정8급상당(가정상담 원) 권헌욱(681208-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여성정책관 지방별정8급상당(유아교사) 문미경(660627-2\*\*\*\*\*)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여성정책관 지방별정8급상당(유아교사) 이기복(591125-2\*\*\*\*\*)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여성정책관 지방별정8급상당(여성복지상 담원) 김형진(710313-2\*\*\*\*\*) 원에 의하 여 그 직을 면함

한강관리사업소 지방별정8급상당(영양 사) 이인순(600124-2\*\*\*\*\*)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8급상당(고압가 스관리) 김유선(590228-1\*\*\*\*\*) 원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8급상당(고압가 스관리) 박태희(660608-2\*\*\*\*\*) 원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은평병원 지방별정8급상당(고압가스관 리) 박범진(710521-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총무과 지방별정8급상당(마이크로필름촬 영) 김병희(670508-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시의회사무처 지방별정8급상당(편집원) 김수희(671210-2\*\*\*\*\*)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8급상당(수질환 경) 김상수(610623-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시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8급상당(수질환 경) 권오정(600621-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8급상당(수질환 경) 김세정(650313-2\*\*\*\*\*)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별정8급상당 (영사조정) 이용문(470922- 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9급상당(고압가 스관리) 이천호(621210-1\*\*\*\*\*) 원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9급상당(고압가 스관리) 정원걸(630318-1\*\*\*\*\*) 원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9급상당(고압가 스관리) 하태영(560615-1\*\*\*\*\*) 원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9급상당(고압가 스관리) 경택중(590130-1\*\*\*\*\*) 원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9급상당(고압가 스관리) 박용하(590802-1\*\*\*\*\*) 원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9급상당(고압가 스관리) 문범식(601223-1\*\*\*\*\*) 원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9급상당(공과금 요원) 박은주(611005-2\*\*\*\*\*) 원에 의하 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9급상당(공과금 요원) 이태복(640204-1\*\*\*\*\*) 원에 의하 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9급상당(공과금 요원) 임상택(640216-1\*\*\*\*\*) 원에 의하 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 별정직공무원 특별임용

○ 발령 제150호(2000. 3. 16.자)

<신규> 성희석(450228-2\*\*\*\*\*) 지방별 정6급상당(가정상담원)에 임함. 여성정책관 근무를 명함

<신규> 이순덕(590110-2\*\*\*\*\*) 지방별 정6급상당(여성복지상담원)에 임함. 여성정 책관 근무를 명함

<신규> 유은숙(540408-2\*\*\*\*\*) 지방별 정6급상당(청소년지도교사)에 임함. 문화관 광국 근무를 명함.

<신규> 정현미(651001-2\*\*\*\*\*) 지방별 정6급상당(청소년지도교사)에 임함. 문화관 광국 근무를 명함

<신규> 이광수(530228-1\*\*\*\*\*) 지방별 정6급상당(판독사)에 임함. 주택국 근무를 명함

<신규> 이상빈(620210-1\*\*\*\*\*) 지방별 정6급상당(방사선관리)에 임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신규> 권헌욱(681208-1\*\*\*\*\*) 지방별 정7급상당(가정상담원)에 임함. 여성정책관 근무를 명함

<신규> 문미경(660627-2\*\*\*\*\*) 지방별 정7급상당(유아교사)에 임함. 여성정책관 근무를 명함

<신규> 이기복(591125-2\*\*\*\*\*) 지방별 정7급상당(유아교사)에 임함. 여성정책관 근무를 명함

<신규> 김형진(710313-2\*\*\*\*\*) 지방별 정7급상당(여성복지상담원)에 임함. 여성정 책관 근무를 명함

<신규> 이인순(600124-2\*\*\*\*\*) 지방별 정7급상당(영양사)에 임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김유선(590228-1\*\*\*\*\*) 지방별

정7급상당(고압가스관리)에 임함. 상수도사 업본부 근무를 명함

시

<신규> 박태희(660608-2\*\*\*\*\*\*) 지방별 정7급상당(고압가스관리)에 임함. 상수도사 업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박범진(710521-1\*\*\*\*\*) 지방별 정7급상당(고압가스관리)에 임함. 은평병원 근무를 명함

<신규> 김병희(670508-1\*\*\*\*\*) 지방별 정7급상당(마이크로필름촬영)에 임함. 행정 관리국 근무를 명함

<신규> 김수희(671210-2\*\*\*\*\*\*) 지방별 정7급상당(편집원)에 임함. 시의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신규> 김상수(610623-1\*\*\*\*\*\*) 지방별 정7급상당(위험물취급)에 임함. 상수도사업 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권오정(600621-1\*\*\*\*\*\*) 지방별 정7급상당(수질환경)에 임함. 상수도사업본 부 근무를 명함

<신규> 김세정(650313-2\*\*\*\*\*\*) 지방별 정7급상당(수질환경)에 임함. 상수도사업본 부 근무를 명함

<신규> 이용문(470922-1\*\*\*\*\*\*) 지방별 정7급상당(영사조정)에 임함.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이천호(621210-1\*\*\*\*\*\*) 지방별 정8급상당(고압가스관리)에 임함. 상수도사 업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정원걸(630318-1\*\*\*\*\*\*) 지방별 정8급상당(고압가스관리)에 임함. 상수도사 업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하태영(560615-1\*\*\*\*\*) 지방별 정8급상당(고압가스관리)에 임함. 상수도사 업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경택중(590130-1\*\*\*\*\*\*) 지방별 정8급상당(고압가스관리)에 임함. 상수도사 업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박용하(590802-1\*\*\*\*\*) 지방별 정8급상당(고압가스관리)에 임함. 상수도사 업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문범식(601223-1\*\*\*\*\*\*) 지방별 정8급상당(고압가스관리)에 임함. 상수도사 업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박은주(611005-2\*\*\*\*\*\*) 지방별 정8급상당(공과금요원)에 임함. 상수도사업 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이태복(640204-1\*\*\*\*\*\*) 지방별 정8급상당(공과금요원)에 임함. 상수도사업 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임상택(640216-1\*\*\*\*\*\*) 지방별 정8급상당(공과금요원)에 임함. 상수도사업 본부 근무를 명함

> 서 울 특 별 시 장 토목직6급이하 공무원 전보

○ 발령 제151호(2000. 3. 16.자)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주사 정양수 (480306-1\*\*\*\*\*)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화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주사 이강선 (520310-1\*\*\*\*\*\*)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기능직공무원 전보 • 발령 제153호(2000, 3, 17,자)

뚝도정수사업소 기능7급지방전기장 장기성(571220-1\*\*\*\*\*\*) 행정관리국 근무 를 명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능9급지방농림원 (원예) 이규복(680601-1\*\*\*\*\*\*) 행정관리국 근무를 명함

가양하수처리사업소 기능9급지방기계원 오복근(520228-1\*\*\*\*\*\*) 환경관리실 근무 를 명함

> 서 울 특 별 시 장 기능직공무원 휴직

발령 제154호(2000, 3, 20,자)

건설안전관리본부(서부도로관리사업소) 기능10급지방전기원 김봉석(790212-1\*\*\*\*\*) 지방공무원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울특별시장

시

####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155호(2000. 3. 17.자)

가양하수처리사업소 기능9급지방전기원 안상균(720311-1\*\*\*\*\*\*)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 전산직 공무원 직위해제

발령 제156호(2000. 3. 17.자)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개발담당관 지방전 산주사보 류동필(651018-1\*\*\*\*\*\*) 지방공 무원법 제65조의2제1항1호에 의하여 그 직 위를 해제함

서 울 특 별 시 장

#### 기능직공무원 전보

○ 발령 제157호(2000. 3. 20.자)

폐기물시설과 기능9급 지방운전원 노재 현(530908-1\*\*\*\*\*\*) 송파구 전출을 명함

송파구 기능8급 지방운전원 이순화 (530115-1\*\*\*\*\*\*) 서울시 전입을 명함.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9급 지방운전원으로 강임함. 환경관리실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 연구직공무원 휴직

○ 발령 제158호(2000. 3. 20.자)

서울시립대학교 지방학예연구사 김서란 (700119-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 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에 명함 (2000. 3. 20~2001. 3. 19)

서 울 특 별 시 장

기능직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 발령 제159호(2000, 3, 20.자)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방호원 곽자 영(480207-1\*\*\*\*\*\*)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 사위원회결정(사건 9-120, 2000. 2. 14)에 의하여 1999. 12. 7일자 견책처분을 동일자 로 취소함

서울특별시장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발령 제12100-468호(2000, 3, 23.자)

문리과대학 환경원예학과 조교수 裵公英 (630624-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2000. 2. 15~2000. 5. 14)

서울시립대학교총장

# 입찰공고

# ●건설 안전관리본부공고제2000-7호 용역입찰(재)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면목천 복개구조물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
- ㅇ 과업내용설명

-일시: 2000. 3. 28 (화) 14:00

-장소 : 시설관리2부

ㅇ 등록마감일

-일시: 2000. 3. 30 (목) 18:00

-장소 : 총무부경리과

0 입찰일정

-일시: 2000. 3. 31 (금) 14:00

-장소: 건설안전관리본부입찰실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설계금액 : ₩163,1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참가자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교량 및 터널과 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중 토목구조, 주자원개발 전문분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사를 보유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2개업체 이상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대표업종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됩니다.

시

####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 을 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 개인 1년이상 업체는 지급확약 으로 갈음함

# 6.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 7.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48조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제3 8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때 85점을 얻지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 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낙찰자 통보예정일은 심사완료후 3일 이내 입니다.

#### 8.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제32조)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단, 입찰가격점수가 65점미만인 자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교량, 과가차도, 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이행실적에 한하며, 이행실적평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우편 및 상시입찰이 가능 하며 입찰시간전까지 도착한 우편입 찰서와 상시입찰함에 투찰한 상시입 찰서에 한하여 유료하며, 상시입찰시 다른 투찰함에 투입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또한 상시 입찰기간은 용역과업 설명 일로부터 입찰 시간전까지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설명,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적격 심사기준은 본부경리과에, 설계서 및 과업설명사항은 본부 시설관리2부에 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 라. 기타사항은 시설관리2부(☎ 3708-2406), 총무부 경리과(☎ 3708-2323)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우편번 호 및 주소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

> 2000. 3. 25 건설안전관리본부분임경리관

시

# ◉건설안전관리본부공고제2000-8호 용역입찰(기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여의도 공동구 화재발생 구간 정비공사실시 설계용역
- ㅇ 과업내용설명

-일시: 2000. 3. 29. (수) 15:00

-장소 : 시설관리1부

0 입찰등록마감

-일시: 2000. 4.1 (토) 13:00

-장소 : 총무부 경리관

ㅇ 입찰일정

-일시: 2000. 4.3 (월) 15:00

-장소 : 건설안전관리본부입찰실

-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3. 설계금액 :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4.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 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 체로서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전문분 야로 신고된 업체이며 주된 사무소가 서 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5/100이상 을 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법인, 개인 1년이상 업체는 지급확약 으로 갈음함
-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술용역 입찰유의 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 7.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38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 정 합니다.

※ 낙찰자 통보예정일은 심사 완료후 3 일이내입니다

#### 8. 적격심사서류 제출

-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날로부 터 7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예규제32조) 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단, 입찰가격점수가 65점 미만인 자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나. 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 인정범위 는 콘크리트 구조체 보수, 보강 및 지 하구조물 이행실적에 한하며, 이행실 적평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우편 및 상시입찰이 가능 하며 입찰시간 전까지 도착한 우편입 찰서와 상시입찰함에 투찰한 상시입 찰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상시입찰시 다른 투찰함에 투입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또한 상시 입찰기간은 용역과업 설명

일로부터 입찰 시간전까지입니다.

제 2251호

-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과 업내용설명, 지방자치 단체적격 심사 기준, 회계예규, 설계서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 단체 적격 심사기준은 본부경리과에, 설계 서 및 과업설명사항은 본부 시설관리 1부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 라. 기타사항은 시설관리1부(☎ 3708-2346). 총무부 경리과(☎ 3708-2323)로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우편번 호 및 주소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

2000. 3. 25

건설안전관리본부분임경리관

# ●금천구공고제2000-7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동법시행령 제34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제22조의4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23호, '99. 10. 20)』의거 금 천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을 위한 자 격 및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00. 3. 25 금 천 구 청 장

1. 감리대상 및 자격

가. 사업명: 국화연립 재건축사업

나.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65번

지 16호

- 다. 공동사업주체 : 국화연립재건축조합 설악종합토건(주)
- 라. 용도 : 아파트

보

- 마. 층수, 동, 규모 : 지상1층/지상 8층 1 개동 32세대
- 바. 연면적 : 3.193.75m²
- 사. 사업예정기간 : 2000. 4~2001. 12
- 아. 주택건설사업비 내역(단위:천원)
- 총계 :주택건설 총사업비 2.954.310천 워
- ㅇ 대지비 : 1,016,820천원
- ㅇ 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비 : 1,304,369천원(부가 가치세 포함)
- -전기공사비: 70,762천원(정보통신공사 비 포함)
- -소방공사비: 24,440천원
- -감리제외공사비: 537,917천원
- 2. 공고기간 : 2000. 3. 21. 2000. 3. 25.
- 3. 신청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000. 3. 21. 2000. 3. 25. [13:00 까지 금천구청 주택과(본관4층)]
- 4. 응모자격
- -감리자 :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격이 있는 자
- ※ 당해 주택건설공사 시공사의 계열회 사 제외
-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99. 10. 20)참조
- 5. 감리자 지정방법
-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후 감리응모시 제출한 감리입찰서류를 개봉하여 적격심 사 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7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

ㅇ 감리실적은 '94. 8월이후 사업승인신청 분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산정함

시

- ㅇ 감리응모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 지 아니함
- 6. 응모서류
-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입찰서(밀봉하여 표지에 "감리비 입찰서"라고 표기)
- ㅇ 주택건설공가 감리자지정신청 평가내역 서
- 기타 제출서류(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 정 신청서 뒷면 구비서류 참조) 감리원배치계획서 및 건축사보 보유현황 확인서 [건축사사무소 소속 직원입증서 류(건축, 토목, 설비)]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또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제출서류중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제무제표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모집공고 일 이후에 발급 작성된 원본으로 제출
- 공고방법: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 리협회통보, 시·구보게제, 금천구홈페이 지(http://www.kumchon,seoul.kr)
- o 기타 제출서류(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 정 신청서 뒷면 구비서류 참조)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0-4호 **☎**(02) 890-2380~2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해당기간내 금천
  - 구청 접수분에 한함)
- 7. 기타사항
- 복수예비가격
- ① 33,261,410 ② 33,174,460 ③ 33,087,510
- **4** 33,000,560 **5** 32,913,610 **6** 32,826,660
- 7 32,739,710 8 32,652,760 9 32,565,810
- ① 32,478,860 ① 32,391,910 ② 32,304,960
- (3) 32,218,010 (4) 32,131,060 (5) 32,044,110
- ㅇ 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서 개봉장소 :

2000. 4. 6.(14:00) 금천구청 주택과(본관4 층)

2000. 3. 25. (토)

-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 2000. 3. 25.
- ㅇ 감리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 : 2000. 3. 21.
- o 감리원중 전기·소방분야 감리원은 사 업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예정
- ㅇ 감리원평가는 책임감리원 1인(건축)과 감리원 2인(토목, 설비분야)만을 평가하 며 평가된 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감리 동안 상주하여야 함
- o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력확인서·증명서 또는 수주실적증명서에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용도 및 업무내용이 미기재되어 감리업무수행실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는 당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ㅇ 예정가격은 복수예비 가격중 추첨한 4 개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며, 예비가격 추첨 및 입찰서 개봉시에는 감리응모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대리인이 참석할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함(감리응 모자가 미입회시에는 낙찰과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함)
- ㅇ 주택건설공가감리자지정기준 [건설교통 부고시 제1999-323호, '99. 10. 20] 제11조3항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로 적발 된 감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일로부터 1 년간 5점 감점
- ㅇ 응모서류를 허위작성, 위조한 경우 또 는 감리자로 지정된후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업무를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 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 교체, 응모제 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ㅇ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건 설촉진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99. 10. 20] 및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

(890-2380~2)로 문의 바랍니다.

# ●관악구공고제2000-74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감리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2000. 3. 25

관 악 구 청 장

시

- 1. 사업명 : 관악구 남현동 우성연립(A단 지)재건축 사업
- 2. 사업개요
- 위치 : 관악구 남현동 1084-1호외 2필지
- ㅇ 사업주체
  - -우성연립재건축조합(조합장: 서광치)
  - -예성종합건설(주) (대표자 : 김기진)
- ㅇ 규모
  - -층수: 지상10, 지상1
  - -동수 : 1
  - -세대수 : 53
  - -연면적(m²): 7,019.9051 -대지면적(m²): 1.915.30

  - -건축면적(m²): 814.5732
  - -비고: 2000. 3. 11 사업계획승인
- ㅇ 사업비
  - -총사업비: 4,396,041,170원(부과세별도)

(내역) 건축공사비 : 2.969.257원

전기공사비 : 297,417,271원

소방공사비: 122,901,465원

정보통신공사비: 37,780,139원

감리제외공사비: 967,993,038원

-감리대가: 주택건설공사비(2,969,949,257 원)×2.5% = 74,248,730원

- 사업기간 : 2000. 3. ~ 2001. 10.
- 3. 응모자격
- ㅇ 감리자 :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및 종합감리전 문회사제외)

- ㅇ 감리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축 사보로서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으로서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연수교육 또는 감리 워교육을 이수한자
- ㅇ 제한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자의 계열회사(감리자)
- 4. 지정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 부고시 제1999-332호, '99. 10. 20)에 따 라 적격심사를 거쳐 평가점수가 75점이 상인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모한 자를 감 리자로 지정

- 5. 복수예비가격
  - ①74,248,730원 ②74,040,830원
  - ③73,832,930원 ④73,625,040원
  - ⑤73,417,140원 ⑥73,209,240원
  - ⑦73,001,350원 ⑧72,793,450원
  - 972,526,150원 @72,318,260원
  - ①72,110,360원 ②71,902,470원
  - ①71.694.570원 ④71.486.670원
  - ① 71,278,780원
- 6.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00년 3월 28일~3월29일 09:00~15:00시한, 2일간(우편접수분은 접수기일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본관2층)
- 7. 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서 개찰일시
- 추첨 및 개찰일시 : 2000년 3월 29일 (수)16:00
- 장소 : 관악구청 본관 지하상황실
- 8. 응모서류
-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1 호 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입찰서(별지2호 서식) ※ 밀봉하여 표지에 "감리비 입찰서"라 고 명기하여야 함.
- ㅇ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감리원배치 계획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시

- 기타 제출서류는(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의 이면 구비서류)
  - ※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함.
  - (예외 :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재무제 표증명원)
- 자체평가서(별지3호 서식)
- 9. 기타 유의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시에는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정확히 작성 제 출하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미비시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예정가격추첨은 감리자 지정신청자(대 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자 가 추첨입회할 수 있으며 개찰시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체 및 개찰응모 자의 입회하에 감리입찰서를 개봉함.
- 제출된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감리자 지 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 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감리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함.
-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 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 본 재건축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취소또는 취하시 감리자지정은 자동취소되며이의를 제기할 수 없슴.
- 지역가점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된 사무 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는 5점의 가산점 을 부여함.
- 감리원중 전기, 소방분야, 정보통신 감 리원은 사업주체에서 별도 발주됨으로

- 감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감리원평가는 책임감리원 1인(건축-기술자 및 학력, 경력자)과 감리원 2인(토목, 설비분야)만을 평가하며, 평가된 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상주토록 배치하여야 함.
- 공고일 이후 타현장(또는 타회사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였거나 입사등으로 인
   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협회(한국건설감리, 대한건축사, 한국건 설기술인)에서 발행한 실적 및 경력확인 서상에 연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수행실적증명서(공공기관에서 발행한것 만 평가)로 확인이 않되는 사항은 평가 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택건설공사 감 리자 지정기준[별표1]평가기준 분야별 배정순서대로 편철(책임감리원, 감리원, 감리자 등순) 제출요함.
- 감리원이 중복되게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된 서류의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접 수후에 추가제출등의 서류보완은 인정하 지 않음, 또한 평가내용의 공개 및 결과 에 대하여는 일체의 통보를 하지않음.
- 감리자의 평가방법 및 기준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또한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감리지정권자인 구청장이 결정 함.
-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 교통부 고시 1999-32('99. 10. 20)호의 감 리지정기준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관악구청 주택과(전화 880-3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ス	] 제13	호서식]									(앞면	)
				주 택	건 설	걸 공 사 김	감리 자	지 정	신 2	청 소	1	
1.	공사개	요										
사업주체 상 호 우성연			연립자	년립재건축조합예성건설(주)			Ľ	표 자	서광치, 김기진			
برا رد حم ارد	기계정	위	위 치 관악-			구 남현동 1084-1호외2필지				대지면적		1,915.30 m²
사일 내	] 계획 용			어내용		규 모 연명		<u></u> 적	착공예정일		예정일	준공예정일
-11	0			10층, 1동 53세대		7,019.9	.9.9051 m²		2000. 4		2001. 10	
설계자	게 자.	성	성 명		김 병	김 병 노 상		ই	호 (주)플		플러스 건축사 사무소	
므 /	/II / Y	주	주 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40-4 동성빌딩 5층						
2.	감리자	(감리:	회사)									
상	호				대표지	-1) 고 기		등록	-록번호			
Ö	ㅗ				刊业八	내효사   		자격	<b>부번호</b>			
주	소							전	ই	}		
3.	감리원											
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호	등 그			자 격 번 호				
F	주택건/	설촉진병	법 제3	3조의	6, 동	법시행령	제34조의	16 및	주택	건설	[공사감리	자지정기준 제6
조의	의 규정	]에 의견	하여 위	구덕	백건설	공사의 감		_		니디	∤.	
						2000 t	년 .	월	일		l == 1	
a) (	1731	장 귀하				신청인			(	서명	[또는인)	
			-								210mm	×207mm
구비서류:뒷면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 g/m²)								70 g /m²)				
구비서류							(뒷면)					
	① 레킹 사네커 시 H					재무제표증명원(사업자등록세무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년도						
감	①재정상태견실도			- 1	에 발행한 것,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등록시 또는 공고일 이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							
리 자	②감리업무수행실적				_	'94. 8. 이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주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여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회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드증명사			_						여 증명서	
	⑥품질가산 최근 3년간 해당업체 지정증명서											

	⑦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감리원	⑧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 책 임	⑨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임감리위	⑩감리업무수행실적	'94. 8. 이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 경력증명서				
원포함	①행정제재여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②상훈증명서	최근 1년간 해당 행정기관의 상훈수여 증명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3. 대한건축사협회
-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별지 제2호 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내용	건명(공고번호)					
H 전 네 중	금 액	금		원정(	₩	)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	록번호	
입 찰 자	주 소			전화틱	번호	
	대 표 자		주민등	등록번호		

본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6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 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시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0년월일입찰자(대표자)(인)

관악구청장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 2종 70g/m²)

# ◉중랑하수처리사업소공고제2000-2호 물품구매입찰

시

1. 경쟁입찰에 부치는 입찰건명 : 경유외 3 종 구매(년간단가계약)

2.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

○ 품명 : 경유

o 규격: S0.05% 이하

○ 단위 : ℓ

수량: 574.500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단가입찰) ○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00. 4. 6. 18:00

입찰일시: 2000. 4. 7. 10:30 ○ 입찰장소 : 우리사업소 입찰실

ㅇ 품명 : 보일러 등유 ○ 규격: S0.1% 이하

○ 단위 : ℓ

○ 수량: 108,000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단가입찰)

○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00. 4. 6. 18:00

○ 입찰일시 : 2000. 4. 7. 10:30 ㅇ 입찰장소 : 우리사업소 입찰실

ㅇ 품명 : 실내용 등유 ○ 규격 : S0.01% 이하

○ 단위 : ℓ

○ 수량: 14.400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단가입찰)

o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00. 4. 6. 18:00

ㅇ 입찰일시 : 2000. 4. 7. 10:30 ○ 입찰장소 : 우리사업소 입찰실

○ 품명: 휘발유 ㅇ 규격 : 무연 ○ 단위 : ℓ

○ 수량: 2,800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단가입찰)

○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00. 4. 6. 18:00

○ 입찰일시 : 2000. 4. 7. 10:30

○ 입찰장소 : 우리사업소 입찰실

3. 추정가격(경유) : 279,765,832원(부가세 미포함)

가. 입찰은 우편입찰이나 상시입찰도 가 능합니다. 다만, 우편입찰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입찰서 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4.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석유사업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15 조에 의거 등록된 일반대리점 이상으 로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으 며, 입찰참가등록을 마친자.

나. 입찰은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전에 대표 자 인감으로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 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입찰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시 에 귀속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함.

7.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방법 : 경유-최 저가 낙찰 적격심사제, 휘발유외2종-최 저가 낙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38 호, 제29호(1999. 9. 1)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는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 낙찰자를 결정함.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집행일로부터 3일 이내 개별 통보하며 통보 받는 자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함.

- 8. 계약의 착수일 및 납품완료일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납품은납품지시일로부터 납품기한내 분할납품
- 9. 경쟁입찰 참가 등록서류가. 입찰참가 신청서(당소 소정양식) 1통나. 일반경쟁참가자 자격등록증명 1통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
  - 증 사본 1통 라. 사용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원 1통 마.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

마.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증 · 1통 (원본지참)

#### 10. 기타 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품규격,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실에 비치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 류작성 요령 및 제출방법 등을 숙지 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과(☎2212-9289) 나 오니처리과(☎2214-8108 조봉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3. 25 중랑하수처리사업소경리관

# ●공원녹지관리사업소공고제2000-54호 공원(체육)시설 관리위탁자선정 긴급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체육시설위탁관리자선정
- 현장설명일시 : 2000. 3. 29. 11:00
- ㅇ 현장설명장소 : 남산공원관리사무소
- 입찰등록기간 : 2000. 3. 30 18:00
- 입찰일시 : 2000. 3. 31 14:00
- ㅇ 입찰장소 : 남산공원관리사무소
- o 현설청취자격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 2. 입찰(위탁관리)대상
- ㅇ 공원명: 남산도시자연공원
- 0 입찰단위:1
- 시설명: 남산실내체육관(테니스장)
- 위치 : 중구 예장동 산5-84
- ㅇ 시설현황
  - -토지(m²): 1,226
- -건물(m²): 1.556
- 위탁료산출기초가격: 46,650,000원
- 3.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개인 및 사업자 (영업소재지:서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격을 갖춘자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아닌자
- 4. 낙찰방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제 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5. 관리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단 기 간내 1년단위로 위탁관리기간을 갱신 할 수있다.)
-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3조 규정에 의거 희망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 하여야함. 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기일내에 수탁관리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됨.
-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의 규정과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관리위탁조건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이 취소(해지)된 경우시설일체를 이의없이 반환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시 즉시 응하여 하며 위 조건에 응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위탁허가를 불허하고 낙찰자 결정은 무효로함(제소전 화해비용은 각자부담)
- 8. 위탁금의 납부 : 총 낙찰액을 3년 균등 으로 회계연도별로 별도 고지서에 의하 여 납부하다.
  - (기한내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됨)
- 9. 관리위탁계약체결: 입찰일로부터 7일이 내 수탁관리를 신청하고 낙찰금액의 100 분의10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50조⑦항에 의거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10. 입찰전 유의사항 : 낙찰자는 수탁관리 받은 위탁시설을 제3자에게 운영권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수 없으며 적발시는 우리사업소에서 일방적인 해약조치가 되 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손해등(기납부한 위탁료 포함)을 청구할수 없다.

- 11. 입찰참가 신청서류
- ① 입찰참가 신청서(당 사업소 비치)1부.
- 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 경우 위임장)각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 인에 한함)1부.
-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산공원관리사무 소(753-5576)에 비치하고 공람에 임하며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제정법제61조에 의거 일반경쟁으로 관리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함.

2000. 3. 25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공고 제2000-2호

#### 공인신조(폐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직제개편과 관련 일상경비출납 공인을 신조(폐기)하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공인규정 제9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0. 3. 25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

1. 신조 공인명 및 인영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주민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시설계획팀 일상경비출납원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시설운영팀 일상경비출납원인



2. 폐기 공인명 및 인영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시설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기반조성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환경시설과 일상경비출납원인



3. 사용(폐기)개시일 : 2000. 3. 16

# ⊚정정

정정의뢰내역

자 치 법 규 명	당 초	정 정	비고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	2000. 2. 21일자
의운영에관한조례	관한조례(안)	에관한조례	188-5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 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 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2000. 2. 21일자 188-6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2000. 2. 21일자 188-7면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2000. 2. 29일자 68-4면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 기호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 규정중개정규정(안)		2000. 2. 29일자 68-7면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 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 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 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홍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	2000. 3. 10일자 134-6면

	<u>'</u>		
자 치 법 규 명	당 초	정 정	비고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	2000. 3. 10일자
및운영조례개정조례	영조례개정조례(안)	및운영조례개정조례	134-8면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 • 운영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에관	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운영	2000. 3. 10일자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34-10면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	2000. 3. 10일자
정조례	시출국실시사구귀 남소대중개정	정조례	134-11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	2000. 3. 10일자
례중개정조례	개정조례(안)	례중개정조례	134-13면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	2000. 3. 10일자
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	134-14면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	2000. 3. 10일자
원조례	례(안)	원조례	134-15면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	2000. 3. 10일자
료징수조례폐지조례	수조례폐지조례(안)	료징수조례폐지조례	134-17면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	2000. 3. 10일자
례중개정조례	개정조례(안)	례중개정조례	134-17면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	2000. 3. 10일자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34-18면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	2000. 3. 10일자
대회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	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안)	대회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	134-19면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심의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	2000. 3. 10일자
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134-20면
조례	기천의 글이 중한 경에컨인도네(한) 	조례	104 40년